

발간등록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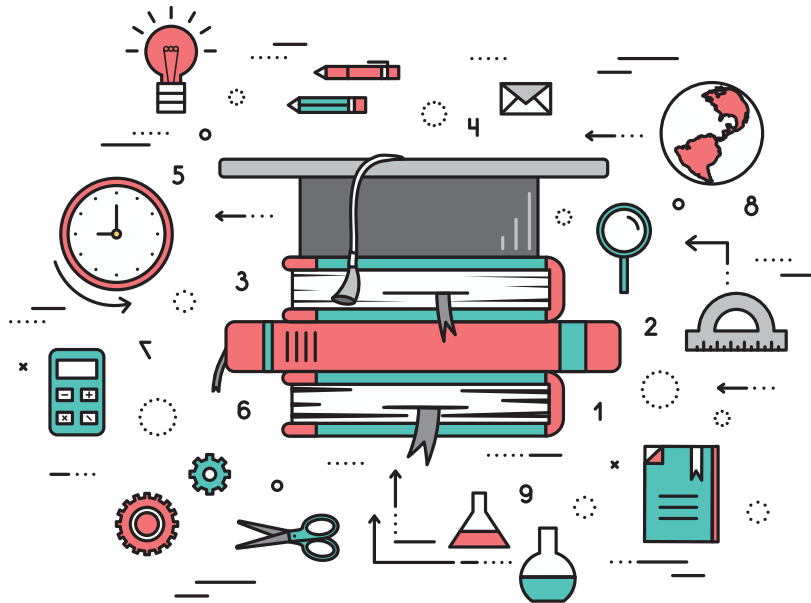
경남교육 2021-256

[2022년 9월 1일 수정]



2022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 차례 Contents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경남 교권보호 선언문	04
교육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05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안 처리 절차	06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절차	07

CHAPTER

I

❖ 교육활동 침해 행위	09
--------------------	----

CHAPTER

II

❖ 교권보호위원회	15
1.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16
2. 시·도 교권보호위원회	19

CHAPTER

III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단계별 대응방안	21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22
2. 사안처리 5단계	23

CHAPTER

IV

◎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제도	57
1.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58
2. 그 밖에 사법적 조치	61
3. 교육활동 침해 외 사안에 대한 대응 방안	63

CHAPTER

V

◎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69
1.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소개	70
2. 심리상담 · 치료 지원	71
3. 법률상담 지원	73
4. 행정 지원	74
5. 보호조치 비용 지원	77
6. 교원배상책임보험	78
7. 교원 힐링 연수 운영	80
8.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81
9. 수업방해 예방 「이음교실」 운영	85
10. 외부기관 연계 지원 계획	86
11. 외부 전문기관 연계 현황	89

부록

◎	1. 사례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94
	2.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규	111
	3.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제6호) 업무 지침	130
	4. 교원 장기치유연수 운영 계획	133
	5. 단위 학교 및 지역교육청 역할 및 협조 사항	141
	6. 각종 서식	145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경남 교권보호 선언문

교육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협력 속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뿌리내릴 때 가능하다.

이에 우리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교권보호와 교권존중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며, 다음과 같이 함께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

1. 우리는 상호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한다.
1. 우리는 교권존중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홍보하는데 같이 노력한다.
1. 우리는 교육공동체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교권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에 노력한다.

교육활동의 각 주체는 교권보호 및 교권존중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

1. 교원은 자주적 교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전문성 신장에 적극 노력한다.
1. 학생과 학부모는 함께 가꾸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권존중에 적극 노력한다.
1. 경남교육청은 현장 중심의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교권보호를 위한 행·재정적 인 지원을 강화한다.
1. 경상남도의회는 교권보호를 위한 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도민이 교권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경상남도협의회는 함께 가꾸는 행복교육을 위해 교권보호의 중요성을 도민에게 널리 홍보한다.
1.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경남지부, 한국교원노동조합경남본부는 경상남도교육청과 함께 교권보호에 노력한다.

2019. 3. 25.

경상남도교육공동체 일동

경상남도교육감 / 경상남도의회회장 / 학교운영위원회경상남도협의회장 / 교원 학생 학부모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 / 전교조경남지부장 / 한국교원노동조합경남본부

교육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1

학습자

-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 교육내용 · 교육방법 ·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 · 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호자

-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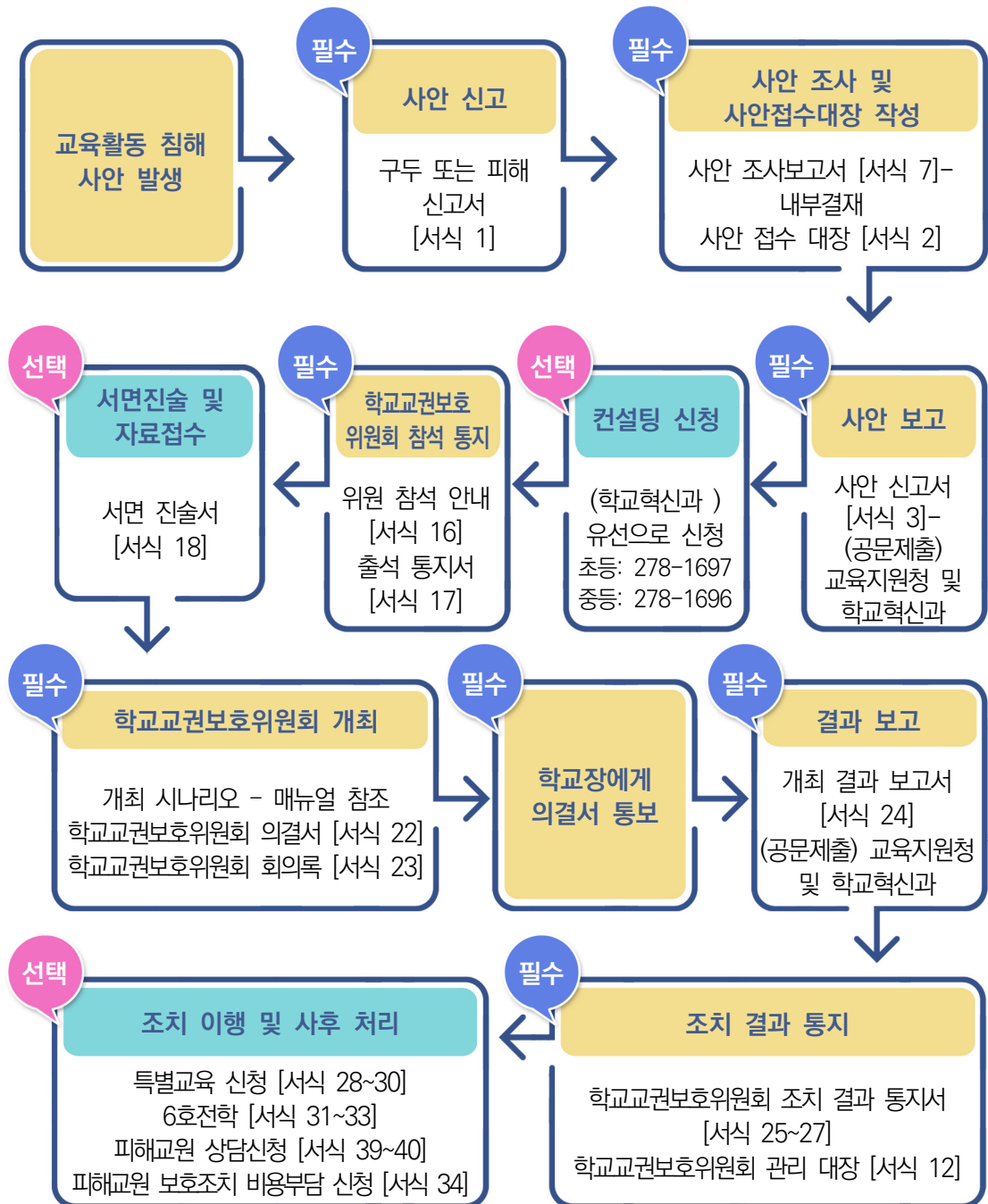
3

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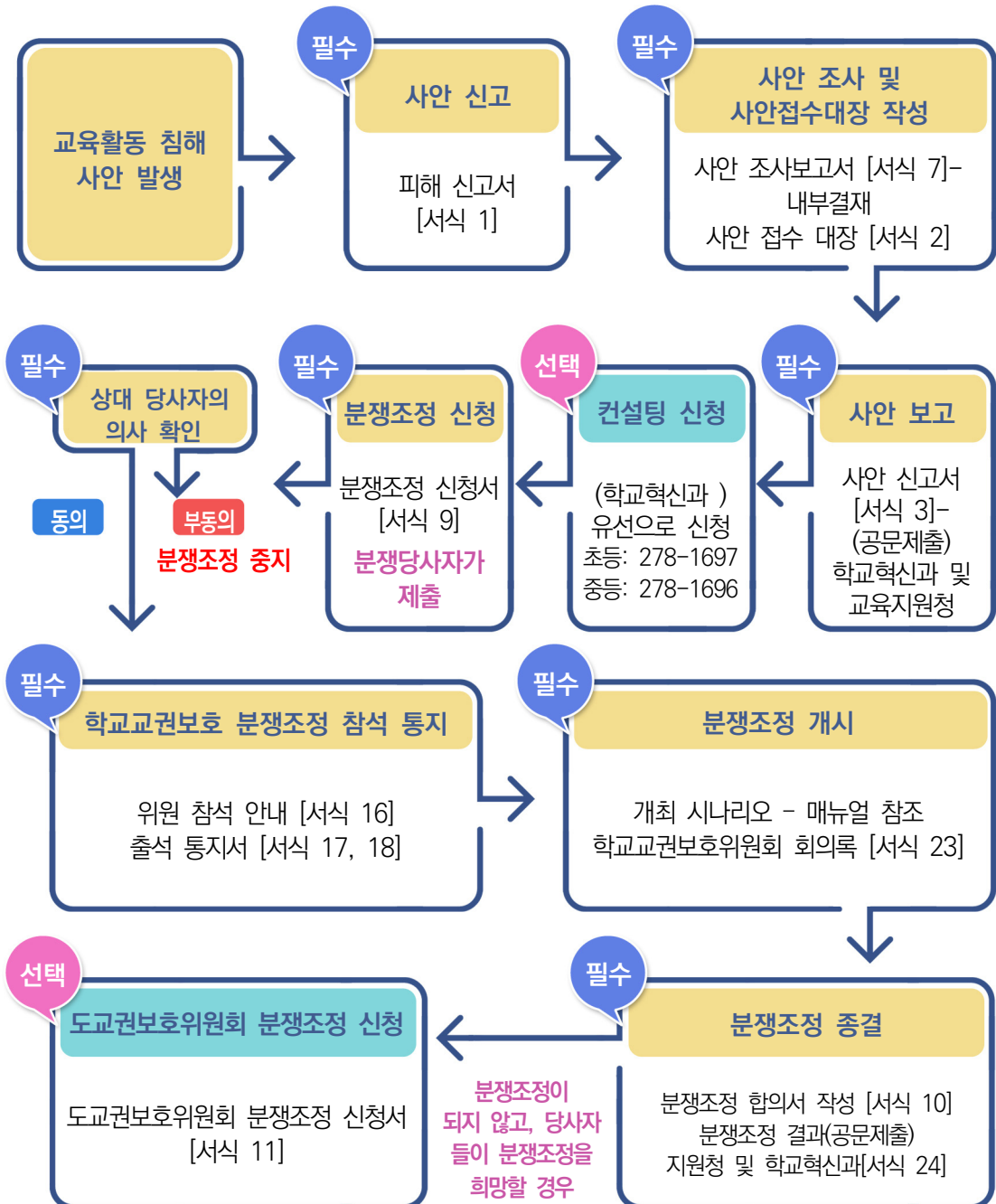
-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 교원의 임용 · 복무 · 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출처: 「교육기본법」 제12조~제14조〉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안 처리 절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절차



2022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CHAPTER

I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1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개념

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정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원지위법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고 규정함.
- 「교원지위법」 제15조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규정하기 전에는 ‘교권 침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음. 교권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피동적인 개념으로 일부에서는 이를 학생·학부모의 권익과 상충되는 개념으로 여기고 반대하기도 했음.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해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 또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됨. 이에 「교원지위법」은 교원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육활동 보호에 있음을 밝히기 위해 ‘교권 침해 행위’ 대신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고 명명하고 이에 대한 논의 수준을 높임. 이를 통해 앞으로 교육주체 모두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음

■ 교원지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5.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주체

-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주체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¹⁾ 등²⁾’이라고 규정함.

Q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에 있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주체 중 ‘보호자 등’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A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보호자 등’에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부모, 학생·학부모의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람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객체

-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것이어야 함.

1) 교원지위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 교(원)장, 교(원)감, 수석교사, 교사, 기간제교원

1) 교원지위법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등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명사나 어미 ‘-는’ 뒤에 쓰여))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2」 ((명사 뒤에 쓰여))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

Q 교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교원은 교(원)장, 교(원)감, 수석교사, 교사, 기간제교원을 의미합니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 교육법에서 규정하는 교원의 범위)
학교 또는 유치원의 운영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는 행정직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교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교육활동 중인 교원

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과 ‘교육활동 중이 아닌’ 교원은 교원지위법 적용에서 구별(교원 지위법 적용 가부)

- ①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지위법이 적용되는 행위로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
- ② ‘교육활동 중이 아닌’ 교원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 교원지위법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와 같은 권리 침해 행위는 일반법인 초·중등교육법이 적용(학생 지도·징계)

나) ‘교육활동 중’의 범위

- ①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② 학생의 등·하교 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
- ③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④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나 상담
- ⑤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나 상담
- ⑥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나 상담
- ⑦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의 시간 중 입장 시 행하는 활동
- ⑧ 통상의 근무시간이 아닌 출근 시간 전 또는 퇴근 시간 후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의 상황·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학생 교육에 관한 상담

참고) '교육활동'의 범위에 대하여

「교원지위법」에서 '교육활동' 정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교육활동'에 따르면,

- ①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 · 특별활동 · 재량활동 · 과외활동 · 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②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이 교육활동에 해당되며,

이밖에,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학교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의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위의 ①, ②와 관련된 활동도 교육활동으로 인정함.

학교안전법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이하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률로 학교 활동과 연관성이 있으면 보상, 보호한다고 법률의 범위를 상당히 넓은 것임.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은 「학교안전법」에 따른 교육활동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음.

라.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 ① 형법상 상해·폭행죄, 협박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 ② 성폭력범죄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 ③ 불법정보유통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 ④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 ①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②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③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④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 ⑤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³⁾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Q 동료 교원과 업무 분장으로 갈등이 있는데,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나요?

A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근무조건, 인사관리, 동료 갈등, 업무분장 갈등, 갑질 피해 등 고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교육활동 중인 강사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침해행위를 당한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A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는 교원에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에 교육활동 중인 강사에 대한 침해 행위는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학교장 권한으로 선도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엄중하게 대응하고 학교 규칙에 따라 해당 학생을 지도·징계하도록 합니다.

3)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CHAPTER

II

교권보호위원회

1.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2. 시·도 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1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가. 기능 및 역할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음(교원지위법 제19조 제2항)
 -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나. 구성

위원 정수	위원장	위원의 자격 등	임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 중 선출	①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②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③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④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⑤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⑥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교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촉위원 임기:2년 1회 연임 가능

위원 해촉		임기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 간사: 위원회의 회의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음. 통상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 업무담당자가 수행하게 됨. 간사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객관적 절차 진행과 사안에 대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야 하므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과는 겸임할 수 없음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예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인원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교원 수 (1/2 초과 금지)	2명 이하	3명 이하	3명 이하	4명 이하	4명 이하	5명 이하
개의원족수 (2/3 이상 출석)	4명 이상	4명 이상	5명 이상	6명 이상	6명 이상	7명 이상

- ☞ 학교장의 위원 불포함: 학교장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권자인 점,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권자인 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두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
-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후 호선에 의해 위원장 선출해야 함(단,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때 최초 소집된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해야 함.

다. 운영

- 회의 소집 및 정족수

회의 소집 사유	정족수
①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③ 그 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소집

• 제척 등 사유

제척	기피	회피
㉠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해당 안건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	제척,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

※ 제척 등 사유가 있는 위원은 개의정족수에 포함하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2 시도 교권보호위원회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둔(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항)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음의 분쟁 조정⁴⁾
 - 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유치원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Q 유치원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A 「교원지위법」 제19조 제2항에서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지 않은 경우라도 유치원의 장은 자체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한편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서 맡게 됩니다.

Q 교원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한 사항에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 불복하여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아님”으로 판단하여 교원이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 국·공립학교의 교원은 행정심판을, 사립학교 교원은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판단하여 심의·의결한 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피해 교원이 더 가중한 조치를 요구하는 이의제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4) 분쟁조정 개시 거부사유가 없을 경우 분쟁조정절차 진행

Q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당한 교원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아닌 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학생의 징계를 원하는데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해도 되나요?

A

해당 학생의 행위가 학교 규칙에 따른 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따른 징계 대상 행위에도 해당하면, 당사자인 피해 교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교권보호위원회의 근거법령·구성·운영방법과 생활교육위원회의 근거법령·구성·운영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교원지위법」에 따른 학생의 징계 종류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의 징계 종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교원지위법」에 따른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어렵고,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한 이후에 해당 교원이 보호조치를 원한다고 하여도 해당 학생의 행위에 대해서 이미 생활교육위원회를 적법하게 진행하여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재차 같은 행위에 대한 절차를 반복하고 심의를 할 수는 없으므로,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여 피해 교원이 충분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학생이 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한 징계를 받은 이후, 재차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징계 종류 중 전학 또는 퇴학조치를 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CHAPTER

III

교육활동 침해 사안 단계별 대응방안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2. 사안처리 5단계



교육활동 침해 사안 단계별 대응방안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원지위법」제16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의 필요성

-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학생, 교사 모두 회복하기 힘든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음
-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선제적 조치를 통해 피해 최소화
- 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 갑질 등과의 경계 불명확으로 학교의 혼란 방지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대상: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
- 시기: 연 1회 이상
- 방법
 - 교직원: 직장 내 연수, 원격 연수 활용
 - 학생: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 지도와 병행하여 실시
 - 학생의 보호자: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연수를 통한 교육, 가정통신문, SNS
- 내용(시행령 제9조의 3)
 - 교직원
 -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 ③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 ④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학생
 -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③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 ④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학생의 보호자
 -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③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 ④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 ⑤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학교 홈페이지 게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

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활동

- 학생, 교직원, 학부모 공감대 형성을 통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학교규칙 마련
-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학교의 대응 지침 마련
-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일시적 분리 조치 및 상담 등 특별프로그램 진행

Tip

대법원 판례 2012다95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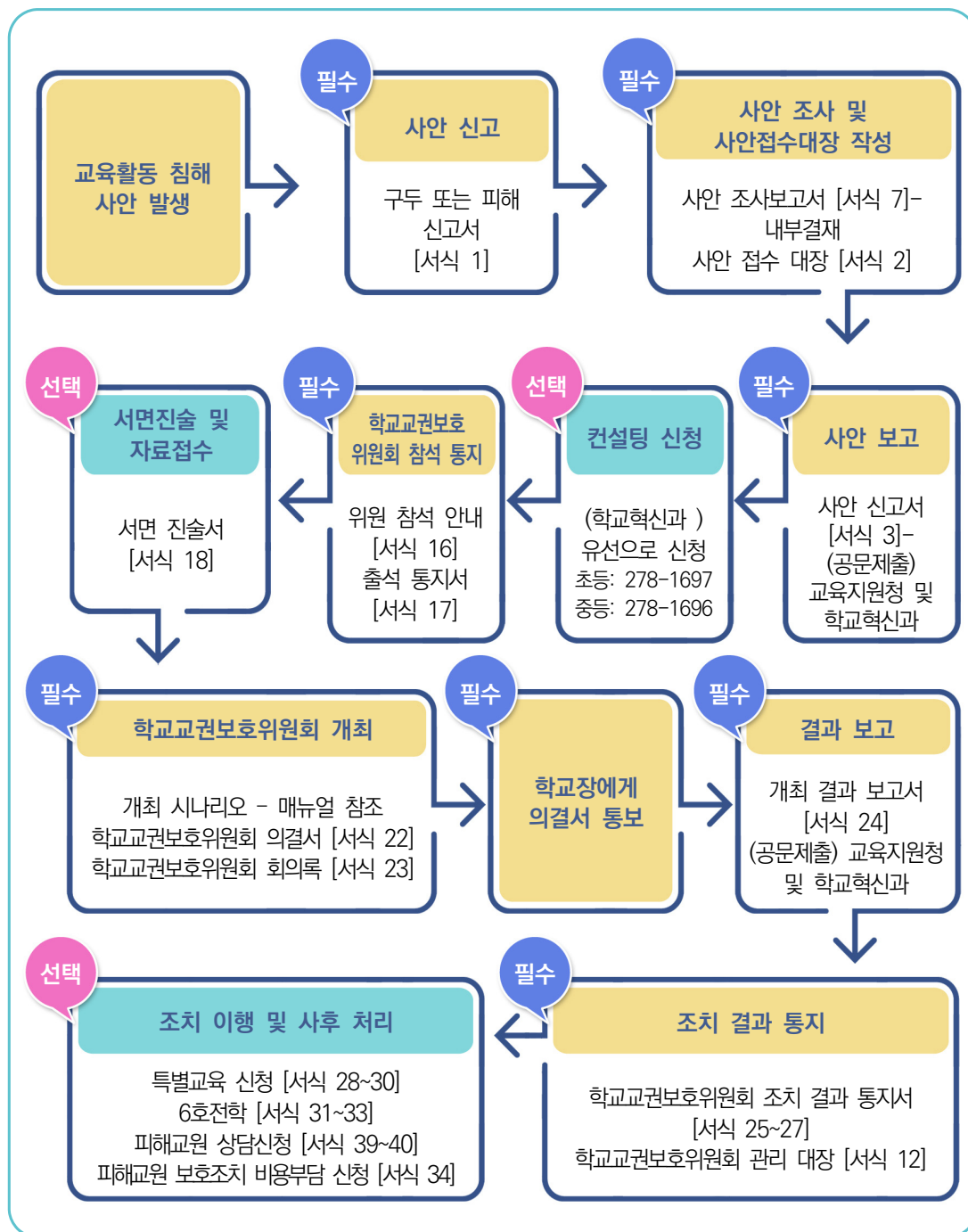
담임교사는 평소 학생의 정서 및 행동 특성에 대하여 관찰하고,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학교에 알리고 학부모와 상담을 통해 사전에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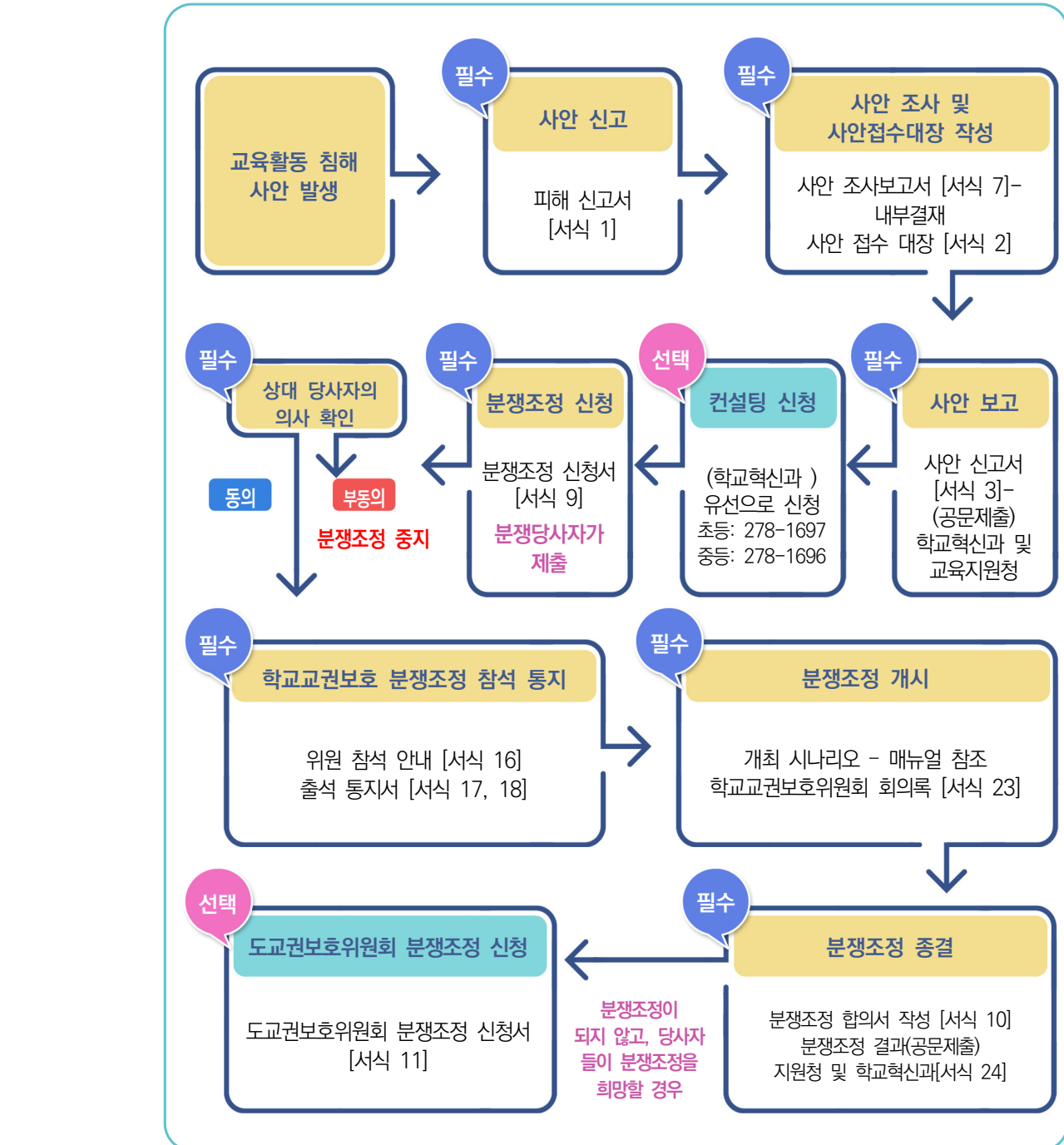
2 사안처리 5단계

◆ 사안처리 기본 흐름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안 처리 절차〉





〈교육활동 침해행위 단계별 대응요령〉

절차	업무담당자(교장, 교감, 업무담당 교원 등) 대응요령	피해교원 대응요령	관련 서식
초기 대응	- 인지 즉시 적극 개입 - 교육현장 안정화 - 관련자와 피해교원 일시분리 - 피해교원 긴급보호조치 - 응급처치, 병원후송, 조퇴, 특별휴가 등 - 업무대행자 지정 - 목격 학생 진정시키기 - 보호자에게 연락 - 중대한 경우 경찰에 신고 - 언론 등 대응창구 단일화	- 주변에 도움 요청 - 현장에서 벗어나기 - 담당자에게 신고 - 특별휴가·병가 신청	- 필수 서식 [서식1~3] - 선택 서식 [서식4]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 발생보고	- 피해교원 보호조치 실시(학교장) - 특별휴가, 조퇴, 병가 허가 - 응급처치, 병원후송, 심리상담 지원 - 심리상담, 법률상담, 공무상요양 신청 안내 등 - 관할 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에 사안발생보고 - 중대사안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장관에 보고	- 특별휴가, 조퇴, 병가 신청 - 부상 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요청	- 필수 서식 [서식5~7] - 선택 서식 [서식8]
사안 조사	- 피해교원 면담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등 절차 안내 - 피해교원의 의사 확인 -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면담 - 문답서, 진술서, 사실확인서 등 작성 - 목격자 진술, 현장사진 등 증거 수집 - 조사보고서 작성	- 당시 상황 기록·정리 - 진술서 등 증거 제출 - 관련자 조치, 필요한 보호조치 등 의사 전달 - 심리상담·법률상담	- 의견서 [서식 18] - 조사보고서 [서식 7]
학교 교권 보호 위원회	- 안건 설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소집 - 학교장이 위원장에게 소집요구 - 위원장이 각 위원에게 소집통지 - 위원장이 피해교원, 관련자에게 출석통지 - 당사자에게 진술기회 부여 - 분쟁조정 - 관련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 - 피해교원 추가 보호조치 권고 - 회의록 작성	- 사실관계 진술 - 서면진술 가능 - 관련자 조치, 추가로 필요한 보호조치 등 의사 전달	- 출석통지서 [서식 17] - 조치의결서 [서식 22]
사안 종결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 통지 - 심의결과에 대한 이행 독려 - 피해교원 심리치료 등 지원 - 재발방지조치, 추수지도 - 불복절차 안내·지원 - 관할 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에 결과 보고	피해 회복 및 치유	- 필수 서식 [서식24~27] - 선택 서식 [서식31~38] [서식39~54]

※ 관련 서식의 경우 부록 참고

가. 초기 대응 단계

1) 피해교원 대응요령

- 가해행위 제지
- 동료교사 등 주변에 도움 요청 또는 현장에서 벗어나기
- 관리자 또는 담당자에게 신고
- 부상 치료
- 조퇴, 특별휴가 또는 공무상병가 신청

Q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신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고 의사나 사건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서 등 서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이라도 학교장이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이라도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보고서나 진단서 등 증빙서류는 추후에 구비할 수 있습니다.

2) 업무담당자 대응요령

- 미리 업무담당자 지정
- 인지 즉시 개입
- 교육현장 안정화
 - 관련자와 피해교원 일시분리
 - : 관련자를 교무실·상담실 등으로 이동
 - 피해교원 긴급보호조치
 - : 응급처치, 병원후송, 조퇴·특별휴가 허가
 - 업무대행자 지정 - 목격 학생 안정시키기
- 보호자에게 연락
 - 사안발생 안내 및 면담 일정 협의
- 범죄행위의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가능
- 언론 등 대응창구 단일화

Q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에 긴급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는 학생의 학습권을 제한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제4항과 같은 법률의 근거가 없으므로 그러한 긴급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필요한 경우 피해교원에 대한 특별휴가나 배치전환 등의 다른 방법으로 관련 학생과 접촉을 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피해교원 보호 단계

1) 업무담당자(학교장) 대응요령

-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지 즉시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교원지위법 제15조)
- 피해교원 보호조치 실시
 - 특별휴가, 조퇴, 병가 허가
 - 응급처치, 병원후송, 심리상담 지원 등
 - 심리상담, 법률상담, 공무상요양 신청 안내 등

Q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이라도 학교장이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즉시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이라도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보고서나 진단서 등 증빙서류는 추후에 구비할 수 있습니다.

Q 학교장의 판단으로 교원에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특별휴가를 승인하였는데 이후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특별휴가의 복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위와 같은 경우 이미 사용한 특별휴가를 병가나 연가로 정정하면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Q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에 피해교원에게 심리상담 등 보호조치를 할 수 있나요?

A 피해교원에 대한 신속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피해교원에게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Q 피해교원이 특별휴가 5일을 사용했습니다. 요양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특별휴가 5일을 사용하고도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공무상병가를 추가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상 병가 기간이 6일 이내인 경우 학교장이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2) 피해교원 대응요령

- 특별휴가, 조퇴, 병가 신청
- 부상 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요청

3)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발생보고

- 관할 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발생보고
- 중대사안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인한 사망사고 및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로 인한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한 행위
4. 그 밖에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교육감이 침해행위가 중대하여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다. 사안 조사 단계

1) 업무담당자(교장, 교감, 업무담당 교원 등) 대응요령

- 피해교원 면담
 - 피해교원 상태 확인
 - 사안처리절차 안내
 - 특별휴가, 심리상담, 법률상담, 공무상요양 등 보호조치
 - 피해교원 의사 확인
- 관련자에 대한 조치 여부 및 정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여부, 분쟁조정 신청 여부 등

- 사안발생경위 확인
 - : 사건 발생 일시, 장소, 전후사정, 동기, 피해정도 등
- 문답서, 진술서, 사실확인서 등 작성
-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면담
 - 관련자 상태 확인, 사안처리절차 안내
 - 피해교원과 관계회복·분쟁조정 의사 확인
 - 사안발생경위 확인
- 그 밖의 사안 조사
 - 목격자 진술, 현장사진 등 관련 증거 수집
 - 기타 조치양정에 필요한 사항 조사
 - : 관련 학생의 평소品行, 과거 징계를 받은 이력, 교우관계, 과거 피해교원과 관련자의 평소 관계, 피해교원의 피해 정도, 관련 학생과 피해교원 간 사과나 합의 여부, 피해교원의 임신 및 장애 여부, 관련 학생의 장애 여부 등
- 사안조사보고서 작성

2) 피해교원 행동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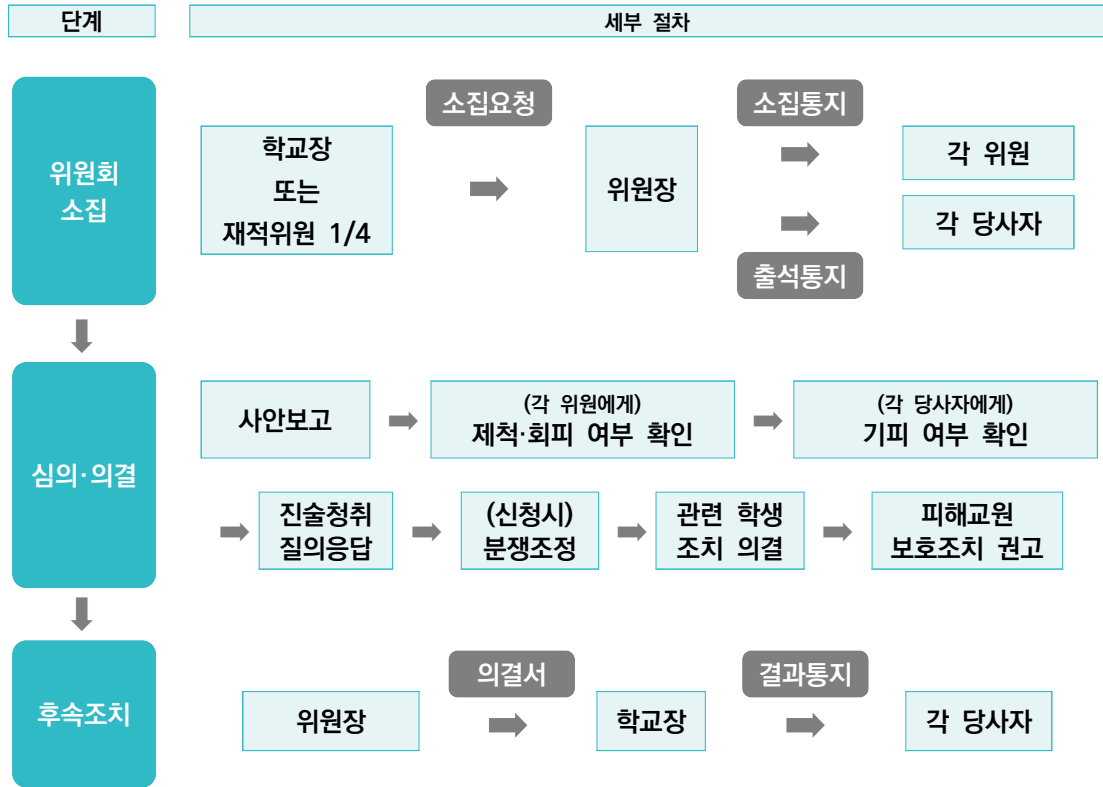
- 사안 발생 당시 상황 기록
- 면담 시 피해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 관련자 조치 및 보호조치에 관해 의견 진술

〈사안 조사 단계에서 주의사항〉

- 업무담당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 유지
- 교육활동 침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 일방적인 관용이나 이해를 구하는 발언, 일방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발언, 징계를 운운하는 발언 등 하지 않도록 주의
- 관련 학생 면담 시 사전에 보호자와 협의 후 학습권이 보호되는 범위에서 실시
- 문답 시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진술 유도
- 진술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주의하고 가능한 의문사항이 없도록 충실히 조사

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단계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단계별 운영 개요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단계

-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4 이상 요청 시 위원장이 회의 소집
- 회의소집사유 발생 시 21일 이내 회의 개최
-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출석통지
-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과반수가 아님 주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Q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소집 사유가 발생하고 21일을 경과하여 회의를 개최한 경우 문제가 되나요?

A

여기서 21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미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조속히 처리하도록 한 훈시규정이므로, 사안조사에 필요하다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21일 이후에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하여 회의소집이 위법해 지는 것은 아닙니다.

Q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 개최 시 당사자에게 반드시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출석통지를 해야 하나요?

A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에서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의견제출기한을 정하여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출석통지를 하지 않거나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단계에서 주의사항〉

- 학교장은 신고받은 사안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 사건별·관련 학생별로 사건을 세분화하여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
- 출석통지는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며 전화·문자 등 병행하여 가급적 출석 유도
- 출석통지서에는 어떤 사유로 회의가 개최되는지 알 수 있도록 사안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
- 당사자가 출석 거부 시 서면진술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서면진술도 거부 시 진술포기서를 받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음을 기록으로 남김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 단계

가) 심의운영의 원칙

(1) 개별심의의 원칙

- 원칙적으로 여러 학생에 대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의해서는 안 됨
- 한 학생이 다수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병합하여 하나의 절차에서 심의
- 학생별로 사건을 나눠서 심의함

- A학생이 甲교사와 乙교사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A학생의 '甲교사에 대한 행위'와 '乙교사에 대한 행위'는 병합하여 하나의 조치 결정
- B학생과 C학생이 동시에 丙교사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B학생의 丙교사에 대한 행위'와 'C학생의 丙교사에 대한 행위'는 각 구분하여 각 학생에 대해 별개의 조치 결정

(2) 학생의 인격 존중과 교육적 배려

- 학생에게 조치할 때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조치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함
- 학생에 대한 조치는 단순히 잘못에 대한 응보가 아니라 학생의 개전과 교육으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함 유념
- 절차 전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교육적 목적에 부합해야 함

나) 심의의 진행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의사항〉

- 각 당사자 입장 시 기피신청 여부 확인
- 각 당사자의 자유로운 진술 기회 보장
- 참석할 수 있는 보호자: 일반적으로 친권자를 의미하나 친권자 외에 후견인이 있는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만 참석 가능. 다만, 친권자(후견인)가 학생을 양육하고 있지는 않고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도 보호자의 범위에 포함. 보호자가 위원회에 보호자 아닌 제3자(친척이나 친구, 지인 등)의 동석을 요청한다면 보호자의 진술보조인이 필요한 경우 등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때에 입회시키도록 함.
- 답변을 강요하는 행위, 일방적으로 관용과 이해를 구하는 발언, 일방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발언 등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
- 관련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문제점을 인식시켜 책임의 자각과 반성을 촉구하고 피해교원과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갖도록 유도하되, 일방적으로 나무라는 발언, 인신공격성 발언, 심의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주의

Q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학생의 '보호자'란 누구인가요?

A 여기서 '보호자'란 학생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사람(예를 들어 학생과 동거하는 조부모)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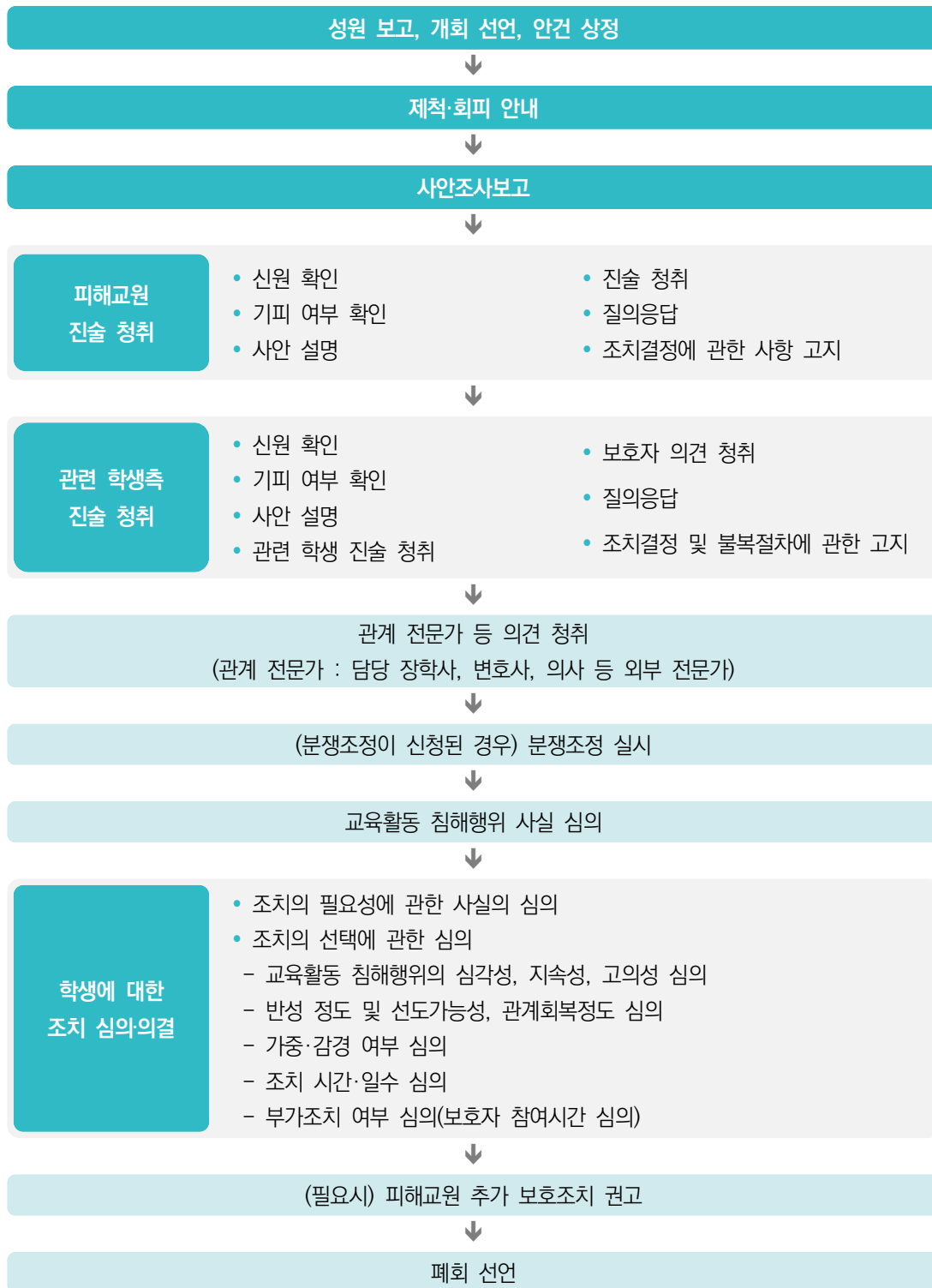
Q 관련 학생이나 교사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3호, 제2항,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르면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를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령의 규정과 취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변호사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을 제출받아 변호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가 아닌 지인이나 친인척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보호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이고 학생 상황에 따라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입니다.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가 아닌 지인이나 친인척 등은 행정절차에서 대리인으로서 자격이 없으므로 보호자에게 진술보조인이 필요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는 제삼자의 출석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의 보호자에게 진술 보조가 필요한 상황 등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진행 개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시나리오 예시》

절차	세부 진행 발언
시작전	회의 자료 준비 및 출석위원 확인
개회 선언	(간 사) 반갑습니다. ○○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간사 ○○○입니다. 지금부터 ○○○○학년도 ○○학교 제○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성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재적위원 ○명 중 ○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위원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재적위원 ○명 중 3분의 2 이상인 ○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학교 제○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인사말 안전 상징	(위원장) 바쁘신 일정 중에도 ○○학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교원의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관련자(학생,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통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열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목적과 규정에 따라 올바른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늘 심의할 안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번호 2000-00, A교사와 B학생이 관련된 사안입니다.
제척·회피 안내	(위원장) 위원의 제척·회피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교원지위법 제16조제1항 및 제13조에 따라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전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또는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해당 위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의할 사안과 관련하여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회피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
주의 사항 안내	(위원장)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 중 욕설, 폭언, 폭행 등을 할 경우에는 퇴실 조치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회의 진행과정은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녹취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세부 진행 발언
사안 조사 보고	(위원장) 이번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 사) 사안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 ○월 ○일 ○○에서 발생하였습니다. B학생이 수업 중이던 A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이라고 욕설을 하고 팔을 휘둘러 A교사의 허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습니다. ○월 ○일 해당 교원 및 목격자인 C학생의 진술이 이루어졌고, ○월 ○일 B학생의 진술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증거로 A교사에 대한 진단서가 제출되었습니다. (※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가 있는 경우 요약 보고) ※ 당사자 사이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간사) A교사와 B학생은 ~한 사실은 인정하나 ~한 점에서 주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A교사는 ~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B학생은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관련 증거로 ~이 제출되었습니다. (간 사) 양측 당사자 모두 분쟁조정의 의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쟁점 사항 확인 질의 응답	(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원치 않으므로 이번 회의의 주요 쟁점 사안은 당사자의 주장 중 상반된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피해교원과 관계 회복 정도에 대한 파악으로 요약됩니다.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나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간사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교원 진술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위원 동의) 다음으로 피해교원의 진술을 듣고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해당 교원을 입장시켜 주십시오. 〈대기 장소에 있던 피해교원 입장〉 (위원장)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위해 필요한 절차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피해교원) 저는 ○○○입니다. (위원장) 먼저, 기피신청에 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교권보호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와 관련해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기피신청할 위원이 있습니까? (※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기피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기피 여부 결정)

절차	세부 진행 발언
	(위원장) 다음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욕설, 폭언, 폭행을 할 경우에는 퇴실 조치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다음은 사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관련 내용을 잘 듣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사안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사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생님께서는 간사가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교원 진술)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본 사안에 대한 이해를 위한 질문 또는 필요한 발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 ※ 주요 질의 및 확인 내용 - 침해행위 사실 확인(특히, 학생 및 보호자의 주장과 다른 경우) - 기본 판단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관계회복 정도) - 부가적 판단요소(임신, 장애 여부) - 그 밖에 선도·교육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위원 동의) 선생님께서 이 사안과 관련한 요구 사항 등을 포함하여 마지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교원) (※ 관련 학생에 대한 의견 및 보호조치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진술)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일주일 내에 서면으로 통지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피해교원 퇴장〉
관련자 진술	(위원장) 다음으로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측의 진술을 듣고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관련 학생과 보호자를 입장시켜 주십시오. 〈대기 장소에 있는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입장〉 (위원장)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학 생) 저는 ○○○입니다.

절차	세부 진행 발언
	(보호자) 저는 ○○○ 학생의 아버지/어머니 ○○○입니다. (위원장) (기피신청 안내, 주의사항 안내) (위원장) 다음은 사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학생 및 보호자께서도 관련 내용을 잘 듣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사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사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 학생과 보호자는 간사가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십시오.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진술〉 위원님들께서는 확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 (위원장) 생과 보호자께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질의 응답〉 ※ 주요 질의 및 확인 내용 - 침해행위 사실 확인(특히, 피해교원과 주장이 다른 경우) - 기본 판단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관계회복 정도) - 부가적 판단요소(장애 여부) - 그 밖에 선도·교육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장)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보호자) (마지막 진술)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조치결정은 일주일 안에 학생의 주소지로 서면통지될 것입니다. 퇴학 또는 전학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학교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도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생 및 보호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련 학생 및 보호자 퇴장〉
교육 활동 침해 행위 사실 심의	(위원장) 지금까지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진술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사안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시 간사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대한 자료 제공,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및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중 교육활동 침해 유형 참고) (※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관련 사실 인정 및 해당 사실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의)

절차	세부 진행 발언
	〈위원 상호 의견 개진〉 (위원장) 지금까지 해당 사안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지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 해당 사안은 출석위원 ○명 중 ○명의 찬성으로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반복적 부당 간섭 등 구체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기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참고 [서식 2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의결서의 내용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과 일치하여야 함}
관련 학생 조치 심의	(위원장) ■ 기본 판단 요소 심의 다음으로 관련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자료 제공) (위원장) 먼저 기본 판단요소 중 ‘침해행위 심각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각성’ 정도에 대한 점수와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각성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점수 의결〉 (위원장) 침해행위 심각성은 출석위원 ○명 중 ○명의 찬성으로 ○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이하 동일한 방법으로 기본 판단 요소 심의〉 (위원장) 다음으로 ‘침해행위 지속성’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침해행위 고의성’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침해학생 반성 정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계회복 정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그럼 기본 판단요소에 대한 심의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석위원 과반

절차	세부 진행 발언
	(위원장) 수 찬성에 따라 심각성 3점, 지속성 3점, 고의성 3점, 침해학생 반성 정도 1점, 학생과 교원의 관계 회복 정도 1점, 총 11점입니다.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기준에 따르면 제4호 출석정지에 해당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판단 요소 심의 (위원장) 다음으로 추가 판단 요소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침해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감경이 가능하며,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가중이 가능합니다. (※ 간사는 추가 판단 요소와 관련된 사실 보고) (※ 가중·감경 사유 검토 및 상호 의견 개진 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감경·가중 여부 의결) (위원장) 본 사안의 경우 특별한 가중·감경 사유가 없으므로 그대로 출석정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출석정지로 의결한 경우 출석정지 일수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정지 일수에 관하여 위원 상호 의견 개진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출석정지 일수 의결〉 (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출석정지 일수는 5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일수는 5일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관련 학생	(위원장) 다음으로 부가조치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침해학생 선도를 위해 부가적으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상호 의견 개진 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부가조치 여부 및 시간 의결〉

절차	세부 진행 발언
부가 조치 여부 심의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부가조치 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시간도 함께 의결하며, 보호자의 참여시간도 의결) (※ 전학 조치 시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시간도 함께 의결) (위원장) 출석위원 ○명 중 ○명의 찬성으로 학생에 대하여 특별교육 ○시간, 보호자에 대하여 특별교육 ○시간을 부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관련 학생 조치	(위원장) 위원님들의 심의의결 내용을 종합한 결과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정지 5일 및 특별교육 ○시간으로, 보호자에 대하여는 특별교육 ○시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최종 의결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에 대하여 출석정지 5일 및 특별교육 ○시간으로, 보호자에 대해 특별교육 ○시간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피해 교원	(위원장) 지금부터 피해교원에게 추가로 필요한 보호조치에 관한 권고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는 학교장이 기 실시한 보호조치와 추가 가능한 보호조치 유형 설명)
보호 조치 권고	(위원 1) 피해교원 ○○○은 특별휴가 및 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상담을 지원해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보호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상호 의견 개진 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추가 보호조치 권고안 의결〉 (위원장) 위원님들 간 논의에 따라 피해교원 ○○○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로 심리상담 지원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피해교원 ○○○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는 출석위원 ○명 중 ○명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보호조치 내용 낭독 : 피해교원 ○○○에 대해 추가로 심리상담 지원을 권고한다.) (의사봉)
폐회 선언	(위원장)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 중 알게 된 당사자의 사생활 등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학년도 ○○학교 제○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단계별 분쟁조정 절차 개요〉

절 차	세부 사항
분쟁조정 신청	■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절차 안내 ■ 분쟁조정 의사 확인 ■ 당사자 중 일방이 분쟁조정 신청 ■ 신청기한 : 사안발생일로부터 1개월 ■ 사안발생보고에 분쟁조정 신청 여부 표시
↓	
분쟁조정 개시	■ 분쟁조정 개시 거부 및 중지 사유 확인 ■ 신청일로부터 21일 이내 분쟁조정 개시 ■ 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일시 및 장소 통지 ■ 출석 불능 시 분쟁조정 연기 신청 → 분쟁조정 기일 재지정 ■ 필요한 경우 분쟁담당자 지정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
↓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쟁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가능〉 -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분쟁의 성질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정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
↓	
분쟁조정 실시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 당사자 의견 및 요청사항 청취 - 조정안 제시 등 조정 노력
↓	
분쟁조정 종결	■ (분쟁조정 성립 시) - 합의서 작성 및 서명 또는 기명날인 - 당사자에게 합의서 통보 ■ (분쟁조정 불성립 시) - 분쟁조정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 종료 가능 - 당사자에게 분쟁조정 불성립 통보 -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 2차 분쟁조정 신청 가능 안내 - 분쟁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정안 권고 가능 ■ 관할 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에 조정결과 보고

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1) 분쟁조정의 의미

- 위원회가 조정자가 되어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마련해 화해로 이끄는 절차
-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 분쟁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가급적 학교 안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
- 특히 보호자 등 학생이 아닌 사람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적용 가능

(2) 분쟁조정절차

(가) 분쟁조정의 신청

- 분쟁조정을 원하는 당사자 일방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나) 분쟁조정의 개시

-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가급적 21일 이내 분쟁조정 시작
- 양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일시 및 장소 통보
-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불출석할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 기일 재지정

(다) 분쟁조정의 개시 거부 및 분쟁조정의 중지

〈분쟁조정 개시 거부 및 중지 사유〉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분쟁의 성질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조정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

- 위 사유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중지 가능
-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중지한 경우 그 사유를 양당사자에게 통보

(라) 분쟁 조정의 실시

-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 가능
- 진술 청취 후 양보·화해·합의하도록 유도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조정 시도

(마) 분쟁 조정의 종료

- 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② 분쟁조정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분쟁조정 종료 가능
- 분쟁 조정을 종료한 경우 그 사유를 양당사자에게 통보

① 분쟁 조정이 성립한 경우

- 합의를 작성하여 양당사자에게 통보
- 합의는 민사상 화해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고 권리를 승인하는 것이 되며 종전의 법률관계를 주장하지 못 함

〈합의서의 기재사항〉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 가. 분쟁의 경위
 - 나.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분쟁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 분쟁 조정 종료 사유를 양당사자에게 통보
- 시·도교육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일정한 행위 또는 행위의 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 권고 가능

〈학교교육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시 주의사항〉

- 사안조사 단계에서 당사자의 분쟁조정 의사 확인
- 양당사자가 모두 분쟁조정에 동의한 경우 분쟁조정 개시
- 학생의 경우에도 분쟁조정 가능
- 분쟁조정 개시 거부 및 중지 사유가 있는지 확인
- 합의사항에는 사과나 화해, 손해배상, 재발방지 약속 등이 가능
- 합의사항은 당사자에게 처분권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강행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됨
-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전제로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권고 가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시나리오 예시》

절차	세부 진행 발언
시작전	회의 자료 준비 및 출석위원 확인
개회 선언	(간 사) 반갑습니다. ○○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간사 ○○○입니다. 지금부터 ○○○○학년도 ○○학교 제○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께서는 성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재적위원 ○명 중 ○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위원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재적위원 ○명 중 3분의 2 이상인 ○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학교 제○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인사말	(위원장) 바쁘신 일정 중에도 ○○학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 제19조에 따라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목적과 규정에 의거 합리적인 분쟁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	(위원장) 오늘 조정할 안건은 사안번호 2000-00, A교사와 B학부모가 관련된 사안입니다.
제척·회 피 안내	(위원장) 위원의 제척·회피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교원지위법 제16조제1항 및 제13조에 따라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또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의할 사안과 관련하여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회피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
사안 조사 보고	(위원장) 이번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간 사) 사안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 ○월 ○일 ○○에서 발생하였습니다. C학생의 아버지/어머니인 B학부모가 수업 중이던 A교사에게 “○○○○”이라고 욕설을 하고 팔을 휘둘러 A교사의 허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습니다. ○월 ○일 해당 교원 및 목격자인 D학생과 E교사의 진술이 이루어졌고, ○월 ○일 B학부모의 진술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증거로 A교사에 대한 진단서가 제출되었습니다. (※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가 있는 경우 요약 보고)

	※ 당사자 사이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간사) A교사와 B학부모는 ~~한 사실은 인정하나 ~~한 점에서 주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A교사는 ~~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B학부모는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관련 증거로 ~~이 제출되었습니다. (간 사) 피해교원이 ○월 ○일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B 학부모도 분쟁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질의 응답	(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나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간사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 조정	(위원장) 피해교원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므로 먼저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입장시켜 주십시오 〈대기 장소에 있던 피해교원과 학부모 입장〉 (위원장) 신청인의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피해교원) 저는 ○○○입니다. (위원장) 피신청인의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부모) 저는 ○○○입니다. (위원장) 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상호 양해를 통해 교육활동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장입니다. 양당사자 모두 분쟁조정절차를 원하신 만큼 마음을 열고 미래지향적 조정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먼저, 기피신청에 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교권보호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와 관련해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기피신청할 위원이 있습니까? (피해교원) 없습니다. (위원장) 피신청인은 기피신청할 위원이 있습니까? (학부모) 없습니다. (※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기피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기피 여부 결정) (위원장) 이번 분쟁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및 요청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인께서 의견 및 요청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피해교원)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가 크고, 재발이 우려됩니다. 보호자께서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출한 치료비를 지급해주셨으면 합니다. (학부모) 이번 일에는 학부모에 대한 교사의 잘못된 상담방식에도 원인이 있습니

	다. 앞으로 상담방식을 개선해 주시고, 이번 일로 학생이 앞으로 학교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쟁 조정 성립	(위원장) 과거의 문제보다는 관계회복 및 미래의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다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한 발씩 양보가 필요합니다. 상호수용을 전제로 학부모님께서선 선생님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치료비 ○○○원을 지급하고, 선생님께서는 상담방식을 개선하고, 향후 학생이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양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없으신가요? 〈피해교원, 학부모 동의〉 (위원장) 이로써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양당사자가 동의한 조정안에 대하여 분쟁조정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겠습니다. 〈분쟁조정 합의서 작성 및 서명·날인〉 (위원장) 양 당사자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 조정 불성립	〈피해교원, 학부모 부동의〉 (위원장) 조정안에 대한 당사자 간 이견이 있어 조정이 성립하지 못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양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권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은 다시 조정을 원할 경우 ○○시·도교육보호위원회에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 당사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피해교원과 학부모 퇴장〉 (위원장)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조정안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1) 학부모님께서는 선생님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치료비 ○○○원을 지급하고, 선생님께서는 상담방식을 개선하고, 향후 학생이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조정안을 권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위원2) 동의합니다.

〈위원 상호 의견 개진 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정권고안 의결〉	
(위원장)	위원님들 간 논의에 따라 조정안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의 조정안은 출석위원 ○명 중 ○명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조정권고안 내용 낭독 : 학부모 ○○는 교사○○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치료비 ○○○원을 지급하고, 교사 ○○은 상담 방식을 개선하고, 향후 학생이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한다.) (의사봉)
(위원장)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 중 알게 된 당사자의 사생활 등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학년도 ○○학교 제○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의 심의

- 각 당사자의 진술, 문답서 및 진술서, 목격자 진술 또는 진술서, 조사보고서 등 증거에 의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사실 인정 여부 결정
- 각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위원회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당사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함
-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을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 증거가 부족한 등의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않을 경우 조치 없음으로 종결 가능

(2) 조치의 결정

(가) 조치결정의 기준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기준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의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에 따름
-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②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③ 학생과 피해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④ 피해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⑤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를 고려

○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기준

① 기본 판단 요소

구분	침해행위 심각성	침해행위 지속성	침해행위 고의성	구분	침해학생 반성 정도	학생과 교원 관계회복정도
매우높음	5	5	5	높음	0	0
높음	4	4	4	보통	1	1
보통	3	3	3	낮음	2	2
낮음	2	2	2	없음	3	3
매우낮음	1	1	1			
없음	0	0	0			

② 추가 판단 요소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적용 여부 의결

구분	추가 판단 기준	조치 내용
감경	교육활동 침해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감경
가중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가중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독조치 또는 1호·2호·4호·5호·6호와 부가 조치 가능

※ 1단계 감경(→) 또는 가중(←) 처분 : 7호 ⇄ 6호 ⇄ 5호 ⇄ 4호 ⇄ 2호 ⇄ 1호

※ 교내봉사에서 감경될 경우 '조치없음' 결정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기준

구분	점수	조치 내용
조치없음	0~4	-
교내선도	1호	5~7 학교에서의 봉사
외부기관 연계선도	2호	8~10 사회 봉사
	3호	-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교육 환경 변화	교내 4호	11~13 출석 정지
	5호	14~16 학급 교체
	6호	17~21 전학
	7호	퇴학

【 전학·퇴학 조치 결정 시 준수사항 】

1.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음
2. 전학 또는 퇴학 조치는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3. 위의 1, 2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최초 발생한 사건에도 전학 또는 퇴학 조치 가능

(나) 조치결정의 방법

- 기본 판단 요소 중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0~5점 척도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학생과 교원의 관계회복 정도는 0~3점 척도로 평가
- 각 항목별 총점에 해당하는 조치 선택

- 추가 판단 요소로 가중·감경사유가 있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로 가중·감경 여부 결정 후 최종 조치 선택
- 학교에서의 봉사 또는 사회봉사로 의결하는 경우 총 시간을, 출석정지로 의결하는 경우 총 일수도 함께 결정
-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상 필요성을 고려하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부가 여부 결정
- 전학으로 의결할 경우 반드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부가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로 의결하거나 부가하는 경우 총 시간도 함께 정하고 보호자 참여시간도 함께 결정

Q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별표의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 기본 판단 요소 중 각 항목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심각성에서 3점, 지속성에서 3점, 고의성에서 4점, 반성의 정도에서 2점, 관계회복정도에서 1점으로 평가된 경우 총점 13점으로 출석정지에 해당하고, 여기에 더해 학생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감경하여 최종적으로 사회봉사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Q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결정과정에서 각 항목별 점수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A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결정과정에서 각 항목별 점수는 각 항목별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하고, 평균을 내는 방법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숙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Q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학생에 대하여 조치를 내리지 않을 수 있나요?

A 기본 판단 요소의 총점이 4점 이하이거나 기본 판단 요소 총점상 학교에서의 봉사(5~7점)에 해당하나 학생에게 장애가 있어 감경사유가 있는 등 사안이 경미하고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목적상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조치없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가중·감경 사유가 되는 “장애가 있는 경우”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여기서 “장애”란 “신체적 기능의 결함이나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 등으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이라는 뜻에서 넓은 의미의 장애를 의미하며, 장애인으로 등록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게 장애가 있는 등 가중·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 반드시 가중·감경을 하여야 하나요?

A

가중·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가중·감경할지 여부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즉 가중·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가중·감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가중·감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권고전학” 등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은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이므로 임의로 여기서 규정한 것 외에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Q

코로나 19 상황으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조치이행을 위한 외부 기관 참여 협조가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조치 이행 변경사항을 내부결재 후 학교장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실시하더라도 조치의 실효성이 유지되도록 교내봉사와 구별되는 방안, 내실있는 특별교육 프로그램(별도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초빙 등) 등을 마련하고 사전에 피해교원 및 침해학생 측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마)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 피해 교원에 대해 추가 보호조치 권고
- 보호조치의 유형 (교원지위법 제15조)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바) 회의록 작성

- 회의록에는 회의개최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 포함
- 각 위원들의 발언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

마. 사안 종결 단계

1) 조치의 통지

- 위원회가 조치를 의결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의결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통보
- 의결서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시
- 학교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결과통지공문에 결과통지서 및 의결서를 첨부하여 각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결과 통지

2) 조치기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기한〉

1~5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전학	해당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은 날부터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종료일부턴)	14일 이내	
퇴학 처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Q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전학조치를 하기 전에 특별교육이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 학생이 특별교육 등을 거부하는 경우 전학조치를 할 수 있나요?

A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전학조치 후 전입한 학교에서 특별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후속조치

- 당사자가 성실히 조치를 이행하도록 독려
- 피해교원에게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 회복과 치유에 필요한 조치
- 재발방지조치 및 추수지도로 당사자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복귀 지원
- 조치결과에 이의제기 시 불복절차 안내

4)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관할 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5)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미참여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참여하지 않은 경우 학교장은 이를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시·도교육감이 과태료 부과

바. 조치에 대한 구제절차

1) 국·공립학교의 경우

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

- 전학 또는 퇴학처분에 한해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교육청의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 가능

-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 가능

나) 행정심판

-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시·도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가능
- 행정심판은 전학·퇴학처분을 포함하여 모든 조치에 대해 청구 가능

다) 행정소송

- 관할 법원에 취소소송(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치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또는 무효확인소송 제기 가능

2) 사립학교의 경우

- 사립학교의 경우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전학 또는 퇴학처분에 한정)하거나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가능⁵⁾

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기관 지정 현황

참고: '2022. 경남 특별교육·심리치료 운영 계획'[경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2022. . .)]

1) Wee클래스 및 학교 상담실[Wee클래스 및 상담교사(상담사)] 배치된 학교

- 경미한 학교폭력(제1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부과된 특별교육 이수 가능(학생)
- 제17조제1항제2호, 제3호의 경우도 타기관에서 특별교육 이수 가능

2) Wee 스쿨

지역	기관명	전화	특별교육 실시여부 및 이수 가능 시간	심리치료 실시여부 및 이수 가능 시간
김해	낙동강학생교육원	055)720-7260~1	학생: 30시간(2박3일) 보호자: 6시간	운영하지 않음
진주	낙동강학생교육원 진산분원	055)760-3860~4	중고 여학생만 운영: 80시간(2주) 이상 중장기 특별교육	"
함안	낙동강학생교육원 칠북분원	055)586-7956~60	중고 남학생만 운영: 80시간(2주) 이상 중장기 특별교육	"

5) 다만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의 교장이 학생에 대하여 한 징계는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판례로 대구고법 2017. 11. 10. 선고 2017나22439 판결 참조.

3) Wee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	단기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기관					
	위(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화	특별교육 (최대운영시간)	심리치료 (최대운영시간)	전화	특별교육 (최대운영시간)	심리치료 (최대운영시간)
창원	210-0461~5,7	·학생: 24 ·보호자: 5	·학생: 6 ·보호자: 4	경남 055)711-1388	x	·학생: 12 ·보호자: 6
	[특별교육] 마산회원구 봉덕2길 3			창원(창원) 055)225-3900	·학생: 12 ·보호자: 5	·학생: 12 ·보호자: 5
	[심리치료] 의창구 중앙대로228번길 3			창원(마산) 055)245-7941/7925	·학생: 12 ·보호자: 10	·학생: 6 ·보호자: 5
				창원(진해) 055)551-2000	·학생: 12 ·보호자: 5	·학생: 12 ·보호자: 5
진주	055)740-2091~8	·학생: 20 ·보호자: 5	·학생: 8 ·보호자: 3	055)749-6211	·학생: 12 ·보호자: 6	·학생: 12 ·보호자: 6
통영	055)650-8025~7	·학생: 20 ·보호자: 5	·학생: 5 ·보호자: 2	055)644-2000	x	·학생: 10 ·보호자: 6
사천	055)830-1721~7	·학생: (중·고)25(초)5 ·보호자: 5	·학생: 5 ·보호자: 5	055)835-4199	·학생: 20 ·보호자: 6	x
김해	070-8767-7571	·학생: (중·고)30(초)4 ·보호자: 5	·학생: 5 ·보호자: 5	055)325-2000/ 330-7920	·학생: 12 ·보호자: 6	·학생: 12 ·보호자: 6
밀양	055)350-1490~7	·학생: 18 ·보호자: 5	·학생: 5 ·보호자: 2	055)355-2000	·학생: 10 ·보호자: 5	·학생: 12 ·보호자: 5
거제	055)636-9670~5	·학생: 16 ·보호자: 5	·학생: 8 ·보호자: 2	055)636-2000	·학생: 15	x
양산	055)379-3264	·학생: 15 ·보호자: 5	·학생: 6 ·보호자: 6	055)392-4716	·학생: 15 ·보호자: 5	·학생: 10 ·보호자: 5
의령	055)570-7131	·학생: 15 ·보호자: 5	·학생: 10 ·보호자: 5	055)570-4971~2	·학생: 20 ·보호자: 5	x
함안	055)580-8029	·학생: 20 ·보호자: 5	·학생: 10 ·보호자: 5	055)583-0924	·학생: 10 ·보호자: 5	·학생: 10 ·보호자: 5
창녕	055)530-3508~9	·학생: (중·고)15(초)5 ·보호자: 7	·학생: 10 ·보호자: 4	055)532-2000	·학생: 12 ·보호자: 5	·학생: 12 ·보호자: 5
고성	055)673-7042	·학생: 15 ·보호자: 5	·학생: 6 ·보호자: 5	055)673-6882	·학생: 12 ·보호자: 5	·학생: 12 ·보호자: 5
남해	055)860-4133	·학생: 15 ·보호자: 4	·학생: 10 ·보호자: 2	055)863-5279	·학생: 12 ·보호자: 4	·학생: 12 ·보호자: 4
하동	055)880-1933, 1935	·학생: 15 ·보호자: 4	·학생: 10 ·보호자: 2	055)883-3000	·학생: 12 ·보호자: 3	·학생: 12 ·보호자: 3
산청	055)970-3033/7~4 0	·학생: 24 ·보호자: 5	·학생: 10 ·보호자: 4	055)970-6591	·학생: 12 ·보호자: 5	x
함양	055)960-2742	·학생: 5 ·보호자: 4	·학생: 3 ·보호자: 2	055)963-7922	·학생: 12 ·보호자: 5	·학생: 6 ·보호자: 5
거창	055)940-6191	·학생: 15 ·보호자: 5	·학생: 10 ·보호자: 2	055)941-2000	·학생: 12 ·보호자: 4	·학생: 10 ·보호자: 4
합천	055)930-7060	·학생: 15 ·보호자: 5	·학생: 6 ·보호자: 2	055)930-3906	·학생: 20 ·보호자: 5	·학생: 20

4) 국가 및 지자체 운영기관 및 민간단체 위탁 기관

기관별 성격							
국가 및 지자체 운영 기관				민간단체 위탁기관			
기관명	연락처	특별교육 (최대운영 시간)	심리치료 (최대운영 시간)	기관명	연락처	특별교육 (최대운영시간)	심리치료 (최대운영시간)
경상남도청소년 성문화센터	055)832-9273	·학생: 15	x	푸른나무재단 경남지부	055)263-1388	·학생: 30 ·보호자: 10	·학생: 20 ·보호자: 6
창원청소년 꿈키움센터	055)286-3517	·학생: 30 ·보호자: 6	x	다운심리 상담센터	055)264-3343	·학생: 30 ·보호자: 5	·학생: 10 ·보호자: 5

기관별 성격							
국가 및 지자체 운영 기관				민간단체 위탁기관			
기관명	연락처	특별교육 (최대운영 시간)	심리치료 (최대운영 시간)	기관명	연락처	특별교육 (최대운영시간)	심리치료 (최대운영시간)
부산청소년 비행예방센터	051)971-8502-3	·학생: 20 ·보호자: 5	×	김해교육 문화연구소	055)336-1027	·학생: 30 ·보호자: 10	·학생: 10 ·보호자: 5
울산청소년 비행예방센터	052)272-5021	·학생: 35 ·보호자: 7	×	경남위기청소년 지원센터	055)331-0505	·학생: 60 ·보호자: 30	·학생: 60 ·보호자: 30
거제경찰서	055)639-0292	·학생: 10	×	한국통합 TA연구소	055)312-1242	×	·학생: 20 ·보호자: 6
거창경찰서	055)949-0356	·학생: 10	×	(사)한국청소년 문화원	055)387-6824	·학생: 30 ·보호자: 5	·학생: 10 ·보호자: 6
고성경찰서	055)647-3348	·학생: 10	×	푸른나무재단 진주사천지부	055)748-0388	·학생: 30 ·보호자: 10	·학생: 20 ·보호자: 20
김해서부경찰서	055)310-0163	·학생: 10	×	심리상담센터 본	055)642-4690	·학생: 30 ·보호자: 10	·학생: 20 ·보호자: 6
김해중부경찰서	055)344-8195	·학생: 10	×	두리심리 상담연구소	010-3122-5027	·학생: 30 ·보호자: 10	·학생: 20 ·보호자: 6
남해경찰서	055)860-6247	·학생: 10	×	인재대학교 금연교육연구소	055)325-3319	·학생: 30	×
마산동부경찰서	055)233-7242	·학생: 10	×	마산YMCA	055)251-4837	·학생: 30 ·보호자: 30	×
마산중부경찰서	055)240-2389	·학생: 10	×	해오름아동가족 심리상담센터	055)746-1078	×	·학생: 30 ·보호자: 10
밀양경찰서	055)350-0358	·학생: 10	×	미샘심리상담센터	055)387-4424	·학생: 18 ·보호자: 6	·학생: 40 ·보호자: 10
사천경찰서	055)850-7117	·학생: 10	×	더홈심리상담센터	055)362-4424	·학생: 30 ·보호자: 10	·학생: 40 ·보호자: 10
산청경찰서	055)970-3259	·학생: 10	×	르호브심리상담센터 (구)한국심리지원협회	055)688-4842	·학생: 40 ·보호자: 10	·학생: 40 ·보호자: 10
양산경찰서	055)392-0082	·학생: 10	×	김해글로벌 청소년센터	055)342-6867	·학생: 15 ·보호자: 15	·학생: 15 ·보호자: 15
의령경찰서	055)570-0345	·학생: 10	×	다올심리상담센터	010-4711-4326	·학생: 30 ·보호자: 10	·학생: 30 ·보호자: 10
진주경찰서	055)750-0272	·학생: 10	×	한국다인 상담교육센터	055)325-8383	·학생: 20 ·보호자: 20	·학생: 10 ·보호자: 10
진해경찰서	055)549-8143	·학생: 10	×	마인드 앤 브레인 아동청소년상담센터	055)263-3330	×	·학생: 20 ·보호자: 20
창녕경찰서	055)520-9255	·학생: 10	×	이하빈칸			
창원서부경찰서	055)290-0209	·학생: 10	×				
창원중부경찰서	055)233-0114	·학생: 10	×				
통영경찰서	055)640-0149	·학생: 10	×				
하동경찰서	055)880-3119	·학생: 10	×				
함안경찰서	055)589-8347	·학생: 10	×				
함양경찰서	055)960-1347	·학생: 10	×				
합천경찰서	055)930-6199	·학생: 10	×				

CHAPTER

IV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제도

1.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2. 그 밖에 사법적 조치
3. 교육활동 침해 외 사안에 대한 대응 방안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제도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가. 보호조치의 주체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 1) 관할청
 - 형사고발
 - 전보
- 2) 각급 학교의 장
 - 사안 발생 시 정신적, 신체적 안전 확보 의무
 - 특별휴가 5일 이내 재량 승인
 - 공무상 병가 재량 승인
 - 보호조치 이행 확인

나. 보호조치의 유형 (교원지위법 제15조 제2항)

- 1) 심리상담 및 조언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원은 각 시·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에 방문, 전화 및 화상으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기관이나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여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 지원
-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공무상 요양 승인
 -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입었을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 급여 지급

참고) 기간제 교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립 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 공무상 병가
 - 6일 이내의 단순 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승인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 승인

참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예규 제69호(2019.4.)]

(나) 아래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선거직 등)의 경우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 학교장은 교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공무상 병가 승인
- 공무상 병가의 기간은 공무상요양승인 결정에 따르며, 학교장이 진단서와 해당 교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 비정기 전보 요청
 -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은 희망하는 경우 비정기전보 요청

4) 특별휴가 (「교원지위법」 제14조의3)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 사용 가능

참고)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특별휴가)

① 학교의 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한 후 보호조치의 유형 심의

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추가 보호조치 권고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장의 보호조치 외에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해줄 것을 학교장에게 권고할 수 있음

마. 치료비 등 보호조치 비용

1) 보호조치 비용의 침해자 부담 원칙 (「교원지위법」 제15조 제5항)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부담
-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

2) 보호조치 비용의 절차

- 보호조치 비용부담을 신청하려는 피해교원 또는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보호조치 비용 부담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제출

3) 보호조치 비용의 범위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조의4)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부장관
 -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2 그 밖에 사법적 조치

가. 형사소송(고소와 고발)

-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법 등 각종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이를 고소하거나, 이를 알고 있는 제3자가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 또는 고발하여 침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음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이 모욕죄 등 친고죄에 해당되는 경우는 고소권자인 피해자 본인이 고소하여야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함
 -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유효함(형사소송법 제 230조 제1항)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 고소(고발)시 유의사항
 - 고소장(고발장)을 작성하여 검찰청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처벌의사를 밝히면 됨
 - 침해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 목격자 진술서, 녹취 등의 기록을 확보해 두어 증거로 활용
 - 고소(고발)를 한 이후라도, 침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 등의 사정으로 고소 취하 가능

나. 민사소송

- 불법행위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교원이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발생시킨 상대방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음
- 청구 시 유의 사항
 - 소장(침해자(피고)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 되어야 함)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
 - 반드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침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 불법행위와 교원에게 발생한 피해가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

다. 학교장 통고제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폭행, 재물손괴 등 각종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소년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행위(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도 해당됨. 이러한 경우 학교장 통고제도를 활용하여 교권을 회복하고 해당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절충적인 방법으로 만10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학생에게 소년법 상의 학교장 통고제 활용

참고) 「소년법」

»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 활용 방법
 - 학교장이 관할 법원에 학생과 보호자의 성명, 주거,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의 내용을 서면(통고서)으로 제출하거나 법원에 출석하여 법원 사무관 등에게 구술로도 가능
 - 원칙적으로는 학생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 없이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임
- 장점
 - 소년보호 처분을 받는 경우라도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학생의 장래에 전과로 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특징

- 학생의 비행행위에 대한 처벌보다 교육, 치료 및 재범 예방을 목적 함
- 학생이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아 신속한 문제해결을 통해 비행 초기에 선도 효과를 높일 수 있음

3 교육활동 침해 외 사안에 대한 대응 방안

- 교육활동 침해가 아닌 징계 처분과 같은 불이익 처분 및 부당한 처우,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에 관한 문제, 직장 괴롭힘, 갑질 피해 등에 대해서는 고충심사 청구 등을 통해 처리 가능

구분		종류	고충심사청구	소청심사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누가			국·공립교원	국·공립, 사립교원	국·공립, 사립교원
청구내용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 기타 신상문제 등 여러 고충에 대한 심사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권익 구제	인권침해, 차별행위
결정의 효력			권고	공·사립 모두 기속력 있음	행정기관에 대한 권고
불복할 경우	청구 인정	법적인 기속력은 없어 결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복 절차(행정소송 등) 없음		공립은 불복 불가 사립은 소청심사위원회 상대 행정소송 가능	-
	청구 기각			공립은 행정소송 사립은 소청심사위 상대 행정소송과 법인 상대 민사소송 가능	
기한			없음	30일 이내	없음
단계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시·도교육청) ⇒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교육부)	-	-
근거			교육공무원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가. 고충심사위원회

- 관련 법규: 「교육공무원법」 제49조(고충처리), 「공무원고충처리규정」
- 종류: 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각 시·도교육청)와 중앙고충심사위원회(교육부)가 설치되어 있음(교육공무원법 제49조 제3항)
- 청구대상: 국·공립 교원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아 고충심사위원회 심사대상이 아님)

교원 중 교장·원장은 교육부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바로 고충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외의 교원은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교육공무원법 제49조 제4항, 제5항)

- 고충처리의 대상⁶⁾: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규정/업무량,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에 관한 사항/상훈, 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기타 신상문제(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따른 차별대우에 관한 사항/기타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 등

• 주요 내용

- 교육공무원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49조 제1항)
-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해당 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긍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교육공무원법 제49조 제2항)
- 고충심사청구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 고충이 지속되고 있는 한 언제든지 고충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교육공무원이 중앙고충심사청구를 할 때는 고충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고충심사청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하여야 함

6) 단, 다음과 같은 사안들은 고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시정, 구제 등의 절차가 다른 법규에 마련되어 있는 사항(소청심사에 속하는 사항, 감사원의 판정 또는 처분에 대한 재심의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공무원 연금급여심사에 속하는 사항)
- 국가사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예산조치의 요구 등, 당해 행정기관으로는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사항)
- 기타사항(타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사항, 조직의 비리 등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요구, 법령의 개폐가 요구되는 사항) (출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ace.go.kr/act/o_dilemma_object.do)

참고: 보통고충심사 처리 절차

참고 : 보통고충심사 처리 절차

- 보통고충심사청구 및 고충심사 의뢰
청구인이 시·도교육감에게 청구서를 제출하면 시·도교육감은 고충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교장·원장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⁷⁾
- ↓
- 답변서 접수 및 청구인에 송부
- ↓
- 보통고충심사청구서 접수통지 및 답변서 등 제출 요구
관계기관의 장에게 청구서를 송부하고 답변서 등의 제출을 요구
- ↓
- 증거제출 및 사실조사 등
- ↓
- 심사기일통보 (심사 5일 전) 및 심사결정 (30일 이내, 30일 연장가능)
심사일 청구취지 및 인용여부를 결정
- ↓
- 심사결정서 송부 및 조치
결정서를 작성하여 시·도교육감에게 결정서 송부하면 시·도교육감은 청구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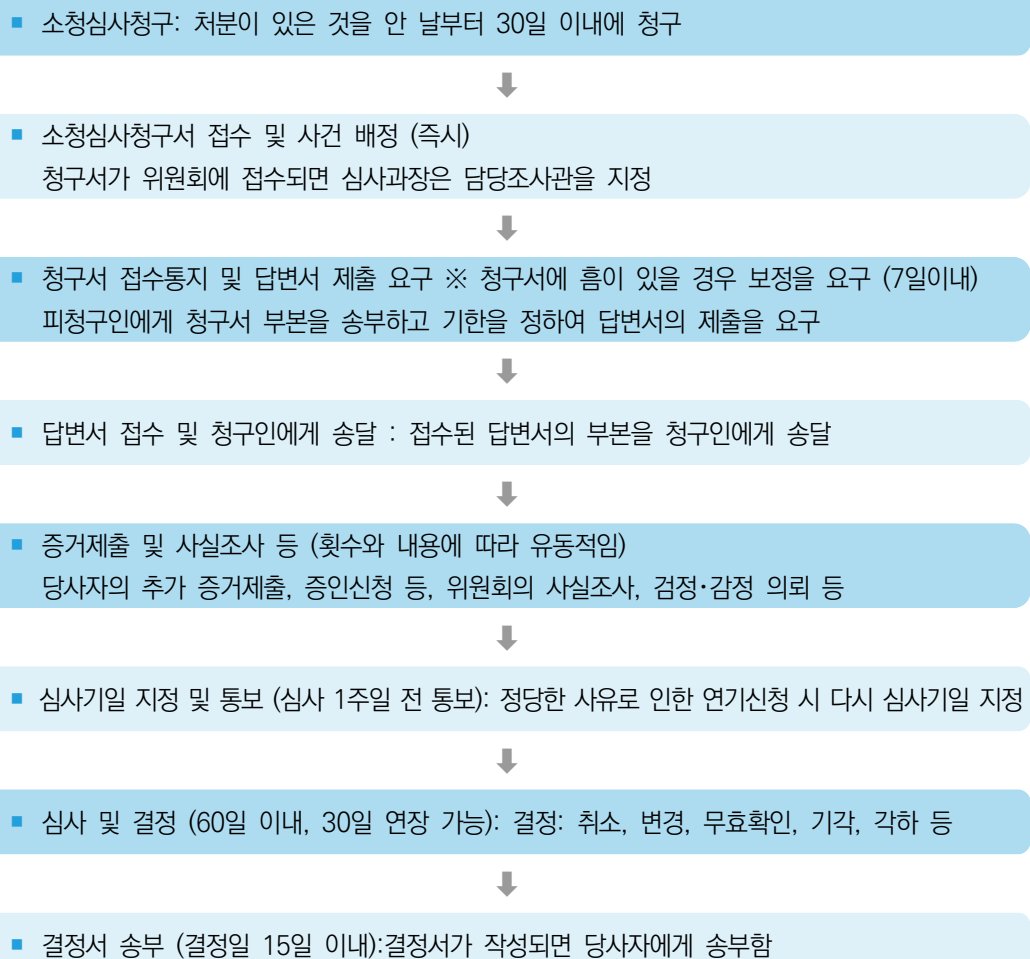
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설치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 소청심사의 대상: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및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강임, 휴직, 면직처분 등)로 규정
- 주요 내용
 - 교원이 징계 처분 및 그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 청구를 할 수 있음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소청 심사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

7) 자세한 내용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중앙고충심사안내 항목 확인

- 를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국·공립 교원은 소청심사위원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국·공립과 사립의 교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으나, 기간제교사나 학교의 일반 행정 직원은 교원소청심사의 청구인에 해당되지 않는 대신에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이 가능함

참고 : 심사 절차



다. 국가인권위원회

- 설치 목적: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 구제 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항에 의하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 집단 포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용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참고 : 심사 절차

■ 인권 상담

방문상담 : 인권상담센터(지역사무소) 직접 방문, 전화상담 :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31



■ 진정 접수

진정접수 방법 : 홈페이지,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모바일웹



■ 사건 조사

각 조사본부에 이송된 진정사건은 담당 조사관이 조사를 진행함. 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차별행위라고 볼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상임위원회 등 소관 소위원회의 의결로 직권조사를 할 수 있음



■ 위원회 의결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심의하여 권고, 기각, 각하, 합의권고, 이송 등의 결정을 내림



■ 당사자 통보

위원회는 심의·의결 후, 진정인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송부함

CHAPTER

V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1.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소개
2. 심리상담 · 치료 지원
3. 법률상담 지원
4. 행정 지원
5. 보호조치 비용 지원
6. 교원배상책임보험
7. 교원 힐링 연수 운영
8.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9. 수업방해 예방 「이음교실」 운영
10. 외부기관 연계 지원 계획
11. 외부 전문기관 연계 현황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1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소개

가. 위치: 경남교육청 제2청사 2층(창원센터)/ 진양도서관 3층(진주상담실)

나. 인력 구성 및 역할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18개 교육지원청 교원치유지원센터
창원센터	진주상담실	
센터장(장학관1), 부센터장(장학사2), 변호사(1), 전문상담사(2), 전문상담교사(1), 주무관(1)		담당 장학사(1~2명) 전문상담인력(1)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상담·지원 · 교육활동 보호 자료 개발 및 지원 · 교육활동 보호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구축 · 교육활동 보호 D/B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 교권보호 신속지원팀 운영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상담·지원 · 초·중학교 교권보호 업무 담당자와 협조하여 교권보호지원단 운영 · 교육활동 보호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가해 학생 상담 관리(요청 시) · 교권침해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운영

다. 센터 상담 이용

구 분	세 부 내 용	비고
상담 종류	심리상담 ■ 문의 -김주혜상담사(210-5124), kjhnyk@korea.kr -남수미상담사(210-5125), nsm2021@korea.kr -장선숙상담사(795-5120), seonsukj@korea.kr(진주) ■ 신청 및 문의: 월~금 09:00 ~ 18:00 ■ 상담 시간 : 월~금 09:00 ~ 18:00 (전화 후 방문) ※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 제외) 상담 진행 가능	상담료 무료
	법률상담 ■ 문의: 창원 210-5123 ■ 상담: 월~금 09:00 ~ 18:00 (전화 후 방문) ※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 제외) 상담 진행 가능	
	행정상담 ■ 문의: 278-1696(중등), 278-1697(유,초등) ■ 평일 09:00 ~ 18:00	
상담 신청 방법	■ 전화: 1811-7679(치유친구) ■ 팩스: 210-5129 ■ 홈페이지: http://www.gne.go.kr/forteacher - 온라인상담(심리/법률)	

2 심리상담·치료 지원

가. 일반 심리상담·치료

- 1) 목적: 교직과 관련한 직무스트레스 완화 및 교권침해 피해교원 치유
- 2) 이용 가능 시간
 -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월~금 09:00 ~ 18:00
 - ※ 부득이한 경우, 신청자와 상담실의 사정을 고려하여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 제외)에 상담진행 가능
- 3) 이용 방법
 - 희망 교원 전화 상담 또는 예약 후 대면 및 전화상담
- 4) 상담자: 전문상담사(3명)

나. 심리치료비(상담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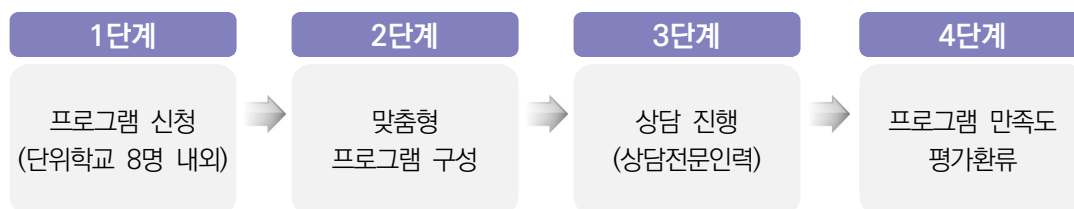
- 1) 대상: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및 교직 스트레스 호소 교원

※ 교직 스트레스 호소 교원: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지만,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민원 등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육체적·심리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의미
- 2)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와 외부 전문기관 연계 체계 구축
 - 전문 심리상담 기관 16기관
 - 전문 심리 치료 기관 10기관
- 3)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 연계 지원으로 심층서비스 제공
(개인 신청 → 기관 연계 → 상담 또는 치료)
- 4) 방법: 피해 교원이 희망하는 병원(상담센터) 내원 후 상담 및 진료 → 진료확인서 및 영수증 제출 → 100만원 이내 진료비 지원
 - ※ 단, 피해 정도 및 예산 사정에 따라 진료비 지원 조정 가능(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보상, 맞춤형복지비 내 보험료 지급, 경상남도 학예·쟁송에 관한 사무규칙에 의한 보상 등과 중복 지원 불가)

다. 집단상담

1) 목적: 교육활동 침해 및 심리적으로 소진된 학교 구성원의 치유와 성장, 갈등극복과 심리정서회복

2) 진행 절차



3) 신청 방법: 공문으로 희망하는 프로그램 신청 후 센터와 협의

4) 집단상담 프로그램(희망 학교)

- 전문 인력과 재료비는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

순	프로그램 종류
1	치유성장 집단상담 또는 갈등극복 집단상담
2	관계회복 집중상담: 동료교사/학생과의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
3	사이코드라마에 기반한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
4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처 다루기
5	T-Group , 명상

라. 무료 심리검사

1) 목적: 교원의 직무스트레스 진단 및 심리건강 점검을 통해 자기관리 능력 향상

2) 이용방법: 무료 심리검사 이벤트 공문 발송 및 신청, 상담사 문의 후 개별 신청(전화)

3) 심리검사 종류

온라인검사: PAI, IESS, MCMI, KDS, BDI-II, BAI, BHS, SRI 등

지필검사: 비구조화된 심리검사(Rorschach, BGT, SCT) 등

구조화된 심리검사(MMPI-2, NEO, TCI) 등

4) 결과 활용

- 개인 확인 후 대면 상담 필수(부득이한 경우 전화 상담 가능)

3 법률상담 지원

가. 법률상담

- 1) 목적: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법률 상담 지원으로 피해 교원의 심리적 안정감과 더불어 문제해결력 강화
- 2) 상담내용
 -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와 관련된 법률 자문에 관한 사항
 -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민사·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 3) 이용방법: 희망 교원 전화 상담 또는 예약 후 대면 상담
- 4) 이용 가능 시간: 월~금 09:00 ~ 18:00
 ※ 부득이한 경우, 신청자와 상담실의 사정을 고려하여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 제외)에 상담진행 가능
- 5) 상담자: 경남교육청 교권전담 변호사 류길용(☎210-5123)

나. 법률상담비 지원

- 1) 대상: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법률상담 희망 교원
- 2) 내용: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형사 및 행정 소송 비용 일부 지원
- 3) 방법: 외부기관 연계 법률상담비 지원(법률지원단과 연계)
- 4) 경상남도교육청 법률지원단 구성

변 호 사	연락처	FAX
민 태 식 (내외법무법인)	289-8898	289-8895
김 봉 균	289-9400	289-9500
허흥만 (법무법인 동남)	264-6657	264-6666
엄진아 (더바로 법률사무소)	362-8129	362-8127
김 슬 기	716-1716	716-1726
박 영 식	855-5590	855-5591

5) 상담비: 외부연계 법률 자문 및 상담 시 100만원 이내 지원

※ 단,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 가능

다.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자 고발(형사처벌규정 해당)

- 1) 목적: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한 고발 조치로 교육활동 보호
- 2) 내용: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한 관할청의 고발 조치가 의무화됨에 따른 변호사 수임비 지원

라. 찾아가는 학교 교권 연수(법률 특강): 희망학교(4~12월 시행)

- 1) 특강비 무료(도교육청 지원)
- 2) 일정은 학교 담당자와 도교육청 업무 담당 장학사가 조율하여 진행
- 3) 희망 학교 1시간 신청 시: 교권보호 교육 강사단(교원)이 실시
- 4) 희망 학교 2시간 이상 신청 시: 힐링 프로그램과 병행, 도교육청 장학사, 변호사,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강사단이 별도 실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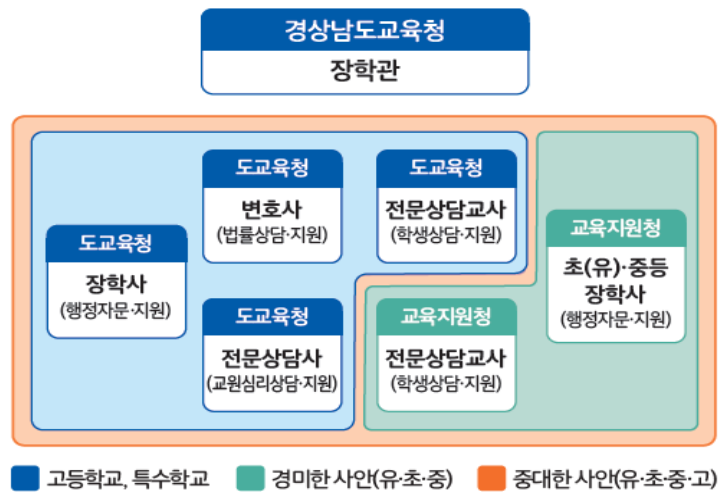
4 행정 지원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절차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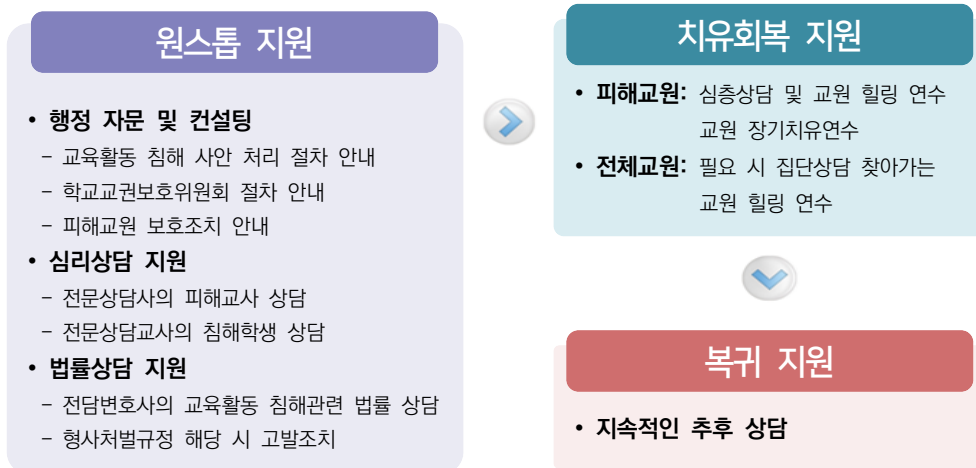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발생 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사자 간 분쟁 조정 및 피해 교원의 보호, 가해학생(가해자가 학생일 때) 조치를 위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절차 컨설팅

나. 교권보호신속지원팀 운영

- 1) 목적: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지원 체계 구축
- 2) 구성: 도교육청 장학관, 장학사, 변호사, 전문상담사 등(대표번호 1811-7679)
경미한 사안의 경우 유·초·중학교는 해당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지원단에서 갈등 조정



3) 지원 내용



다. 피해교원 보호 조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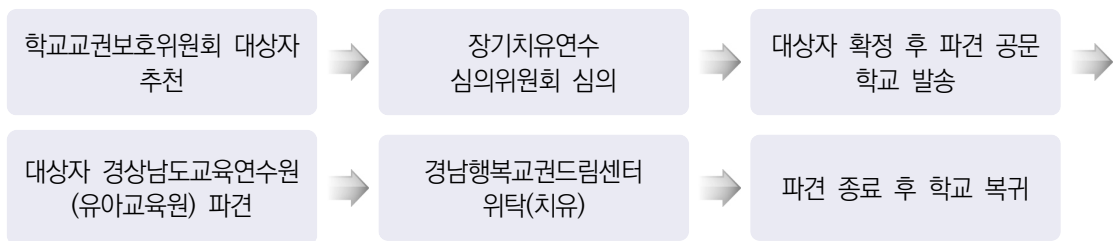
- 1) 5일 이내의 특별휴가 사용 가능
- 2) 6일 이내의 공무상병가는 학교장 승인(학교장 판단)으로 사용 가능
- 3) 6개월 이내의 공무상 병가 승인신청 방법
 - 요건: 공무상 부상,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자 할 때
 - 구비서류: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서(서식), 진단서 원본,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 경위조사서(서식) 등
 - 신청 절차

- ① 구비서류와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서를 피해교원이 작성하여 연금취급기관장(유·초·중학교의 경우 관할 교육장, 고등·특수학교의 경우 도교육감) 또는 공무원연금공단(인터넷)에 제출
- ② 학교에서 연금담당자 경위조사서 작성 후 공단으로 제출
- ③ 사실관계 확인, 현장·전문조사 및 의학자문, 조사서 작성, 인사혁신처

라. 교원장기치유연수

- 1) 지원대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으로 판단하여 특별휴가, 병가(공무상병가)를 실시하고도 학교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추천한 교원 (기간제교원 포함, 유치원은 공립에 한해 운영)

2) 운영 절차



3) 처우

- 급여, 호봉, 교육경력 100%인정
-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은 인사관리기준 및 학교 자체 성과평가 기준에 따름
- 연수비 일부 지원(단, 연수비 지원은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 계획에 따름)
- 직무연수로 인정하지 않음(심리치료 등 병원치료와 반드시 연계하여야 함)

4) 의무사항

- 연수기간 동안 반드시 학교(유치원) 복귀를 위한 치료·상담 병행
- 연수기간 내에 센터에서 실시하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특별연수 과정 참여(월 1회, 연수비 일부 또는 전액 도교육청 지원)
- 치료 및 상담 종료 시 확인증 제출(센터 내 상담 시 확인증은 별도 제출하지 않고 병원 치료비 영수증만 제출)
- 주 1회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내 면담 실시
 - ※ 공무상 병가 요청 승인 확정 시 도교육청 학교혁신과로 공문 제출(중복 지원 예방)

마. 비정기 전보: 교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해 교원 본인의 희망과 전보권자의 승인에 따라 동일 직위 최저 근무연한 이내 일지라도 전보 조치 가능

※ 근거 : 「2022. 초등교육공무원 인사 관리 기준」제4조(비정기 전보) ①의 10호

제4조(비정기 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 직위 최저 근무연한 이내 일지라도 전보할 수 있다.

10.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본인의 희망과 전보권자의 승인에 의한다.)

「2022. 중등교육공무원 인사 관리 기준」제32조(비정기 전보) ①의 6호

제32조(비정기 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 직위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전보할 수 있다.

6.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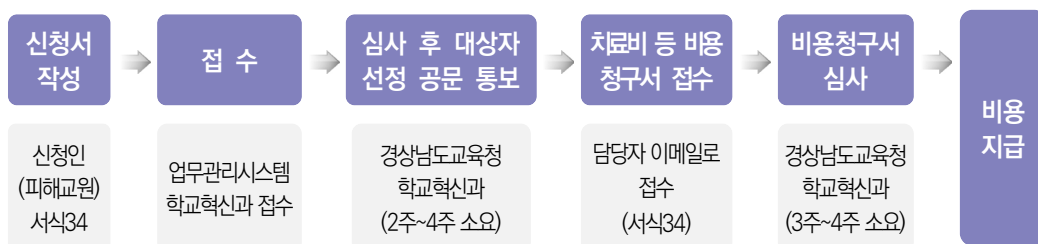
5 보호조치 비용(심리 및 상해치료) 지원

가. 보호조치 비용의 침해자 부담 원칙:

침해학생 및 침해자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제15조(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⑤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신청절차: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절차에 따름



다. 유의사항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학교혁신과로 공문 제출
-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이 있거나 기타 보험으로 보상받은 경우 중복 청구 불가
- 심리 및 상해 치료 비용은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지급하고, 1인당 200만원 초과 시 도교육청이 우선 지급하고 학부모에게 구상권 청구(학부모의 소송으로 청구 금액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
- 비용지급 대상자 선정 여부 결과 통보(공문)는 접수일로부터 2~4주 정도 소요

6 교원배상책임보험

가. 목적: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수행 여건 조성

나. 보험기간: 2022. 3. 22. ~ 2023. 3. 21.

다. 가입대상: 경상남도교육청 관내 국·공·사립학교(유치원 포함) 교원, 교육전문직원
(사안 발생일 기준 휴직자 제외, 계약제 교원 포함)
* 계약제교원: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름

라. 보상범위

- 민사: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1청구당 최고 2억원
- 형사: 수사단계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비용, 1청구당 최고 3천만원
 - 형사소송과 관련한 비용은 피보험자가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또는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또는 피소당한 경우(수사단계 포함)에 해당하며, 유죄인 경우 미보장
- 연간 총 10억원 한도

마. 보장내용: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원이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하여 법률 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및 형사 방어비용에 대한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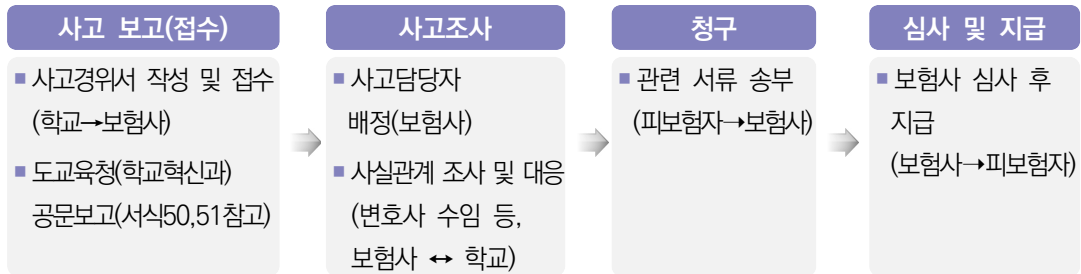
- 교원이 학교시설 또는 학교 밖 교육활동과 관련된 장소에서 수업, 학생상담,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 업무수행을 하는 동안 발생한 우연한 사고(집단따돌림 및 교원의 체벌, 인격침해 포함)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손해배상금
- (약칭)「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손해배상금 지원(교원이 구상금 청구를 당하여 지급한 금액 포함)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교육활동 중 일어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민사상 합의금(단, 합의 진행 시 반드시 보험사에 알리고 협의하여 진행)
- 교육전문직원의 교육활동 업무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청구가 제기된 법률상 손해배상금
- 손해방지의무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모든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법률상담비용 포함),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 조정에 따른 비용
- 손해배상 청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사고 당시 상기 전문인의 범주 내에서 경상남도교육청 소속의 교원임을 증명할 경우 피보험자 명단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보상을 시행하며, 모든 비용은 보상한도에 포함

※ 단, 명백한 교원의 과실에 의한 것은 제외

바.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유죄인 형사상 비용, 벌금, 과태료 등
- 교원이 제기한 민사·형사·행정소송에 대한 비용
- 교육청 소속 교원 간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 교원이 업무 종사 중 입은 신체 장애에 대한 손해(산재보험, 단체보험 영역)
- 교원이 보호,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학생 휴대폰 보관 중 분실 등)
- 타 보험(학교안전공제 등 공제 포함)에서 보상하는 손해
- 기타 계약상 가중책임, 간접손실, 업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적 배상책임 등

사.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 위 내용은 2022년 3월 21일 이전 가입된 보험계약에 근거하며, 2022년 교원배상책임보험 재가입 완료에 따른 변경사항은 별도 공문 안내 예정

7 교원 힐링 연수 운영

가. 목적

교원 직무스트레스 및 교권침해 피해교원 심리 안정, 자긍심 고취

나. 개요

1) 대상별 특화된 기간 집중 교원 힐링 연수

가) 대상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된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 센터 전문상담사가 추천하는 심층 심리상담이 필요한 위기 교원
- 특수학교 소속 또는 특수학생 지도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나) 연수 내용: 회복 탄력성 향상 및 치유 프로그램 제공

다) 연수 방법: 주말 또는 여름방학 중 집중 기간 설정, 프로그램 진행과 숙박을 위한 연수 장소 섭외

라) 유의 사항

- 대상자 선정: 공문을 통한 신청이 아닌 대상자 한정 안내 및 선정
- 신청 규모와 대상을 고려한 실제 힐링 연수 계획 수립
- 알림 공문: 관리자와 연수 참가 대상자에게만 공개

2) 쉽과 회복의 1박2일 교원 힐링 연수

가) 대상

- 교육활동 침해 및 직무 스트레스 호소 교사(4회)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적극 지원 및 직무 스트레스 호소 관리자(2회)

나) 연수 내용: 다양한 체험 위주의 심신 치유 프로그램 제공

다) 연수 방법: 5월과 10월 분산하여 실시, 프로그램 진행과 숙박을 위한 연수 장소 섭외

3) 행복교권드림센터 성별영향평가 수행

가) 성과지표: 교사 힐링 연수 남녀교사 수혜 비율 균등

나) 실행방안

- 남녀교사 수혜 비율 균등한 범위내에서 남교사 우선 선정 조치
- 남교사 참여 유도 프로그램 마련

※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규모나 횟수 조정 가능

8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가. 목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 실시

나. 근거: 「교원지위법」 제16조의 3

- 1)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학기별 1회 권장)
- 2)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다. 지원 내용

-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도교육청 지원)

구분	선정학교 수(예상 인원)
교육활동 보호 담당자 온라인 전달 연수	2,000명
교육활동 보호 담당자 권역별 역량 강화 연수	2,000명
찾아가는 교권 연수	80개교
찾아가는 교원 힐링 연수	20개교
교육활동 보호 원격연수	1,500명

2)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 활용 안내

• 교육부 개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자료

- 동영상 교육자료 소개

순	대 상	분량/구성	내용 구성
1	초등학교 저학년	8분 57초 (애니메이션)	초등학교 저학년 눈높이에 맞춰 잘못된 행위인지 모르고 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설명 https://youtu.be/d7L623ie518
2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8분 51초 (★학생 뉴스, 재연 드라마)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선생님과 친구들의 심리적, 교육적 영향 이해 및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에 대해 설명 https://youtu.be/rzvtDmJqW_o
3	중학교 고학년 ~고등학교	8분 37초 (★드라마)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심각한 사례를 다루고, 그 결과로 받을 수 있는 조치나 징계에 대한 설명을 통해 경각심을 가지도록 구성 https://youtu.be/GTUEjYXljiE
4	학부모	15분 17초 (전문가 대담)	학교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정의·실태, 유형 및 사례를 소개 하고 학부모가 할 수 있는 일 안내 https://youtu.be/cXwwqkvjMfM
5	교원	17분 27초 (전문가 대담)	자주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방 방법과 대응 방법, 피해교원 보호 조치 등을 안내 https://youtu.be/UzJBoFISU-U

- PPT 교육자료 소개

순	대 상	수 록 내 용
1	초등학생	교육활동 보호 학습자료, 퀴즈, 유형 및 사례
2	중·고등학생	교육활동 침해행위 안내 자료, 퀴즈, 학습자료
3	교원	특별법, 침해행위 대응 및 조치, 예방교육, 유형별 대응요령
4	학부모	침해행위 유형 및 조치, 학부모와 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기

- QR코드

동영상 교육자료	QR코드	PPT 교육자료	QR코드
교육활동 침해예방 동영상 교육자료 (초등 저학년)		교육활동 침해예방 교육자료 (초등)	
교육활동 침해예방 동영상 교육자료 (초등학교 고학년~중학교)		교육활동 침해예방 교육자료 (중등)	
교육활동 침해예방 동영상 교육자료 (중학교 고학년~고등학교)		교육활동 침해예방 교육자료 (학부모)	

동영상 교육자료	QR코드	PPT 교육자료	QR코드
교육활동 침해예방 동영상 교육자료 (학부모)		교육활동 침해예방 교육자료 (교원)	
교육활동 침해예방 동영상 교육자료 (교원)			

- 경상남도교육청 개발 자료 탑재 주소
 -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http://www.gne.go.kr/forteacher>
 - 교육활동 보호 자료실:
<https://sites.google.com/g.gne.go.kr/forteaher/home?authuser=0>



‘교육활동 보호 자료실’ 첫 화면



‘교육활동 보호 자료실’ 내용 구성

- 자료 소개 및 유튜브 주소, QR코드

순	구분	QR코드	순	구분	QR코드
1	#1 애니뮤직 -Respect https://youtu.be/LTn9XSKH-n0		10	#4 초등학교학년 4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와 예방 https://youtu.be/6j8eW5eZu5l	
2	#2 유치원 1 -선생님을 존중해요 https://youtu.be/MD9RdCMKw0c		11	#5 중고등학생 1 -교육활동 보호 할 말 있어요 https://youtu.be/fLtNq8ajTjw	
3	#2 유치원 2 -친구들을 배려해요 https://youtu.be/rCVNLsOAgcs		12	#5 중고등학생 2 -사례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보호 https://youtu.be/fVJyMWObx2w	
4	#3 초등저학년 1 -교육활동을 보호해요 https://youtu.be/1pbYAUJpt7Y		13	#5 중고등학생 3 -사례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보호 https://youtu.be/FK1LU-SVZmQ	
5	#3 초등저학년 2 -존중과 배려의 교실 함께 만들어요 https://youtu.be/yOsNGvQf9K4		14	#5 중고등학생 4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와 예방 https://youtu.be/6j8eW5eZu5l	
6	#3 초등저학년 3 -우리도 선생님을 도울 수 있어요 https://youtu.be/uAxpJ8rETcA		15	#6 교직원 1 -교육활동 침해 의미와 유형 https://youtu.be/NeuG8KtH-I8	
7	#4 초등학교학년 1 -교육활동 보호와 침해 행동 https://youtu.be/-2QUh6S7S7s		16	#6 교직원 2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및 조치 https://youtu.be/27O55u7exWE	
8	#4 초등학교학년 2 -교육활동 침해 유형 https://youtu.be/WJ5NL0Kcweo		17	#7 학부모 1 -교육활동 침해 의미와 유형 https://youtu.be/bbTERHJUvDQ	
9	#4 초등학교학년 3 -사례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보호 https://youtu.be/VtDZwRmp6NE		18	#7 학부모 2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및 조치 https://youtu.be/59VjpDttSzk	

9 수업방해 예방 「이음교실」 운영

가. 목적

수업방해 예방 및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활동 보호

이음교실

사전 예방 중심의 학교 차원의 긍정적 수업 행동 지원 프로그램

[의미]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간 상호 배움을 잇는 배려와 존중의 교실문화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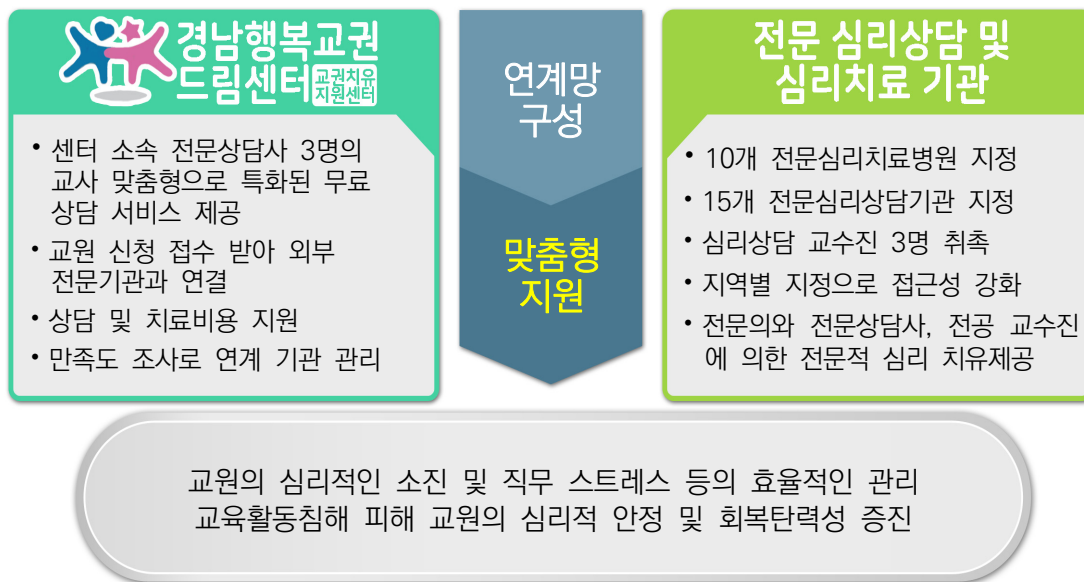
나. 내용

- 1) 수업방해 예방 「이음교실」 운영
 - 2022학년도 학교형 38교, 학년형 15교 24개 학년 운영
 - 내용
 - 교육공동체 수업방해 예방 대응 역량 강화
 - 관계회복을 위한 상담 및 생활교육 실시
 - 학교 차원의 긍정적 수업 행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행동에 근거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2) 수업방해 예방 이음교실 선정학교 담당자 연수(100명)
- 3) 수업방해 예방 이음교실 온라인 전달 연수(선도학교 소속 교원 또는 도내 희망 교원)
- 4) 수업방해 예방 현장 지원 컨설팅단 운영(30명)
- 5) 수업방해 예방 교원 역량 강화 원격 직무 연수(희망자 400명)
- 6) 수업방해 예방 이음교실 도움자료, 우수사례집 개발 보급

10 외부기관 연계 지원 계획

가. 대상: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및 직무스트레스 호소 교원

나. 연계 운영 체계



다. 전문심리상담기관 및 전문심리치료병원 연계 운영 프로그램

- | | |
|-----------------|--------------|
| 1) 심리 검사 및 해석상담 | 2) 정서적 안정 |
| 3) 심리 치유 및 회복 | 4) 직무스트레스 완화 |
| 5)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 6) 효능감 증진 등 |

라. 심리상담 교수진 연계 교원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

- 1) 관계회복 집중상담
- 2) 치유성장 집단상담
- 3) 갈등극복 집단상담

마. 전문심리상담센터 및 전문심리치료병원 연계 운영 절차



바. 상담 및 치료 신청

1)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및 진주상담실 전문상담사 메일로 신청

순	지역	전문상담사명 (전화번호)	전문상담사 메일	참고사항
1	창원	김주혜 (210-5124)	kjhnycc@korea.kr	- 지역별 배정은 편의상 지정된 것이므로 꼭 지킬 필요는 없음 - 생활근거지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하거나 기존에 상담을 진행했던 전문상담사를 통한 신청도 가능 - 상담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 서명한 후 스캔하여 전문상담사 메일로 제출 - 서식 - 개인상담신청서 [서식 39]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40] ※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탑재
2	고성			
3	통영			
4	거제			
5	의령	남수미 (210-5125)	nsm2021@korea.kr	
6	함안			
7	창녕			
8	밀양			
9	김해	장선숙 (795-5120)	seonsukj@korea.kr	
10	양산			
11	진주			
12	사천			
13	남해			
14	하동			
15	산청			
16	함양			
17	거창			
18	합천			

사. 심리상담비(치료비) 신청

1) 증빙 서류 준비

- 신청 서식: 【서식 41】
- 심리상담비: 상담기관의 확인서 및 영수증 등
- 심리치료비: 의사의 진료확인서 및 영수증 등

2) 만족도 조사 협조

- 만족도 조사 서식: 【서식 42】
- 목적: 상담 및 치료 만족도 제고, 위촉 기관 재위촉에 반영

3) 심리상담비(치료비) 신청 유의 사항

- 100만원 이내 지원(피해 정도 및 예산 사정에 따라 비용 조정 가능)
- 최초 신청 이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 외부기관 연계 비용 지원 이후 2년 이내에는 연계 비용 재신청 불가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유고할동 침해 피해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 금액 및 기간의 제한 없이 지원 가능(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신청)
-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보상, 맞춤형복지비 내 보험료 지급, 경상남도 학예·쟁송에 관한 사무규칙에 의한 보상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비용 신청 시기: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가 종료된 시점이나 비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시점

4) 신청방법: 상담(치료)를 신청 접수했던 전문상담사 메일로 제출

아. 심리상담 교수진 연계 프로그램 운영 절차: 신청 안내 공문 별도 발송 예정



11 외부 전문기관 연계 현황

가. 전문심리상담기관(16기관)

지역	기관명	성명	직책	전화	비고
창원	Y 심리상담센터	송영희	대표	245-7660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남길 3 가파빌딩 4층
		진료항목	개인상담,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트라우마/PTSD 치료, 정서관리, 자기이해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 관리		
	우리들 심리상담센터	이선화	대표	262-5663	창원시 산곡로 상남로 107, 메종드마스 301호
		진료항목	개인상담, 심리검사(HTP, SCT, MMPI, PAI, MBTI, BGT, TAT, Rorschach, KFD), 스트레스 관리, 치유명상, 힐링상담		
진주	씨앗과 나무 심리상담센터	김남연	대표	759-7939	진주시 개양로 6번길 32, 3층
		진료항목	개인상담, 심리검사, 사전사후평가로 효과 검증		
	청예단 (진주·사천지부)	장미연	지부장	748-0388	진주시 진양호로 341
		진료항목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미술치료, 명상음악, 싱잉볼 등		
	톡톡 심리상담센터	조성해	센터장	753-3033	진주시 동부로 1 펄빌딩 6층
		진료항목	심리검사, 개인상담, 미술치료, 분노조절, 자기이해, 트라우마 상담		
김해	진주 심리언어발달센터	김주옥	기관장	759-0177	진주시 내동로 356
		진료항목	개인상담, 심리검사, 자기이해, 소통과 공감		
	김해 교육문화연구소	정은희	대표	336-1027	김해시 내외중앙로 50, 정우센터빌딩 801호
		진료항목	개인상담, 심리검사, 심리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사후 심리검사		
거제	아미 아동가족 심리상담센터	정갑선	소장	311-1007	김해시 율하3로 37, 정보센터빌딩 301호
		진료항목	심리검사, 개인상담, 부부/가족상담, 부모상담 및 양육상담		
	다운 심리상담센터	김은영	센터장	633-1179	거제시 수양로 423, 303호
		진료항목	개인상담, 심리검사(HTP, SCT, MMPI, PAI, Holland SDS 애니어그램), 감정코칭 프로그램		
통영	두리 심리상담연구소	강돌순	소장	070-7376-5027	통영시 용남면 화포1길 66(통영두리힐링센터)
		진료항목	개인상담, 심리검사, 분노조절, 자기이해, 소통과공감		
양산	더 흙 심리상담센터	허혜정	센터장	362-4424	양산시 물금읍 범구로 17, 유림프라자 602호
		진료항목	개인상담, 심리검사, 분노조절, 자기이해, 대인관계프로그램		
함안	소중한 아동가족 심리상담센터	김미형	소장	584-3161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2길 26-7
		진료항목	개인상담, 심리검사, 분노조절, 자기이해, PTSD개입, 집단상담, 가족상담		
창녕	하람 상담심리센터	이경순	센터장	533-1050	창녕군 창녕읍 조산서재골로 69-3
		진료항목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의사소통 프로그램, 자기이해		
남해	마음결 심리상담센터	조미경	센터장	863-4321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19번길 61-7
		진료항목	개인상담, 자기이해 등		
거창	동그라미 심리상담 발달센터	조창숙	센터장	943-0746	거창군 거창읍 창남5길 3-33
		진료항목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부모교육, 자기이해, 소통과 공감		
합천	오늘 심리상담센터	안정란	센터장	931-1388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4길 201호
		진료항목	개인상담, 종합심리평가 실시 및 해석, 집단상담, 찾아가는 개인상담		

나. 심리치료의료기관(10기관)

지역	기관명	성명	직책	전화	비고
창원	동서병원	최재영	이사장	230-1800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원로 265
		하형래	전문의	230-1888	
		진료항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신경성식욕부진 치료, 공포증 심리치료		
	루이스 정신건강 의학과의원	이진욱	원장	275-7595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26 한독빌딩 4층
		진료항목	개인상담, 가족상담, 신경기능검사, 심리검사, 심리치료, 약물 치료		
	SMG 연세병원	유병국	진료과장	240-7638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76
		진료항목	전문의 상담, 심리검사, 약물치료		
	파티마 병원	박정순	병원장	270-1600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5
		진료항목	심리상담, 심리검사, 치료, 정기적 피드백		
진주	공감 정신건강 의학과의원	홍정원	병원장	748-3500	진주시 순환로 527, 좋은메디컬 701호
		정선애	실장		
		진료항목	개인상담, 집단상담, 종합심리검사, 위기사례 진단 및 위기개입		
	해마음 정신건강 의학과의원	황선영	병원장	754-3375	진주시 진주대로 880, 3층
		정철홍	담당전문의		
		진료항목	종합심리검사, 마음챙김, 인지행동치료, 수용전념치료, 트라우마 치료, 스키마 치료		
사천	사천 한마음병원	김숙주	이사장	832-3311	사천시 향촌4길 127
		진료항목	개인상담, 심리검사, 분노조절, 자기이해, 위기관리		
의령	의령사랑병원	김현준	이사장	600-2008	의령군 의령읍 의합대로 105-8
		진료항목	인지치료, 심리치료, 약물치료, 비약물 치료		
합천	합천고려병원	주청자	이사장	933-1006	합천군 대양면 대야로 737-20
		진료항목	개인상담, 심리검사, 분노조절, 자기이해, 소통과 공감		
밀양	밀양 정신건강 의학과의원	홍태경	전문의	356-9111	밀양시 상문중앙로 38, 2층
		진료항목	정신건강의학적 평가 및 외래진료(투약 및 상담), 임상심리검사 및 해석상담		

다. 심리상담 교수진(3명) 연계 프로그램

관계회복 집중상담

진주교대 홍상환 교수

- 관계회복이 필요한 교사·학생, 교사·관리자, 교사·학부모, 동료 교직원 간 등 2인 또는 개인 상담으로 진행
- 1단계: 온라인 심리검사
- 2단계: 해석상담
- 3단계: 개별 상담
- 4단계: 팀 상담

치유성장 집단상담

경상국립대 여순화 교수

- 자기이해 및 타인수용을 위한 집단상담
- 1회기: 내 마음 사용법
- 2회기: 동화 심리
- 3회기: 애니어그램 힐링1
- 4회기: 애니어그램 힐링2
- 회기당 3시간

갈등극복 집단상담

경상국립대 김순자 교수

- 갈등극복 및 심리정서회복을 위한 집단상담
- 1회기: 평화 형성 서클배우기
- 2회기: 내 감정 활용하기와 명상 연습
- 3회기: 삶의 불공평함 다루기
- 4회기: 사회적 상처 손상 다루기
- 5회기: 건강한 관계 형성하기
- 6회기: 건강한 파트너쉽 만들기
- 7회기: 희망으로 나아가기
- 회기당 2시간

2022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부록

1. 사례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2.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규
3.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제6호) 업무 지침
4. 교원 장기치유연수 운영 계획
5. 단위 학교 및 지역교육청 역할 및 협조 사항
6. 각종 서식

1

사례8)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 교원지위법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만 함)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만 함) 제44조의 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5.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I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상해 및 폭행 행위는 교원지위법상 대표적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원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고 교권을 크게 실추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유형의 침해 행위로 다뤄지고 있다.

1. 상해의 개념

- 상해란, 타인의 신체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그 수단은 유·무형 / 직·간접 행위를 불문한다.

8) 이 장의 사례에 등장하는 인물, 지명, 학교명 등은 모두 가명임

2. 상해 사례 및 Q&A

1) 사례

특수학교 설이반 선생님은 최근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울증, 대인기피, 수면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다. 교사가 된 지 2년 만에 생긴 병이었다. 선생님은 그동안 학부모의 억지 주장과 무리한 요구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다. 어느 날 학부모는 전화 통화 중 선생님에게 “머리는 장식품으로 가지고 다니냐”, “개불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마”라는 등의 심한 인격모독성 발언을 했다. 이로 인해 선생님은 큰 충격을 받고 많은 눈물을 흘렸다. 이후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

2) Q&A

Q1 사람의 정신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상해에 해당하는가?

A1 상해에 해당하는 신체의 건강 훼손 또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 장애에는 육체적 부분뿐 아니라 정신적 부분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정신 건강의 훼손 또는 정신적 기능 장애도 상해가 된다. 다만, 일시적인 불안이나 스트레스는 가해행위에 대한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이므로 그 자체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체의 건강 훼손, 사람의 생리적 기능 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보통 의사의 진단서를 주요 근거 삼아 이뤄지고 있다.

Q2 상해는 폭행의 결과로만 인정되는가?

A2 상해죄와 폭행죄는 형법전(刑法典)에 하나의 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 둘을 함께 설명할 때가 많고, 주로 폭행의 결과로서 상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폭행의 경우에만 상해가 인정된다고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상해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므로(유·무형, 직·간접 수단을 불문함), 어떤 위법적인 수단으로든 타인에게 상해(신체의 건강 훼손 또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 장애)를 발생시키면 상해가 될 수 있다.

위 설이반 선생님 사례에서 학부모는 선생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위법적인 발언을 하여 선생님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렇다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상해)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3. 폭행의 개념

- 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4. 폭행 사례 및 Q&A

1) 사례 1

빛나리 중학교 홍두개 선생님은 매일 등교 시간에 교문지도 및 교통안내를 담당하고 있다. 교문 앞 도로는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 곳으로, 학교에서는 등교 중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얼마 떨어진 지정된 장소에서 승하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사건 당일, 홍교사의 안내에도 차량 정차가 금지된 곳에서 학생이 내렸고, 홍교사는 교칙 위반으로 학생을 지도했다. 그러자 몹시 흥분한 보호자가 다짜고짜 폭언을 하며 홍교사의 목살을 잡고 흔들었고, 홍교사는 학생들 앞에서 큰 봉변을 당했다. 홍교사는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보호자의 손을 뿌리치고 보호자를 밀쳤는데, 이후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자 보호자는 자신도 홍교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Q&A

Q1 폭행에서 말하는 유형력의 행사란 무엇인가?

A1 유형력이란 형태를 띠고 있는 힘의 행세를 말하는 것으로 소리, 침, 빛, 연기 등도 유형력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담배 연기를 내 뿜는 것도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면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예컨대, 상대방의 청각기관에 직접 고통을 주기 위해 상대방 가까이에서 고성을 지르는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

위 홍두개 선생님의 사례에서 보호자가 선생님의 목살을 잡고 흔든 행위는 분명한 유형력의 행사이고, 이로써 선생님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폭행) 사안으로 「교원지위법」에 따라 대처해야 할 것이다.

Q2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모두 폭행죄에 해당하는가?

A2 이때 유형력의 행사는 위법해야 한다. 예컨대, 상대방의 폭행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상대방을 붙잡거나 뿌리치는 행위 등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므로(정당방위로도 볼 수 있다) 폭행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홍두개 선생님의 행위(보호자의 폭행에 대해 손을 뿌리치고 밀쳐낸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사례 2

진달래 고등학교 구은애 선생님은 수업 중 자는 학생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어떻게든 수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여러 방법을 써 보았지만, 변화가 없는 학생을 보며 교사로서 자괴감과 회의감도 들었다. 그날도 몇 번의 지도에도 옆드려 자는 학생에게 결국 구교사는 소리를 높였고, 잠에서 깬 학생은 구교사를 위협적으로 노려보았다. 여기서 물러나면 앞으로 수업이 어렵겠다고 생각한 구교사도 물러서지 않고 학생에게 자세를 바로 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학생은 의자를 들어 구교사를 향해 던지려는 나가버렸다. 던진 의자가 구교사를 살짝 비껴가 큰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으나 이 일로 구교사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한동안 학교를 쉬어야 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보호자는 학생이 의자로 선생님을 맞출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도 맞지 않았으니 교원에 대한 폭행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4) Q&A

Q1 교원에 대하여 고의로 한 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볼 수 있는가?

A1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원에 대한 고의적인 행위이어야 한다. 만약 교원에 대한 행위가 아니거나 고의로 한 행위가 아니라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아니다.

(가) 창밖에 쓰레기를 던졌는데, 우연히 교원이 맞은 경우

- 교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으므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아니다(이 경우 학교 안전사고로 다뤄 피해교원을 보호). 이때 학생은 쓰레기를 창밖에 버린 행위 및 그로 인해 교원이 다친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서 학교장으로부터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선도(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아니므로 「교원지위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미필적 고의가 있는 아래 (나)의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나) 교원에 대한 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 형사법상 고의로 취급하는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에게 범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그 발생 위험을 용인(容認)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화가 난 학생이 물건을 마구 발로 차서 교원이 맞았는데, 학생의 행위 형태와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교원이 물건에 맞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고,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교원에 대한 폭행의 고의로 한 행위로 취급된다.

위 구은에 선생님의 사례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향해 의자를 던진 행위는 선생님이 의자에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 행동한 것이라고 미루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선생님에 대한 폭행의 고의로 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Q1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해야 폭행이 되는가?

A1 폭행죄에서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위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물건이나 시설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이로 인해 교원이 놀랐다고 할지라도 교원에 대한 폭행으로는 볼 수 없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면, 피해자의 신체에 반드시 접촉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공간적으로 근접하면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아도 폭행을 인정¹⁰⁾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와 공간적으로 근접한 상태에서 때릴 듯이 손 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폭행에 해당한다.¹¹⁾

그렇다면 위 사례에서 구은에 선생님을 향해 의자를 던진 행위는 선생님이 의자에 맞지 않았더라도 선생님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

9)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10)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11)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II 「형법」 제2편제30장(협박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1. 협박의 개념

-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해악의 고지는 실제로 그 내용이 발생 가능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언어는 물론 행동(거동)을 통한 협박도 가능하다.

2. 협박 사례 및 Q&A

1) 사례

떡잎 유치원 채성아 선생님은 교육활동 중 자주 교실 밖으로 돌아다니는 원생 수현이(만 5세)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사안이 발생한 날에도 채교사가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수현이를 붙잡았는데, 수현이가 도망가려하다가 미끄러지며 뒤로 넘어졌다. 순간 쿵 소리가 났으나 외상이 없어서 선생님은 일단 아이를 진정시키며 경과를 지켜보았고, 수현이는 이내 괜찮다고 다시 뛰어다녔다. 아이의 상태를 보아 부상이나 응급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 채교사는 곧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 상황을 알려주고는 업무를 계속했다. 그런데 하원 후 보호자로부터 수현이가 어지러워하여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후 보호자는 채교사가 응급상황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채교사에게 책임을 물었고, 위자료(합의금) 명목의 돈 2,000만원과 채교사의 전근을 요구했다. 이를 거부하면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자신들이 잘 아는 지역 유력인사들을 통해 채교사가 다시 교직에 설 수 없도록 할 것이라 경고했다. 채교사는 아이의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유력인사를 동원해 교직을 박탈시키겠다고 경고하고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는 보호자의 행태를 교원에 대한 협박이라 여기고, 유치원에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보호자는 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어떻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협박)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며 더욱 공격적으로 선생님을 몰아세웠다.

2) Q&A

Q 교원에 대해 아동학대 고소와 민원(진정)을 예고한 것이 협박이 될 수 있는가? 정당한 권리행사와 협박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A 아동학대 행위가 명백히 아닌데도 형사 고소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교원에게 공포심을 주는 것은 협박에 해당한다. 반면 교원의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 형사 고소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서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 그러므로 교원의 아동학대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학교나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한 수사기관, 관할청의 수사·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전이라도 교원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벗어난 해악을 고지¹²⁾한다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협박) 사안으로 대처할 수 있다.

위 채성아 선생님의 사례는 아동학대 사안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합의금으로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지역 유력인사를 통해 교직에 설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 수사·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협박)로 다뤄질 수 있다.



「형법」 제2편제33장(명예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1. 명예훼손과 모욕의 개념

-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에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이 있다.
- 명예훼손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내용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전파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모욕이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참고) 교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형사 고소, 민원 제기 행위를 교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로 볼 수 있는가?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그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

수사절차나 민원 처리 절차에서 그 정보가 담당자 외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허위로 형사고소나 민원을 제기한 경우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고, 무고죄로 다루어질 것이다. (교원에 대한 무고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V장. 11. 다. 부분 참조)

2. 모욕 사례 및 Q&A

1) 사례

임산 초등학교 학생 태백산은 수업 중 엉뚱한 말로 수업을 자주 방해한다. 사안 발생일에도 이상한 소리를 하는 태백산에게 담임교사가 그만하라고 훈계하였는데, 화가 난 태백산은 “X랄. X발. X까. X라 짱나네”라고 말했다. 이를 교사와 학생 모두가 들었고, 교사는 큰 충격을 받고 말문을 잃었다.

이후 태백산은 “선생님한테 한 말 아니에요. 그냥 화가 나서 한 혼잣말이에요”라고 변명했고, 태백산의 보호자도 애가 혼자 중얼거린 것 가지고 담임교사가 너무 예민하게 군다며 되려 항의했다.

12) 외관상 권리행사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권리의 남용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 606 전원합의체 판결).

2) Q&A

Q

교원 앞에서 욕설을 한 후 학생이 '선생님한테 한 말 아니에요', '그냥 화가 나서 한 혼잣말이에요'라고 한다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볼 수 없는가?

A

"선생님한테 한 말 아니에요, 혼잣말이었어요."는 교원 앞에서 욕을 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다. 그러나 혼잣말로 한 발언이라도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한다면 형법상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모욕)가 된다.

형법상 모욕은 타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놈', '○○년', '○랄한다', '○새끼' 등). 그러므로 교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하였다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모욕)에 해당한다. 위 사례에서 태백산이 'X랄. X발. X까.'라고 발언한 부분은 교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볼 수 있고, 그 발언 대상이 선생님이라는 것을 들은 학생들이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형법상 모욕에 해당한다. 따라서 태백산의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모욕)로 다루어야 한다.

한편 이에 이르지 않고, 상대방에게 단순히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것뿐이라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사례의 "X라 짱나네" 부분 같이 분노의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면 다소 무례하더라도 모욕으로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조치할 수는 없고,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이에 관하여는 V장. 11. 부분을 참조)'로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지 살펴야 할 것이다. 아니라면 일반 선도 사안으로 다룰 수 있을 따름이다.

IV

「형법」 제2편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1. 손괴의 개념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숨기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2. 손괴 사례 및 Q&A

1) 사례

빙하타 고등학교 학생 도은어는 박희동 학생과 심하게 다투고, 학생부장교사에 의해 학생부실로 가게 되었다. 화가 난 도은어는 잠시 학생부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학교 유리창을 깨고 나가버렸다.

그 시간 학생부장교사는 교실에서 박희동 학생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박희동 학생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교실을 나가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실 밖으로 던져 파손시켰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학생 마이클도 갑자기 흥분하여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교실 의자를 파손시켰다.

다음 날 새벽, 분이 안 풀린 박희동 학생이 아무도 없는 교무실에 몰래 들어와 교사들의 물품에 소화기를 분무했다.

곧장 학교는 3명의 학생의 행위에 대한 선도(징계)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2) Q&A

Q 위 사례의 세 학생의 행위를 모두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볼 수 있는가?

A 교원에 대한 손괴행위가 아니라면 일반 선도 사안이므로 초·중등교육법령을 근거로 선도(징계)조치해야 한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학교 유리창을 깨뜨린 행위는 공용물건손상에 해당하나 교원에 대한 행위가 아니므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도은어 학생은 초·중등교육법령에 의해 선도(징계)조치를 받게 될 것이다.

반면, 마이클은 교원 앞에서 학교 물품을 파손시켰으므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손괴)로 교원지위법에 의한 선도(징계)조치를 받게 될 것이다.

형법상 손괴는 타인의 소유의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자신의 물건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시킨 박희동 학생의 행위는 손괴가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이에 관하여는 V장. 11. 부분 참조)'로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이어야 한다. 사례에서 박희동 학생의 소화기 분무 행위는 교육활동 중에 이뤄진 행위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일반 선도 사안으로서 초·중등교육법령에 근거하여 선도(징계)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1. 성폭력범죄의 개념

-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에는 성폭력범죄행위로서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 제조·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예시)

- 폭행 또는 협박으로¹³⁾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강제추행)

13) 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가 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 3182 판결 참조).

-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교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학생이 수업 중 교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 (공연음란)
- 학생이 교원의 사진에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만들어 반포한 경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3. 성폭력범죄 사례 및 Q&A

1) 사례

어느 날 교무실 나디아 선생님의 책상 위 수첩에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선생님, 2학년 4반 아이들 사이에서 이상한 사진, 영상들이 돌고 있어요. 선생님들의 치마 속을 찍은 것들이에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믿을 수 없는 내용의 쪽지였지만,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내용이었다. 나교사는 학교 학생부장교사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장교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증거인멸하기 전에 조사해야죠. 학생을 개별적으로 조용히 불러서 입을 맞추지 못하게 하고 실체를 알아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장교사는 학생들을 한 명씩 불러 조사하기 시작했고, 불법 촬영 사실 및 8명의 관련 학생을 밝혀냈다. 곧 수사기관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에서 100여 건이 넘는 불법 사진과 영상을 찾아냈다. 학생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4개월 넘게 촬영을 했는데, 피해교사가 10명이 넘었다.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의 피해 영상을 확인한 교사들은 수치심과 배신감으로 눈물을 흘렸다. 나교사를 포함한 모든 피해교사들은 교육열정을 잃어버린 후 무기력해졌고, 교직에 대한 깊은 회의감마저 들었다. 다시 가해학생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이를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대처했다. 그러나 일부 보호자는 우리 아이는 촬영에 가담하지 않았고, 영상을 보거나 갖고만 있었는데 왜 같은 징계대상이나고 억울하다며 소리를 높였다. 또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학생의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학생의 나이가 어려 경찰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하며, 아이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2) Q&A

Q1 불법촬영에 가담하지 않고, 불법촬영물을 보거나 갖고만 있었던 학생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성폭력범죄)로 조치될 수 있는가?

A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행위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카메라 등으로 몰래 촬영하는 행위와 그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나이가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시청하거나 이를 저장·소지하는 것 역시 위 법률상 성폭력범죄행위이다.(불법 촬영물임을 알지 못하고 우연히 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행위가 아님) 이와 같이 불법촬영물 촬영행위, 이를 유포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자의적으로 요청하여 보거나 소지·저장하는 행위까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행위가 되므로 모두 교육활동 침해 행위(성폭력범죄)로 다뤄진다. 이 점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지도하여 학생 스스로가 주의할 수 있도록 한다.

Q2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않는가?

A2 만 10세 이상의 소년은 「소년법」상 우범소년, 촉법소년으로서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심각한 사안의 경우에는 보호처분으로 소년 보호시설이나 소년원으로도 송치될 수 있다. 또한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그 보호자는 「민법」 제755조 내지 제750조에 의해 민사책임(손해배상)을 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 정보 유통 행위

1. 불법정보 유통 행위의 개념

-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전화,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 등)을 통하여 ① 음란한 내용의 정보,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③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등의 불법정보를 유통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예시)

- 교원의 휴대전화로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경우
- 교원을 비방하기 위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교원이 학생들을 차별하고, 학생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자주한다는 허위사실을 작성하는 경우
- 교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1. 공무(업무)방해의 개념

- 국·공립학교 교원의 공무를 폭행 또는 협박, 위계로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업무를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¹⁴⁾으로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14)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도18970 판결).

2.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예시)

- 사립학교 교무실에 체격이 크고 몸에 문신한 사람들을 대동하고 들어와 교사들에게 위력을 보여 겁에 질리게 한 뒤 수업 중인 교사를 불러오라고 하는 경우
-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괴롭힌 학생을 혼내준다면, 수업 중인 교실로 들어와 관련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교사를 협박하여 수업 진행을 방해한 경우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1. 성희롱의 개념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성희롱 행위에는 언어적 성희롱, 신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이 있다. 성희롱은 동성(同性) 간에도 인정될 수 있다.

2.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예시)

- 신체적 성희롱 : 동의 없이 교원의 신체에 접촉¹⁵⁾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교원의 몸에 스치거나 밀착시키는 등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 신체 특징을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비유, 신체 접촉 강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경우 (교원에게 자기야, 누나/오빠 사귀자, 섹시한 데, (성적인 신체부위가) 커요/작아요 등의 말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 시각적 성희롱 : 시각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림이나 문자를 형상화하거나 보이는 경우 (교원이 볼 수 있도록 교원의 동선에 음란한 사진을 두는 행위)

15) (비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행위(강제추행)이므로(각주 13. 참조)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 제2호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성폭력범죄행위)에 해당한다.

3. 성희롱 사례 및 Q&A

1) 사례 1

북산 고등학교 이한나 선생님은 최근 모둠활동 수업 중에 충격적인 상황을 보게 되었다. 교실 구석에서 남학생 둘이 서로 앞뒤로 끌어안고, 목덜미에 입을 맞추며 엉덩이를 앞뒤로 비비는 성적 행동을 하는 것이었다. 이를 본 이교사는 심한 성적 굴욕감, 성적 혐오감을 느꼈다. 학교는 수업 중인 교사가 뵈히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이런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교사에 대한 성희롱 행위라고 보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처리하고자 했다. 그러나 학생 측에서는 자기네들끼리 한 장난일 뿐 교사를 성희롱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교사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한다.

2) Q&A

Q 교원에 대한 성희롱 의도가 없다고 하는데, 성희롱에 해당하는가?

A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¹⁶⁾ 성희롱 유형 중 하나인 시각적 성희롱은 상대방이 그 의사와 상관없이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말한다.

위 이한나 선생님의 사례는 수업 중에 교실에서 일어난 사안으로 선생님이 그 의사와 상관없이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고, 학생들도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교원에 대한 시각적 성희롱 행위로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Q 교원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성폭력범죄 행위(「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가?

A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에 의하면,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할 수 없고, 동일교 재학 중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출석 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경우이어야 전학 또는 퇴학 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교원에 대한 ‘폭행(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성폭력범죄 행위’는 첫 번째 사안이라도 전학 또는 퇴학 조치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런데 성인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성폭력범죄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교원에 대한 성희롱 사안이 해당 침해 학생에 의한 최초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면, 위 교육부 고시에 따라 전·퇴학 조치가 제한될 것이다.

3) 사례 2

요리보 고등학교 고길동 선생님은 학생이 수업 중 사타구니 부분을 만져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학교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사실을 알렸다.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이 피부병이 생겨 치료 중이며 이로 인해 가려워서 옷 위를 긁었을 뿐 교사에 대한 성희롱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같은 날 같은 반 수업을 했던 다른 선생님들은 이를 보지 못했거나 봤더라도 크게 잘못된 행위라고 인식하지 않았다.

16)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4) Q&A

Q 피해교원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바로 성희롱에 해당되는가?

A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해서 바로 성희롱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교원에 대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인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¹⁷⁾ 이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에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참조할 수 있다.

IX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1. 개념

- 형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라 하더라도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반복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 여기서 교육활동은 정당하여야 하므로 부당한 교육활동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학교장의 권한 행사¹⁸⁾나 보호자가 교육당사자로서 하는 의견 제시¹⁹⁾ 등은 부당한 간섭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2.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예시)

- 교사의 수업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생활지도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부당한 간섭을 하는 경우
 - 자녀의 개인적인 이유로 학교 교육과정에 벗어난 요구를 반복해서 하는 경우
 - 교사에게 시험 범위를 줄여라, 시험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내냐 쉽게 내라는 등 평가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간섭하는 경우
 - 학부모의 검토를 받고 기록하라는 등 생활기록부 기록에 관하여 부당한 요구를 반복하는 경우

17)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18) 초·중등교육법 제20조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19) 「교육기본법」 제13조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1. 개념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가 2021. 10. 1.자로 개정되면서 새롭게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이다.

2. 사례 및 Q&A

1) 사례

서천 초등학교 당상장 선생님은 요즘 학부모가 수업 중 자신의 말을 녹음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교직생활이 힘들다. 학부모는 녹음기를 학생의 가방에 숨겨 수업 중 당교사의 음성을 몰래 녹음한 뒤, 앞뒤 내용을 자르고 부분부분 “이게 무슨 상황이나”, “오공이에게 왜 이런 말을 했냐”라고 따져 물었다. 당교사의 설명에도 학부모는 색안경을 끼고 당교사의 말을 곧이 듣지 않았다. 당교사는 학부모에게 수업 중 교사의 음성을 동의 없이 녹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학부모는 녹음하면 안 되는 근거를 가져오라며 녹음을 멈추지 않았다.

학부모의 계속된 녹음과 문제 제기로 인하여 결국 당교사는 손오공 학생의 문제 행위를 보고도 지도하지 않게 되었다. 이후 학생들의 문제 행위는 더욱 심해졌고, 이로 인해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었다.

2) Q&A

Q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음성을 교원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A 정상적인 교육활동 상황에서 교원의 음성을 교원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교원의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²⁰⁾이고, 교원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한 간섭으로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새롭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되었으므로 교원의 수업 중 음성을 녹음하여 무단 배포할 경우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²¹⁾

20) 음성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헌법 제10조 제1문).

21) 다만, 정상적인 교육활동 상황과 아동학대 상황은 다를 수 있다. 최근 법원에서는 아동학대 현장에서의 녹음행위는 불법성이 없고, 수업 중 교사의 음성은 공개되지 않는 타인의 대화로 보기 어려워 통신비밀보호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녹음행위 외 아동학대 범죄행위를 밝혀낼 다른 수단을 찾기 어렵다는 아동학대 사안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참고)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1. 개념

- 「교원지위법」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된 행위가 아니라도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교권 존중 및 교원의 전문적 지위·신분에 대한 부당한 간섭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권을 존중하지 않거나 수업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원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이 규정은 「교원지위법」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독립적으로 규정된 다른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준하는 사안에만 적용하여야 하고, 이를 엄격히 판단하여 학교장의 재량권 남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 학교장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특별히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수업방해 행위와 무고 행위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2. 수업방해 사례 및 Q&A

1) 사례

안녕 초등학교 4학년 4반은 학생들의 수업 방해 행위가 빈번히 일어난다. 저팔계 학생은 수업 활동과 무관하게 돌아다니고 자리에 앉으라고 해도 듣지 않으며, 선생님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기도 했다. 사오정 학생은 수업에 관심이 없고, 수업에 참여하라고 하면 아예 누워버린다. 선생님의 교육만으로는 학생들의 문제 행동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2) Q&A

Q 수업방해 행위 또는 교원의 지도,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가?

A 수업방해 행위나 교원의 지도, 지시에 대한 불응하는 행위는 과거 교권 침해 행위의 하나로 분류되었으나 현행 규정에서는 독립된 침해 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결국 이는 기본적으로 교사의 교육·지도 사안이라 할 것인데, 그 정도가 심해 교사의 교육·지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선도(징계)조치해야 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선도(징계)조치할 것은 아니다.²²⁾

하지만 수업방해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이 교권을 존중하지 않거나 교원의 전문적 지위·신분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고, 독립적으로 규정된 다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로 인정된다면,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다.

3. 무고 행위(허위 고소, 허위 민원 제기) 사례 및 Q&A

1) 사례

누덕 초등학교 김우덕 선생님은 학생이 자신에 대해 욕을 하고 다니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다. 학교로부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소식을 들은 학부모는 며칠 뒤 '김교사가 학생에게 물 떠오기, 안마 등을 시켰다'라는 이유로 경찰에 김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이는 허위 사실이 명백했지만, 학부모는 계속하여 학교와 교육청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김교사는 계속해서 수사와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

2) Q&A

Q1 교원에 대한 무고나 허위 민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가?

A1 교원에 대한 무고나 허위 민원은 교원지위법상 독립된 침해 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교원에 대한 정당한 형사 고소나 민원 제기와 구별되어야 하므로 먼저 고소, 민원 내용의 허위성이 밝혀져야 한다.²³⁾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 교권을 존중하지 않거나 교원의 전문적 지위·신분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고, 독립적으로 규정된 다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로 인정된다면,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로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다.

22) 물론 선생님에게 손가락 욕을 한 저팔계 학생과 같이 수업방해 수단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모욕)로 규정된 행위인 경우에는 교원지위법을 적용하여 조치할 수 있을 것이다.

23) 학교나 교권보호위원회가 무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한 수사기관, 관할청의 수사·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Q2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의 조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A2 교원에 대해 민원 등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교원지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또한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해야 한다(「교원지위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2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교원지위법)

[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52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08. 3. 14.]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전문개정 2008. 3. 14.]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②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5조(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① 각급학교 교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그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운영한다.

② 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訴請審査)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2. 3.>

④ 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전문개정 2008. 3. 14.]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3.>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2.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4.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6.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 ②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삭제 <2019. 4. 23.>

[전문개정 2008. 3. 14.]

제8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8조의3(위원의 신분 보장)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장기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8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①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10조(소청심사 결정 등) ①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9. 4. 23.>

1. 심사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
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한다.

③ 처분권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이하 “구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23.>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공공단체는 제외한다)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⑤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은 확정된다.

<신설 2021. 3. 23.>

⑥ 소청심사의 청구·심사 및 결정 등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23.>

[전문개정 2008. 3. 14.]

[제목개정 2021. 3. 23.]

제10조의2(결정의 효력)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5로 이동 <2021. 3. 23.>]

제10조의3(구제명령)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처분권자가 상당한 기일이 경과한 후에도 구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구제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3. 23.]

제10조의4(이행강제금)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처분권자가 제10조의3에 따른 구제명령(이하 이 조에서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권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산정 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⑤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구제명령을 받은 처분권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10조의5(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청사건의 심사·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소청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2. 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검정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소청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사·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결정으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소청사건의 심사·결정에서 회피(回避)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10조의2에서 이동 <2021. 3. 23.>]

제11조(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①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과 교섭·협의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② 시·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나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섭·협의를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전문개정 2008. 3. 14.]

제12조(교섭·협의 사항)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섭·협이는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협의를 대상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13조(교원지위향상심의회 설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섭·협의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교섭·협의 사항에 관한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시·도에 각각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두되 교육부는 7명 이내, 시·도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교원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② 교원지위향상심의회 운영과 위원의 자격 및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
2.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3.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
4.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제14조의2(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시·도의 교육규

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14조의3(특별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② 보호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 4. 16.>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2019. 12. 10.>

1.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부장관
2.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6.>

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⑥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16.>

[본조신설 2016. 2. 3.]

제16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16.〉

② 관할청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16.〉

[본조신설 2016. 2. 3.]

제16조의2(실태조사) ① 관할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16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17조(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2. 3.]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6.>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④ 관할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 4. 16.>

⑥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 4. 16.>

⑦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⑧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 4. 16.>

⑨ 그 밖에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16.>

[본조신설 2016. 2. 3.]

[제목개정 2019. 4. 16.]

제18조의2(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관할청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19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2.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분쟁 조정

가.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나.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유치원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9. 4. 16.)]

제2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본조신설 2016. 2. 3.]

[제19조에서 이동 (2019. 4. 16.)]

제21조(벌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소청심사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1. 3. 23.)]

제22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21조에서 이동 (2021. 3. 23.)]

부칙 <제17952호, 2021. 3.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하는 결정부터 적용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8. 2.]

제2조(교원의견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의2(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도교육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6. 8. 2., 2019. 10. 15.〉

1.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 및 조직의 구성·운영
2.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 및 홍보
3.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치료, 전보(轉補) 등 보호 조치
4.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 상담
5.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리
6. 그 밖에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9. 10. 15.〉

[본조신설 2013. 2. 5.]

제2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고 사항) 법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5장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인 경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로 해당 교원이 4주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6. 9.]

[중전 제2조의3은 제2조의4로 이동 〈2020. 6. 9.〉]

제2조의4(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

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연을 받는 데 드는 비용
 - 가.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부장관
 - 나.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 ② 법 제15조제5항 단서에 따른 구상권의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으로서 관할청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15조제5항 본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하 이 조에서 “보호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그 밖에 구상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관할청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③ 관할청은 법 제1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구상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보호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9. 10. 15.]

[제2조의3에서 이동 <2020. 6. 9.>]

제3조(공공시설 등의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이나 자료의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제출요구의 제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과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 2. 5., 2019. 10. 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③ 교육감은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전산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행사참여요구의 제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 등의 참여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원의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교원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좌석배치 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9. 10. 15.>

제6조의2 삭제 <2019. 10. 15.>

제6조의3 삭제 <2019. 10. 15.>

제7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활동 관련 비용의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도서비용이나 문화시설이용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4. 29.]

제9조(교육연구비용의 지원) ① 관할청은 교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2020. 6. 9.>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비용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공립학교, 사립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4. 4. 29.]

제9조의2(실태조사)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별 현황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현황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현황
 4. 그 밖에 관할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실태조사는 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연 2회 이상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15.]

제9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 다.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 라.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다.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 라.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다.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 라.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10. 15.]

제10조(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요건) 관할청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나.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가 설립한 기관
 - 라. 그 밖에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피해 교원을 위한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것
3. 제2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춘 상담실이 있을 것
 - 가. 인터넷 이용시설 및 전화 등 상담·자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나.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 등 상담·자문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본조신설 2016. 8. 2.]

제11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3.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4.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5.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의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2.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3.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조치의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학 조치를 할 때에는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

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학생과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추후 해당 학생의 전학, 상급학교 입학 및 해당 교원의 전보로 인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교육감은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0. 15.]

제11조의2(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원(「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사의 출입문 보안장치, 방범창,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비상벨 등 안전장치 설치 현황

2. 교원 관사의 노후화 정도 현황

3. 교원과 경찰관서 간의 긴급연락체계 등 안전망 구축 현황

4. 교원의 성별 현황

5. 그 밖에 관할청이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③ 관할청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시설 안전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 ④ 관할청인 교육감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12조(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 12. 31.>

1. 해당 시·도 의회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원을 포함한다)
 2. 해당 시·도 교육청의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3.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6.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도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8.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0. 15.]

제13조(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해당 안전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전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교육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시·도교육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시·도교육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5.]

제14조(시·도교육보호위원회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시·도교육보호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 10. 15.]

제15조(학교교육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육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육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교육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12. 31.>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0. 15.]

제1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제척·기피 및 회피 등) ①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법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장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10. 15.]

제17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의 보호조치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 보고의 접수
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고발
4. 법 제15조제5항 단서에 따른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구상권의 행사
5.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6.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참여 조치
7.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본조신설 2019. 10. 15.]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9. 10. 15.]

부칙 〈제31349호, 2020. 12. 31.〉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7호 중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국가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도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5호 중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⑫부터 ④9까지 생략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10. 1.] [교육부고시 제2021-26호, 2021. 10.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항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및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5.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3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26호, 2021. 10.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6호) 업무 지침

I

관련 근거

2022학년도 경상남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지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학 조치를 할 때에는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
- 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학생과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추후 해당 학생의 전학, 상급학교 입학 및 해당 교원의 전보로 인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II

시행 지침

1. 전입학 단계

①교육활동 침해학생 재학학교 ➡ ②학교혁신과에 상담 및 배정 요청 공문 발송 ➡ ③학교혁신과 공문접수 ➡ ④배정심의 회의 ➡ ⑤배정검토 의견서 중등교육과 제출(공문) ➡ ⑥중등교육과 배정검토 ➡ ⑦요청학교 및 배정학교(전학갈 학교)로 배정 결과 공문 발송 ➡ ⑧전입학 절차 진행

2. 배정 방법

- 가. 고등학교장은 피해 교원의 보호에 필요한 충분한 거리를 고려하고, 침해 학생의 교육과정(과목, 학업성취도, 진로 등) 이수 가능성과 교통편의 등을 고려한 3개교를 지정(침해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 수렴)하여 교육감에 요청
- 나. 기타 피해 교원을 침해 학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사항 고려
- 다. 타 계열 고등학교 간의 전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계열 변경의 경우: 2학년 1학기 2차고사 전)
- 라. 위 항에 따라 전학을 간 학생이 전출 이전 학군으로 전입을 원할 시 원적교 및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한 위 거리 규정에 맞지 않는 학교는 배정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3항과 4항

- ③ 고등학교장은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학 조치를 할 때에는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3. 전학 절차

가. 1단계 : 학교장 도교육청에 전학 배정 요청 단계

- 해당 학교장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침해학생 전학조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침해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및 통학 편의 등을 고려하여 3개교를 지정하여 교육감(도교육청 학교혁신과)에게 전자문서로 요청
- ※ 침해학생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완료 후 전학 시행이 원칙(학부모-3개월 내)

- 부득이 한 경우 전학을 간 학교에서 조치를 이행할 수 있으나 낙인효과 방지 차원에서 원적교에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완료 후 전학 조치가 원칙.
- 학부모의 경우는 3개월 이내에 이수하면 됨(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나. 2단계 : 도교육청에서 전학 배정 조치 단계

- 교육감이 학교장으로부터 받은 배정 요청을 담당부서(학교혁신과)에서 협의하여 중등교육과(전입학 담당)에 공문으로 검토의견서 제출(학교혁신과)

배정협의 원칙: 전학 대상학생(보호자)의 제1희망 학교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활동 침해 전학(6호), 학교폭력 전학(8호) 학생이 배정된 사실이 없는 경우, 제1희망대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함. 미충족 시 2희망학교, 3희망학교 순으로 협의.

- 심의 후 배정 요청학교와 배정학교에 공문으로 배정 사항 통보(중등교육과)

다. 3단계 : 해당학교 간 전학서류 요청 및 학적처리(해당학교)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 업무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규정 업무임. 전입교는 학생의 전입학에 적극 협조하고, 학생의 빠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 이행

4. 제출 서류

- 가. 교육활동 침해학생(제6호 전학) 전학학교 배정요청서 - (서식 31)
-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통지서[제6호 전학 증명] - (서식 26)
- 다. 담임의견서 - (서식 32)
- 라. 학부모동의서(학부모 미동의 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서식 33)
- 마. 특별교육 이수증 또는 심리치료 확인서 사본 - (학생, 학부모 각 1부, 원본대조필)

III 부칙

- 가. 본 지침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업무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본 지침을 준용하여 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 다.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2 경상남도교육청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지침'을 따른다.
- 라. '강제전학'이란 용어 대신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제6호)'을 공식 용어로 사용한다.

4

2022. 교원 장기치유연수 운영 계획

I

추진 근거 및 목적

1. 추진 근거

- 「대한민국헌법」제31조 제4항
- 「교육기본법」제14조 제1항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 6.11.시행)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21. 1. 1.시행)
- 「경상남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경상남도 교육규칙 제851호 (‘21.10.28.일부개정시행)
- 「교육공무원법」제40조(특별연수)

2. 추진 목적

-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충분한 치유 기간(1~6개월 내외) 제공을 통한 학교 복귀 지원
- 교단안정화 지원으로 교육력 회복, 교직에 대한 자긍심 고취, 재충전 및 치유의 기회 제공
-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II

기본 방향

- 교권침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교사에 대해 치료기회 부여
- 연수 기간 동안 병원 치료 및 상담을 기본으로 운영
- 월 1회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제공 특별연수(개별, 집합) 참여
- 본인이 희망하는 치료와 관련된 특별연수 참여 가능(비용 일부 지원)
- 경상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경상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파견 신분으로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위탁 운영

- 보고서 제출은 생략, 이수(치료) 확인증 및 월 1회 연수 참여 설문지 제출
- 연수 이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직무연수 아님)
-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에서 복무(치료)실태 상시 점검
- 장기치유연수 종료 후 학교(유치원 포함) 복귀 원칙
- 1인 1회 지원을 원칙으로 운영(단, 부득이한 경우 도교육청 장기치유연수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추가 연수지원 가능)
- 치유연수 종료 후 설문조사를 통한 피드백 실시

III 운영 계획

1. 운영 개요

- 가. 연수종별: 장기치유연수(연수 파견)
- 나. 연수기간: 교원의 상태에 따라 탄력적 운영(1~6개월 내외)
※ 질병의 정도와 사태의 심각성 등 고려 조정 가능
- 다. 연수대상: 국·공·사립의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기간제교원 포함, 단, 유치원은 국·공립에 한해 운영)
- 라. 선발인원: 유치원 2명, 초등 5명, 중등 5명(총 12명 내외, 특수포함)
- 마. 연수내용: 교권침해로 인한 심리·신체적 치료와 상담, 학교(유치원) 복귀를 위한 힐링 연수
- 바. 연수방법: 국내연수, 교육연수기관 파견(연수파견) 후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프로그램 위탁 운영
- 사. 처우

- 급여, 호봉, 교육경력 100%인정
-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은 인사관리기준 및 학교 자체 성과평가 기준에 따름
- 연수비 일부 지원(단, 연수비 지원은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 계획에 따름)
- 직무연수로 인정하지 않음(심리치료 등 병원치료와 반드시 연계하여야 함)

- 아. 복무관리: 연수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은「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14조)」에 의함. 세부사항은 연수파견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장기치유연수 기간 동안 치유와 관련 없는 활동은 불허
- 치유 및 상담과 관련 없는, 어학연수나 관광을 목적으로 한 해외여행 불허
(단, 치유 목적으로 불가피할 경우 10일 이내 허용 가능)
- 치유 연수 파견(1개월 이상)은 파견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대상으로 연가 일수 산정
예시) 교육경력 15년인 교사(연가일수 21일)가 2개월 장기치유연수 파견 시
 $21 \times 10 / 12 = 17.5$ (18일 연가 사용 가능),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 최대 10일 소급 가능
- 중도 복귀 희망자가 발생할 경우 학교(유치원)로 즉시 복귀 조치
- 치료 및 상담 불이행이나 행정사항 미 준수 등으로 인해 연수가 불성실할 경우 연수비 반환은 물론 복무관리 차원에서 신분상 조치 등을 할 수 있음
- 치유연수기간 동안 원격연수과정 수강 가능
- 장기치유연수 기간 중 영리활동 일체 금지(교육청 소속이 아닌 타 기관 강연 포함)
- 장기치유연수 후 학교복귀를 원칙으로 운영함.

자. 의무사항

- 연수기간 동안 반드시 학교(유치원) 복귀를 위한 치료·상담 병행
- 연수기간 내에 센터에서 실시하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특별연수 과정 참여(월 1회, 연수비 일부 또는 전액 도교육청 지원)
- 치료 및 상담 종료 시 확인증 제출(센터 내 상담 시 확인증은 별도 제출하지 않고 병원 치료비 영수증만 제출)
- 주 1회 경남행복교육권드림센터 내 면담 실시

2. 운영 내용 및 결과 보고

가. 운영(위탁)기관별 역할

운영(위탁)기관	연수 운영 내용
경상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경상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 연수 위탁운영 계획 수립, 평가 • 복무관리
경남행복교육권드림센터	• 연수 위탁운영 계획 수립, 운영 • 복무관리 • 힐링·치유 특별연수 운영 (월 1회 이상) • 복무상황 및 연수이수현황 보고 (1회, 연수 종료 시)
도교육청	• 장기치유연수 대상자 선발 • 연수운영 현황 및 복무 점검

나. 연수대상자의 역할

연수 수행 내용	
교권 침해에 대해 심리적·신체적 치료 및 상담 등을 통한 회복 노력	• 병원 치료 및 상담, 힐링연수 실시 • 월 1회 이상 경남행복교육권드림센터에서 제공하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특별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

다. 연수 이수 결과 보고

- 시기: 장기치유연수 종료 시 1회
- 방법: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업무 담당자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및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에 이수 결과 보고

IV 선발 계획

1. 대상자 선발

가. 선발 대상: 공립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특수·각종학교 포함)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 기간제교사

나. 선발 인원: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총 12명 내외

유치원(명)	초등(명)	중등(명)	비고
2	5	5	• 특수교원은 유·초·중등에 포함 • 유치원은 국·공립에 한해 운영

※ 연수 희망 인원과 건강 상태 등 고려 인원 조정 가능

다. 지원 자격: 교권침해 피해교원 중 공무상병가(병가) 이후에도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 치유를 필요로 하는 교원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 피해교원으로 판단하여 특별휴가, 병가(공무상병가)를 실시하고도 학교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학교교권 보호위원회에서 추천한 교원

- 학교(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로 판명된 피해교원으로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공무상 병가를 인정받고도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학교(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학교·유치원장)에서 추천한 자
- 교권침해 피해교원으로 학교(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로 판명된 교원으로 공무상 병가를 인정받지는 못 했으나 병가 기간이 끝나고도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학교(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학교·유치원장)에서 추천한 자

라. 제출 서류

- (교원) 병원 진단서 원본,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 장기치유연수 신청서
- (유치원 및 각급 학교) :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및 결과 통보서※, 사건 경위서, 장기치유연수 추천서, 인사기록카드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경우 학교(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 추천 없이 도교육청 장기치유연수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마. 추천 제한

- 징계의결 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중에 있는 경우
- 교원의 4대 비위 관련자*, 4대 비위 외 징계 처분(불문경고 포함) 후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자 등
 - * 교원의 4대 비위: 금품·향응수수, 성적조작, 성폭력, 학생 상습폭행
- 교원의 중대한 과실로 교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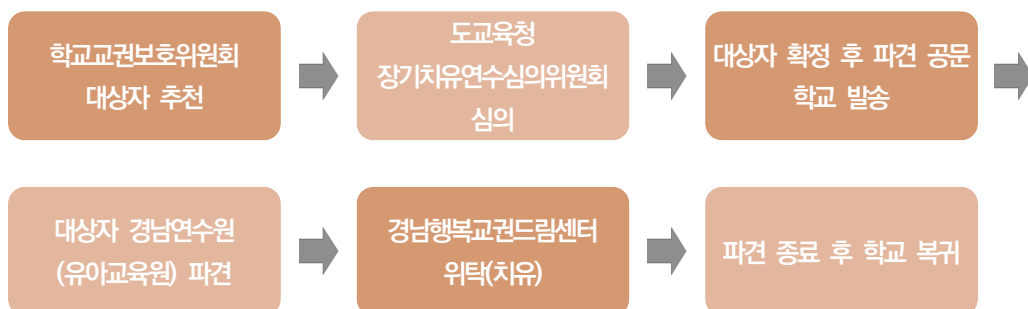
바. 제한 조건

- 장기치유연수를 받은 이력이 있는 교원(부득이한 경우는 도교육청 심의회 결정에 따라 연장 가능)
- 학교(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로 판명받지 못한 교원

2. 선발 방법

[1차] 적부 평가		[2차] 심층 평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교권침해 판단 여부	진단서 등 제출서류 검토 (p139.제출서류 참고)	학교(유치원,기관) 관계자를 통한 참고인 진술

3. 선발 절차



4. 추진 일정

순	추진절차	일정	비고
1	2022. 교원 장기치유연수 운영 계획 알림	2022.3.	
2	지원자 서류 제출 (유,초,중,고,특수학교→학교교권보호위원회) (도교육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도교육청 학교혁신과)	장기치유연수 필요 시	도교육청 학교혁신과
3	학교(유치원, 기관) 서류 제출 (학교,기관→도교육청 학교혁신과)	장기치유연수 필요 시	도교육청 학교혁신과
4	최종 대상자 선정	신청 후 3주 이내	도교육청 심의위원회
5	장기치유연수 대상자 사전 미팅	대상자 통보 후 1주일 이내 (별도 통보)	경남행복교권드림 센터

※ 사정에 따라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장기치유연수심의위원회

1. 위원 구성 및 운영

가. 위원회 구성 방법

- 위원회는 도교육청 학교정책국 과장으로 구성
 - 위원장은 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하며, 교권 담당 장학관이 간사가 됨
- ※ 경상남도교육청 각 종 위원회 일괄정비 사업으로 경상남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장기치유연수 대상자 심의위원회가 통폐합됨

나. 위원회 구성

순	소속	직위	임기	비고
1	도교육청 학교정책국	국장	임기 만료 시까지	위원장
2	도교육청 학교혁신과	과장	"	부위원장
3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과장	"	
4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과장	"	
5	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과장	"	
6	도교육청 진로교육과	과장	"	
7	도교육청 학교혁신과	담당장학관	"	간사

※ 위원의 임기는 인사 발령에 따른 직위 재직 기간임.

2. 위원회 역할

- 가. 장기치유연수 추천자에 대한 적합 여부 심의
- 나. 장기치유연수 이수 결과 확인
- 다. 장기치유연수 인원 조정 등

3. 위원회 소집

- 가. 장기치유연수 대상자 추천(신청)이 발생한 경우
- 나.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VI 행정 사항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순	제출 서류 명	제출방법	
		공문 (파일)	출력물 (인편/우편)
1	〈서식52〉 장기치유연수 지원서(1부)	○ hwp 스캔	○
2	〈서식53〉 학교(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학교·유치원장/기관장) 추천서(1부)	○ hwp 스캔	○
3	〈서식54〉 임용권자 동의서(1부)-사립학교만 제출		○
4	neis 인사기록카드(전체) 출력물 7부(2쪽 모아찍기) - 해당부분에 형광펜 표시(원본대조필) (보직교사 경력, 담임경력, 병가, 공무상 병가 이력 등)		○
5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 1부		○
6	병원 진단서(원본) 1부		○
7	학교(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7부(원본대조필)		○
8	사건 경위서 7부(원본대조필)		○
9	학교(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 결과 통보서 7부(원본대조필)		○

◆ 제출기한: 장기치유연수 필요 시(수시 제출)

◆ 제출처

- 학교·유치원(유·초·중·고·특수·국립·각종학교) → 도교육청 학교혁신과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 도교육청 학교혁신과

◆ 문의처: 학교혁신과 ☎ 278-1696)

◆ 추천 서류 작성 요령

순	구분	작성 요령
1	〈서식52〉 장기치유연수 지원서	• 사진 파일 삽입 • 교육경력은 인사기록카드에 근거하여 작성(지원 일자 기준) • neis 인사기록카드에 근거하지 않은 자료는 증빙서류 첨부
2	〈서식53〉 학교(유치원)교권보호 위원회 추천서	• 추천 내용은 교권침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장기치유연수 대상자로 적합한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기술
3	〈서식54〉 임용권자 동의서(사립만)	• 장기치유연수 이력, 4대 비위 등 장기치유연수 추천제한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결격사유
4	neis 인사기록카드(전체) 출력물	• 해당부분에 형광펜 표시(보직교사 경력, 담임경력, 병가, 공무상 병가 등)
5	기타	• 진단서는 원본 제출,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는 사본 제출 • 학교(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결과통보서, 사건경위서 등 모든 서류는 내부결재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5

단위학교 및 지역교육청 역할 및 협조 사항

I

단위 학교 역할

- 단위학교 교육활동 보호 추진 계획 수립·시행
- 단위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교원지위법시행령 제15조)
 - 위원은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위원장: 호선)
 - 위원회의 주요 역할
 - 교육활동 침해기준 마련 및 예방대책 수립
 -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 임기 만료 위원 교체 및 변경 구성
 - 위원은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 해당학교의 교원위원은 임명
 - 외부위원은 위촉: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 한 차례만 연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 ※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대체하여 운영 불가
- 학교 규칙에 교육활동 침해 관련 내용 반영
 - 관련 법조항: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상위 법령 및 시행 지침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학칙 개정 절차에서 학교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수정·변경 내용에 대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학생·학부모·교원 등에게 안내·홍보하고, 관련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정도의 심의 과정을 거치면 됨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표준안: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탑재됨
- 아래의 예시 참고하여 학교 규칙에 관련 조항 만들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표준안을 참고하여 별도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하여 제규정에 포함

학교 규칙 포함 예시

제○○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 관련 법조항: 교원지위법 제16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연 1회 이상 실시(학기당 1회 권장)
- 찾아가는 맞춤형 힐링 연수 및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 신청 또는 학교 자체 연수 실시
- 2019년 제작·보급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PPT자료, 2020년 제작·보급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맞춤형 교육 동영상 콘텐츠, 2021년 교육부에서 제작·보급한 동영상 등 활용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홈페이지 '교육활동 보호 자료실' 탑재)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 게시해야 함(교원지위법 제16조의3의 3항)
-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보호 인식 개선 활성화를 위한 가정통신문 발송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보호조치' 철저

-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지 즉시 '보호조치' (피해교원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 철저 (교원지위법 제15조)
-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 축소·은폐 금지 (교원지위법 제16조)
-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실관계 및 관계자 진술 등 상세히 확보

• 교육활동 침해 보고 철저

- 보고처
 - 유·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도교육청(학교혁신과) 동시 보고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도교육청(학교혁신과)에 보고

- 사안 발생 보고
 - 즉시 보고처로 유선 보고 후 48시간 이내 공문 보고
 - [사안조사 관련 서식 3]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
 - [사안조사 관련 서식 4] 중대사안 발생 보고
- 사안 처리 결과 보고
 - 사안 종료 후 7일 이내
 - [사안조사 관련 서식 24]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 보고 시 유의사항
 - K-에듀파인 시스템으로 '비공개' 및 '보안' 설정으로 보고
 - 서명 후 스캔한 파일 제출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특별휴가 5일 부여 가능**
 - 근거: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35호) 제8조
 -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되면, 복무처리를 연가 또는 병가 등으로 정정해야 함
- **학교 교권업무담당자 지정·운영**
- **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프로그램 신청(희망학교 및 교원)**
 - 교원 안전지원시스템(학교전화 자동 녹음 서비스, 통화연결음 및 ARS, 교원안심전화번호 등) 지원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및 연수 신청(희망 교원 및 학교 단위 신청)
 - 교권보호 장기 치유 연수(개인의 교육활동 침해 피해 정도와 휴가제도(특별휴가, 병가, 공가 등) 종합 고려, 필요 시 신청)
 - 교원 힐링연수(희망 교원)
 - 기타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교권보호 프로그램 참여
- ※ 사업별 도교육청 공문에 의거 신청 가능

II 교육지원청 역할

-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보호 추진 계획 수립·시행
- 교권보호지원단(갈등조정지원단) 구성·운영
 - 교육지원국(과)장(단장), 장학사(간사), 전문상담교사, 교원, 지역 전문가(변호사, 상담사, 경찰 등 지역 여건 고려) 5~10명
 - 지원단의 주요 역할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갈등의 조정
 -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침해 예방대책 수립 및 추진
 - 관내 초·중학교의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 배정요청 심의
 -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신속지원팀' 운영(경미한 사안: 장학사, 전문상담교사)
 - ※ 중대한 사안: 도교육청 교권보호 신속지원팀과 합동 운영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연수, 홍보 활동
 - 교육지원청 교원치유지원센터 역할 병행
-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직무연수 계획에 교육활동 보호 교원연수 포함
- 현장 맞춤형 교육활동 보호 프로그램 운영
 - 대상: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및 희망교원(관내 유·초·중학교)
 - 내용: 집단상담 프로그램, 사례동행 프로그램, 특강, 힐링 연수, 원격연수 등(교육지원청 여건 고려)
- 교육지원청 교권업무담당장학사 지정(초등1, 중등1)
- 지역의 연계 전문심리상담 및 치료기관 관리
- 수업방해 예방 현장 지원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6

각종 서식

사안조사 관련 서식

[서식 1] 교육활동침해(피해) 신고서(피해교원이 학교에 제출)	148
[서식 2] 교육활동 침해행위 접수대장 - 필수	149
[서식 3] 교육활동 침해 사안신고서(학교→교육지원청/학교혁신과 공문 제출)	150
[서식 4]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대사안 발생보고(학교→교육지원청/학교혁신과 공문 제출)	151
[서식 5] 사실확인서 - 필수	153
[서식 6] 면담조사일지 - 필수(가해, 피해, 목격자용)	154
[서식 7] 사안조사보고서 - 필수(학교장 내부결재용)	155
[서식 8] 교육활동 침해신고 취소(철회) 신청서(피해교원이 학교장에게 제출)	156

분쟁조정 관련 서식

[서식 9] 분쟁조정 신청서(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신청 문서)	157
[서식 10] 분쟁조정 합의서	158
[서식 11] 도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서(도교권보호위원회 신청 문서)	159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관련 서식

[서식 1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리 대장	160
[서식 1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서 - 필수	161
[서식 14] 학교교권보호위원 위촉(임명)장 - 필수	162
[서식 15]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명부	16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관련 서식

[서식 16]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참석 안내 - 필수	164
[서식 17]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출석 통지서 - 필수	165
[서식 18] (청구인, 피청구인) 서면 진술(의견)서 - 필수	166

[서식 19] (학생, 보호자용) 기피 신청서	167
[서식 20] (교원용) 기피 신청서	168
[서식 21] 회피 신청서	169
[서식 2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의결서	170
[서식 2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 필수	173
[서식 24]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 필수(학교 교보위 후→교육지원청/ 학교혁신과 공문 보고)	175
[서식 25] 조치 결과 통지서(학교장→청구인(피해교원)) - 필수	176
[서식 26] 조치결과 통지서(학교장→피청구인(침해학생)) - 필수	177
[서식 27] 심의결과 통지서(학교장→피신청인(학부모 등)) - 필수	178

조치이행_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 관련 서식

[서식 28]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조치 통보	179
[서식 29]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신청서	180
[서식 30]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미이수자 현황	181

조치이행_교육활동 침해 전학 관련 서식

[서식 31] 교육활동 침해학생(제6호 전학) 전학학교 배정요청서	182
[서식 32] 담임의견서	183
[서식 33] 학부모 동의서	184

보호조치 및 불복절차 관련 서식

[서식 34] 보호조치 비용부담 신청서(학교혁신과 공문 제출)	185
[서식 35] 통고서(학교장→가정법원)	187
[서식 36] 교육활동 침해 사안 형사고발 요청서	188
[서식 37] 경상남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서(전학, 퇴학)	189
[서식 38]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청구서	190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관련 서식

[서식 39]	교원치유 지원 개인상담(치료) 신청서	191
[서식 40]	교원치유 지원 개인상담(치료)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92
[서식 41]	교원치유 지원 심리상담(치료)비 신청서	193
[서식 42]	상담(치료) 만족도 조사 설문지	194
[서식 43]	교원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	195
[서식 44]	교원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 참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96
[서식 45]	교원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 상담 확인서	197
[서식 46]	교원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 참가 만족도 조사 설문지	198

법률상담 지원 관련 서식

[서식 47]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법률지원 신청(기안)	199
[서식 48]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법률자문 결과 제출 및 법률자문료 지급 요청(기안) · 200	
[서식 49]	법률자문 및 상담결과 보고서	201

교원배상책임보험 관련 서식

[서식 50]	교원배상책임보험 사고경위서	202
[서식 51]	교원배상책임보험 접수현황 보고(기안)	203

장기치유연수 관련 서식

[서식 52]	장기치유연수 지원서	204
[서식 53]	장기치유연수 교권보호위원회 추천서	205
[서식 54]	장기치유연수 추천동의서	206

기타

[참고]	피해교원 보호조치 및 외부기관 연계 비용 지원 비교	207
------	------------------------------------	-----

[서식 1]

교육활동 침해(피해) 신고서(피해교원이 학교에 제출)

교육활동 침해(피해) 신고서			
피해교원		상대방(학생, 학부모 등)	
소속학교		성명	
성명		피해교원과의 관계	
연락처		연락처	
사안내용	예시 : ○○○학생(침해학생)은 20 년 ○월 ○일 오전 10:30경 교실에서 ○○○교사(피해교원)가 수업 중 핸드폰을 하고 있던 ○○○학생을 지적하자 ○○○ 교사에 대하여 ‘미친년아 눈 깔이 뻐었냐, 왜 자꾸 시비 걸고 지랄이야. 하는 짓도 찌파 같은 게’ 라고 욕설을 하였음		
목격자 유무	☐ 무 ☐ 유 (성명: 관계:) ※ 목격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기록 등		
입증자료(첨부)			
작성일		작성자	(서명)

[서식 2] 교육활동 침해행위 접수대장 - 필수

교육활동 침해행위 접수대장

순	교원 인적사항			침해 행위자 인적사항			침해내용	피해교원조치
	소속	직급	성명	구분	성명	교원과 의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침해 내용란에는 사안발생일, 장소가 포함되도록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

[서식 3] 교육활동 침해 사안신고서(학교→교육지원청/학교혁신과 공문 제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			
신고인(피해교원)		피신고인(학생, 학부모 등)	
소속학교		성명	
성명		피해교원과의 관계	
연락처		연락처	
기타		기타	
사안내용 (별지사용 가능)	예시 : ○○○학생(침해학생)은 20 년 ○월 ○일 오전 10:30경 교실에서 ○ ○○ 교사(피해교원)가 수업 중 핸드폰을 하고 있던 ○○○학생을 지적하자 ○○○ 교사에 대하여 ‘미친년아 눈깔이 빠였냐, 왜 자꾸 시비 걸고 지랄이야. 하는 짓도 찌파 같은 게’ 라고 욕설을 하였음		
피해교원의 요청사항			
목격자 유무	☐ 무 ☐ 유 (성명: 관계:) ※ 목격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기록 등		
입증자료(첨부)			
분쟁조정 신청	신청함 ☐	신청하지 않음 ☐	
사법조치 여부	☐ 관할 경찰서에 신고 ☐ 피해교원 수사기관 고발 요청		
위와 같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서식 4]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대사안 보고(학교→교육지원청/학교혁신과 공문 제출)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대사안 보고

<2022. 00. 00.(수)>

☐ 보고 개요

주요내용(요약)

❖ 핵심 내용 2줄 정도 작성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중대사안 보고 사항)

구분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항
	1. 「형법」 제2편제25장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음행매개,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연음란, 추행, 간음, 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로 해당 교원이 4주 이상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 사안 내용

- ▶ (발생 일시/장소) '22.00.00.(수) 00:00 / 00학교 4층 복도
- ▶ (침해 내용) 침해학생(0학년 남,여)이 00에서 피해교원에게 00하는 등 침해하였고, 000 학생은 00 진술하여 00 함(육하원칙에 의거하여 내용 정리)
- ▶ (진행 상황) 사안 조사 실시, 학생 면담, 경찰 신고 등
- ▶ (피해교원 조치) ① 0000, ② 0000, ③ 0000
※ 학교장은 침해 행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 (침해학생 조치) ① 0000, ② 0000, ③ 0000
-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22.00.00.(수) 16시 개최 예정
- 개최 결과 : 교육활동 침해 여부, 피해교원 조치, 침해학생 조치 등 (추후 보고)
- ▶ (기타 특이사항) 0000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대사안 보고 요령

☐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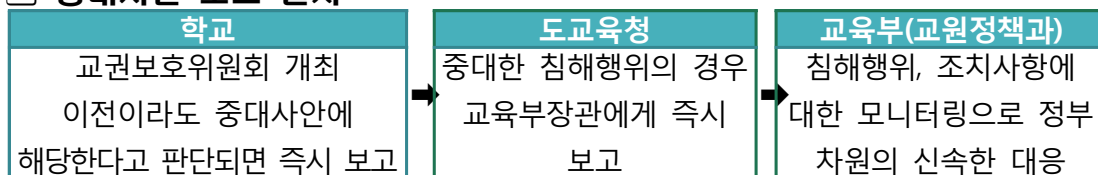
- 교원지위법 제1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 주요 내용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규정**(시행령 제2조의3)

1. 상해·폭행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음행매개,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연음란, 추행, 간음, 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 해당 교원이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 중대사안 보고 절차



- (학교 ⇒ 교육청) ①학교는 사안 인지 즉시* 도교육청(학교혁신과)로 유무선 보고 후 ②사안 조사 결과를 48시간 이내 문서*로 보고

* 18시 이후에는 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자(278-1696)에게 유무선 보고

** [서식4] 활용하여 공문으로 보고

- (교육청 ⇒ 교육부) 학교에서 보고받은 [서식4]에 향후 조치 계획 보완하여 보고

☐ 향후 조치 계획(예시)

- 교육청, 교육지원청 0000 조치 예정("22.00.00.)
- 피해교원 법률지원, 0000 교육 실시 예정("22.00.00.)

※ 그 밖에 중대사안의 경우, 우선 유무선 보고 후 사안 조사 결과 중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문서 보고 불요

[서식 5] 확인서(의견서) - 필수

확 인 서(의견서)

☐ 침해자(학생, 학부모 등) ☐ 피해교원 ☐ 목격자

안내	☐ OO학생의 교사들에게 모욕을 주는 언행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주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과 의견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작성번호	20 -	작성일시	20 . . (~)		
소속		직위		작성자 성명	(서명)
내용					
분쟁조정 신청 여부	☐ 신청함 ☐ 신청하지 않음				

※ 본인(당사자) 작성(자필 또는 컴퓨터입력)이 원칙임. 본인 작성이 어려운 경우(특수학생, 저학년 학생 등)는 대리인(학부모, 업무담당 교사 등)이 진술내용을 작성할 수 있음.

[서식 6] 면담조사일지 - 선택(가해, 피해, 목격자용)

면 담 조 사 일 지

☐ 침해자(학생, 학부모 등) ☐ 피해교원 ☐ 목격자

1	면담조사 일시		면담조사 대상자	
2	면담 장소		담당자	
3	면담조사 내용			
4	담당자 소견 (필요시 기입)			
5	사안 해결을 위한 의견 제시			

작성자 : _____(인)

[서식 7] 교육활동 침해(피해) 사안조사보고서 - 필수(학교장 내부결재용)

교육활동 침해(피해) 사안 조사보고서

학교명				보고 일시	20 . . .	
피해교원	성명		직위		성별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	성명		피해교원과의 관계		성별	
사안 유형	☐ 상해 또는 폭행 ☐ 협박 ☐ 명예훼손 또는 모욕 ☐ 성폭력범죄 ☐ 손괴 ☐ 불법정보유통행위			☐ 공무방해 또는 업무방해 ☐ 성희롱 ☐ 반복적 부당한 간섭 ☐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 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 배포 ☐ 학교장의 판단()		
사안 내용 (간단히) ※육하원칙에 따라 개조식으로 작성						
피해교원 주장						
교육활동 침해행위자 주장						
목격자 진술						
증거 자료						
피해교원 현재상태						
특이사항						
작성자	성명	(인)				

[서식 8] 교육활동 침해신고 취소(철회) 신청서(피해교원이 학교장에게 제출)

교육활동 침해신고 취소(철회) 신청서

피해교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연락처 (주소)			
침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또는 직업)		피해교원과의 관계	
	연락처 (주소)			
20〇〇년 〇월 〇일에 신고한 〇〇〇〇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취소(철회)를 신청합니다. 20〇〇. 〇. 〇. 신청인: (서명) 〇〇〇〇학교장 귀하				

[서식 10] 분쟁조정 합의서

분쟁조정 합의서

분쟁조정	신청인	피신청인
성명		
구분	(교원, 학생, 보호자)	(교원, 학생, 보호자)
소속		
주소		
연락처		
분쟁의 내용	1. 분쟁의 경위 2. 조정의 쟁점(당사자 의견 포함) 가. 쟁점 나. 신청인 의견 요지 다. 피신청인 의견 요지	
조정결과	(예시)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사과함.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오해한 점에 대하여 이해하고 피신청인의 사과를 받아들임.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로 원만하게 관계를 회복하도록 노력함. 4. 이 분쟁 사안과 관련하여 관할청 및 학교에 조치요청하지 않음. 5. 다만, 피신청인이 조정 합의안을 미이행하는 경우 신청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또는 분쟁조정 불성립	
20○○년 ○○월 ○○일 분쟁조정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분쟁조정 피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		

[서식 11] 도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서

경상남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서

	신청인	피신청인
성명		
구분	(교원, 학생, 보호자)	(교원, 학생, 보호자)
소속		
주소		
연락처		
신청취지		
신청원인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증빙자료	(예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사본, 진단서, 학교장 의견서 사안보고서, 해당 학생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등	
위 당사자 간에 발생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여 줄 것을 「경상남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상남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 1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리 대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리 대장

순	학교교권 보호위원회		피해교원			침해 행위자		
	개최일	결과 통지일	성명	보호조 치내용	공무상병가 신청 및 승 인여부	성명	조치 내용	보호자 특별교육 심리치료 이행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과통지일은 피해교원 및 침해 행위자에게 통보한 날짜

[서식 1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서 - 필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서 및 비밀서약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주 소				
연락처	근무처		자택	
	휴대전화		E-mail	
위촉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비고	학부모 위원(), 외부 전문가 위원(), 교사 위원()			

상기 본인은 000학교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본인은 학교 교육활동 침해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자·가해자·신고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학교장 귀하

[서식 14]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촉(임명)장 - 필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임명)장

소속 :

성명 :

위촉(임명)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귀하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학교교권
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임명)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서식 15]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명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명부

연번	성 명	소 속	연락처	위촉기간	비 고
1	이00				위원장(학부모)
2	김00				학부모
3	나00				교원
4	도00				외부 전문가
5					
6					
7					
8					
9					
10					

※ 표기방법: 1번에 위원장을 기록하고 다른 위원들은 이후에 가나다순 기록

[서식 16]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참석 안내 - 필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참석 안내

본 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제 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년 월 일 시

2. 장소 :

3. 안건 :

년 월 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인)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안내용

[서식 17]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출석 통지서 - 필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출석 통지서

성명	학 생		소 속	
	보호자			
연락처			지 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안내				
안전	교육활동 침해사안 조정 절차 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심의			
사안의 요지	※사안의 핵심 내용이 드러나도록 작성(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일시, 장소, 내용 등) [예시] ○○○학생(침해학생)은 20 년 ○월 ○일 오전 10:30경 교실에서 ○ ○○ 교사(피해교원)가 수업 중 핸드폰을 하고 있던 ○○○학생을 지적하자 ○○○ 교사에게 대하여 ‘미친년아 눈깔이 빠였냐, 왜 자꾸 시비 걸고 지랄이야. 하는 짓도 쯤따 같은 게’ 라고 욕설을 하였음			
출석 일시	년 월 일(요일) 시 분			
출석 장소				
참고 사항	1. 문의사항이 있으면 ○○학교(전화:000-00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출석하실 때 이 안내서, 신분증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회의 당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진술서’를 작성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까지 ○○학교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진술확인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				

※ 출석통지서 발송은 등기발송이 원칙임

(절취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서면 진술 확인서

인 적 사 항	성 명		소 속	
	연락처		직위(급)	
	주 소	□□□□□		
위의 출석통지에 대해 출석하지 않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합니다. 불임: 서면 진술서 20 년 월 일 성명 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 19] (학생, 보호자용) 기피 신청서

기 피 신청서(학생, 보호자용)				
신청인	소속 학교	학년 반	학생 성명 (관련자)	보호자 성명
	주소			
신청 내용	기피대상자			
	신청 이유	※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00. 00. 000학생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귀중				

※교보위 출석하여 당일 서면으로 제출(교보위원 명단 사전공개 불가)

[서식 20] (교원용) 기피 신청서

기피 신청서(교원용)			
신청인	소속 학교	직위	성명
	주소		
신청 내용	기피대상자 (위원)		
	신청 이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귀중			

※ 교보위 출석하여 당일 서면으로 제출(교보위원 명단 사전공개 불가)

[서식 21] (학교교권보호위원회용) 회피 신청서

회피 신청서(학교교권보호위원회용)			
신청인 (위원)	소속 학교	직위	성명
	주소		
신청 내용	회피 이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위원) (서명 또는 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귀중			

[서식 22] (통보용)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의결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의결서

인적사항	소속 학교	학년 반	성명
의결주문	학생에 대하여 '학교에서의 봉사 8시간', '특별교육 이수 4시간'으로,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특별교육 이수 2시간'으로 의결한다.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직인
생략

이 유

1. 위 학생은 00학교 0학년 0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2. 학생에 대한 00학교장의 심의요청 사유를 보면,
 학생이 2019. 11. 1. 0시 0분 경 0학년 0반 교실에서 국어수업 중이던 피해교사 000이 과제 제출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0000”, “00 000”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쳤다는 것이다.
 학생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 및 모욕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학생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교사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4. 피해교사 진술서, 목격학생 진술서의 각 기재,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건보고서, 학생과 피해교사가 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한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학생이 2019. 11. 1. 0시 0분 경 0학년 0반 교실에서 국어수업 중이던 피해교사 000이 과제 제출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0000”, “00 000”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친 사실이 인정되며, 학생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 및 모욕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조치의 양정에 있어서 피해교사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학생이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교사에게 사과를 하였고, 피해교사도 학생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생활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학교내 봉사 8시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특별교육 이수 4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특별교육 이수 2시간’으로 의결한다.

[서식 22-1] (내부결재용)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의결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의결서

피해교원	보호조치 권고 내용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침해 행위자 (학생)	조치 의결 내용	
(학생)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제4호 출석정지 7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3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병과조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학생 10시간 보호자 5시간
침해 행위자 (학생 외)	권고 내용	
(학생 외) ○○○	사과, 재발방지 약속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간사	(인)		

[서식 2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 필수

20 학년도 제 회 _____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 사안번호:

1. 일 시 : 년 월 일(요일) 시 분

2. 장 소 :

3. 참 석 자

위 원 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간 사 ○ ○ ○

교 사 ○ ○ ○

학 생 ○ ○ ○

학 생 ○ ○ ○

학 부 모 ○ ○ ○

4. 회 순

1) 개회

2) 당사자 참석여부 확인 및 성원보고

3) 위원 제척 등 사유 확인

4) 위원회 안내 - 목적, 진행절차, 주의사항 전달

5) 사안의 요지 보고

6) 기피 및 유의사항 안내, 피해 측 진술 및 질의응답

7) 기피 및 유의사항 안내, 침해 측 진술 및 질의응답

8) 안전 심의(피해교원 보호조치, 침해 행위자 선도·교육조치(권고사항) 논의

9) 사안협의

10) 폐회

5. 상정 안건

- ○○○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
사안개요

6. 회의 내용 (발언자의 내용을 발언 순서대로 기재)

○ ○○○ 교사 ○ ○○○ 학생 ○ ○○○ 학부모 ○ ○○○ 위 원 ○ ○○○ 위 원			
7. 의결사항 및 표결내용			
피해교원	심의 의결 내용		표결 내용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	찬성 (7) 반대 (2)
침해 행위자	심의 의결 내용		표결 내용
(학생)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제4호 출석정지 7일	찬성 (7) 반대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18조제1항제3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병과조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학생 10시간 보호자 5시간	
(학생 외) ○○○			찬성 (7) 반대 (2)
작성자(간사) : (서명) 위원장: (서명)			

[참고]

1.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되 처분의 근거가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근거가 미흡하지 않도록 유의.
2. 제18조1항 1,2,4,5호 조치에 병과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시간 기재 필수
3. 제18조 4항에 따라 학생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받으면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 또는 심리 치료 시간 부가 필수
4. 제18조 1항 제6호 전학 조치를 한 경우 학생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추가로 부가해야 함.

※ 출석정지 조치 시 날수(*일), 교내봉사 및 사회봉사 조치 시 부가한 시간(**시간) 반드시 기재

[서식 24]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 필수(학교(교보위 후)→교육지원청/학교혁신과 공문 보고)

특수, 고 → 학교혁신과에만 보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심의 의결 결과 보고						
학교정보	기관명		구분	☐ 공립 ☐ 사립		
피해교원	성명		연락처			
	교육활동 침해행위자	☐ 학생 ☐ 보호자 ☐ 기타()				
사안 내용	일 시	년 월 일 시 분 경				
	장 소	학교 학년 반 교실 안				
	구체적 행위 내용	예시 : ○○○학생(침해학생)이 ○ ○○ 교사(피해교원)가 수업 중 핸드폰을 하고 있던 ○○○학생을 지적하자 ○ ○○ 교사에게 대하여 ‘미친년아 눈깔이 빠였냐, 왜 자꾸 시비 걸고 지랄이야. 하는 것도 쯤따 같은 게’ 라고 욕설을 하였음				
교육활동 침해 유형	☐ 상해 또는 폭행 ☐ 협박 ☐ 명예훼손 또는 모욕 ☐ 성폭력범죄 ☐ 손괴 ☐ 불법정보유통행위		☐ 공무방해 또는 업무방해 ☐ 성희롱 ☐ 반복적 부당한 간섭 ☐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 배포 ☐ 학교장의 판단() ☐ 교육활동 침해 아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일시		년 월 일		위원수	재적 명// 출석 명	
분쟁조정결과		개시 거부/중지	☐ 분쟁조정 거부 ☐ 고소, 소송제기 등 ☐ 기타			
		☐ 조정 성립	조정 합의 요지: 서면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			
		☐ 조정불성립	불성립 사유의 요지: 조정안수용 거부, 소송제기 의사표시 등			
조치 사항	구분	이름	직위	조치 결정 사항		
	피해교원	김피해	교사	심리상담, 특별휴가5일, 공무상병가6일		
	침해학생	박침해	학생 (학년 반)	학생 : 특별교육 5시간, 보호자 참여 : 3시간 (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제3호, 제4항)		
		왕가해	학생 (학년 반)	사회봉사 5일 (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제2호)		
	기타 침해자		학부모	재발방지, 사과 권고		
학교장의 조치사항 통보 일자 및 방법		20 년 월 일() 서면으로 등기우편 발송 등 기록				
기타사항	☐ 형사고소 (피해교원이 학생 고소 또는 보호자가 피해교원 이동학대 신고) ☐ 민사소송 (피해교원이 보호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 ☐ 기타 (경상남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등)					
		작성자: 직(교사)		성명 :	(서명)	
		보고자: 직(교장)		성명 :	[직인]	

[서식 25] 조치 결과 통지서(학교장→피해교원) - 필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 통지서

* 사안번호:

피해교원	성명	소속	직위
관련자	성명	소속	직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일시	년 월 일 (장소:)		
학교장 조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침해행위 유형 (교원지위법 제15조)	☐ 상해 또는 폭행 ☐ 협박 ☐ 명예훼손 또는 모욕 ☐ 성폭력범죄 ☐ 손괴 ☐ 불법정보유통행위 ☐ 공무방해 또는 업무방해 ☐ 성희롱 ☐ 반복적 부당한 간섭 ☐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 배포 ☐ 학교장의 판단 ()	
	교육활동 침해여부 판단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 또는 불인정	
	피해교원 보호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3, 제15조 제1항, 제2항 예) 특별휴가 5일, 심리상담 및 조언 ※ 법률조항을 명시하여 조치 내용 기재	
	침해학생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00시간 ※ 법률조항을 명시하여 조치 내용 기재	
	학생 외 침해자 권고		
피해교원 불복절차 안내	국·공립 학교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된 경우] 1)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법」 제27조 2)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 청구 「행정소송법」 제20조	
	사립학교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된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된 경우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위와 같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20 . . .			
○○○학교장 (직인)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를 청구인(피해교원)에게 통보

※ 침해자가 학생일 경우 [서식22] (통보용) 조치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불가)

[서식 26] 조치결과 통지서(학교장→침해학생) - 필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 통지서

* 사안번호:

인적사항	성명	소속 학교	학년 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일시	년 월 일 (장소:)		
학교장 조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침해 행위 유형 (교원지위법제 15조)	☐ 상해 또는 폭행 ☐ 협박 ☐ 명예훼손 또는 모욕 ☐ 성폭력범죄 ☐ 손괴 ☐ 불법정보유통행위	☐ 공무방해 또는 업무방해 ☐ 성희롱 ☐ 반복적 부당한 간섭 ☐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 배포 ☐ 학교장의 판단 ()
	조치 내용	<i>「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예)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00시간</i> <i>※ 법률조항을 명시하여 조치 내용 기재</i>	
	이유	불임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의결서 사본과 같음	
재심 안내	전·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위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남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8항		
침해학생 불복절차 안내	국·공립 학교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법」 제27조 2)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 청구 「행정소송법」 제20조	
	사립학교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위와 같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20 . . . ○○○학교장 (직인)			

- ※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를 피청구인(침해학생)에게 통보
 2. [서식22] (통보용) 조치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교권보호위원회 위원명단 공개 불가)

[서식 27] 심의결과 통지서(학교장→ 학생외 침해자(학부모 등)) - 필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서

* 사안번호: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비고			
학교교권보호 위원회 개최 일시	년 월 일 (장소:)							
학교교권 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침해 행위 유형 (교원지 위법 제 15조)	☐ 상해 또는 폭행 ☐ 협박 ☐ 명예훼손 또는 모욕 ☐ 성폭력범죄 ☐ 손괴 ☐ 불법정보유통행위		☐ 공무방해 또는 업무방해 ☐ 성희롱 ☐ 반복적 부당한 간섭 ☐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 배포 ☐ 학교장의 판단 ()				
	교육 활동 침해 여부 판단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 또는 불인정						
	권고 사항							
위와 같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지합니다. 20 . . . ○○○학교장 (직인)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를 학생외 침해자(학부모 등)에게 통보

2. [서식22] (통보용) 조치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음 (피해교원, 침해학생만 해당)

[서식 28]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조치 통보

교육활동 침해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조치 통보

귀하의 자녀인 홍△△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사회봉사 ○일과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조치 ○○시간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홍△△의 보호자인 귀하도 같은 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홍△△과 함께 ○○○교육원(Wee센터, ○○센터 등 지정장소 명기)에서 향후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특별교육(심리치료)을 ○○시간 이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특별교육(심리치료)을 받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이수 완료기간	교육이수 통보일 ~ 3개월 이내	교육 이수 관련 문의	○○○○학교 인성부장 ○○○ 연락처: 000-0000
과태료 부과일	교육이수 통보일 ~ 4개월 후	과태료	300만원 이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 1항

20 년 월 일

○○○학 교 장 (인)

[서식 29]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신청서

특별교육 · 심리치료 이수 신청서

[illegible]

※ 신창법보 : 단의 학교에서는 특별교양·심리치료 이수 기관에 우선으로 이수 인정일 필요 의한 후 위의 서식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이수 예정 기관과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 각각(이수 재량)인정할(한)1회 제출

※ 보호자의 경우 미미수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보호자(학부모, 친척, 가족, 법정대리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이수하면 됨)의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를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illegible][illegible]

※: 내용란에는 특별고양, 심리치료, 중 선택

[서식 30]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미이수자 현황

- 3개월 내 미이수 시 다음날 즉시 학교장이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로 보고 -

보호자 특별교육 · 심리치료 미이수자 현황

학교명	○○○○학교	담당자	○○○(연락처:010-0000-0000)
-----	--------	-----	------------------------

연번	구분	내용	학생		보호자			연락처	위원회 개최일	학부모교육 통보기간 (3개월)
			학반	이름	관계	이름	교육 시간			
1	교육활동 참해	특별교육	2-3	○○○	모	○○○	5	010-0000 -0000	2022. 00.00.	2022.00.00. ~2022.00.00.
2										

※ 이수 계획(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 제출)

- 기관명:
- 예정 일자:
- 참고 사항:

20 년 월 일

확인자 : ○○○ 학 교 장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서식 31]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배정요청서

교육활동 침해학생(제6호 전학) 전학학교 배정요청서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소 속	학 교	학 년		반	
	학교유형	일반계고/특성화고 등				
	학교주소					
보호자	성 명		관 계			
	현 주 소					
사안 및 조치 개요	(사안개요)					
	(조치결정사항)					
검토 의견						
배정 희망 학교	전학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 순위 별로 3개교 기재 요망)					
	1순위:	2순위:	3순위:			
20 년 월 일 0000학교장 000 (직인)						

[서식 32]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 담임의견서

담임의견서

인적사항	학번		이름	
	성별		생년월일	
담임의견	(가정환경에 대한 의견)			
	(학교생활에 대한 의견-전학 갈 학교의 생활지도 참고사항)			

20 년 월 일

담임교사:

(서명)

[서식 34] 보호조치 비용부담 신청서(학교혁신과 공문 제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조치 비용부담 신청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5항 단서 및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조치 비용을 부담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 심리상담,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원(직무상) 요양 승인을 먼저 신청하였나요? ☐예 ☐아니오
 ※ 본인은 공무원(직무상) 요양승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급법, 산업재해,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등 제3자에게 동일한 사유로 보호조치 비용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이를 신청한 경우에 교육청에 보호조치 비용 부담을 신청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신청자 : (인)

신청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속		
치료를 요하는 부분(병명)			
(예상)치료기간	20 . . . ~ 20 . . . (일)		
신청액 *별지 작성 가능	보호조치의 종류	진료내용(병명)	예상(지출)금액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합계		

신청서 제출 시 참고사항

※ 아래 서류 외에도 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서류, 사진 등 첨부 가능

보호조치의 종류	제출서류(각 1부)	비 고
공통사항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 또는 결과 보고서(스캔 파일) (침해자의 보호자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 포함)	※ 신청시 학교에서 첨부 하여 도교육청 제출
심리상담 및 조언	1. 진단서(상병명, 치료기간 포함) 또는 의사 소견서	
치료 및	2. 진료기록부 사본(응급 및 초진 기록지)	
치료를 위한 요양	3.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질환별 추가서류 등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 34-1] 보호조치 비용부담 청구서(학교혁신과 공문 제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조치 비용부담 청구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5항 단서 및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조치 비용부담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 심리상담,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원(직무상) 요양 승인을 먼저 신청하였나요? ☐예 ☐아니오
 ※ 본인은 공무원(직무상) 요양승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급법, 산업재해,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등 제3자에게 동일한 사유로 보호조치 비용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이를 신청한 경우에 교육청에 보호조치 비용 부담을 청구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신청자 : (인)

청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속			
치료를 요하는 부분(병명)				
치료기간	20 . . . ~ 20 . . . (일)			
수령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신청액 *별지 작성 가능	보호조치의 종류		진료내용(병명)	지출 금액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합계			

청구서 제출 시 참고사항

※ 아래 서류 외에도 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서류, 사진 등 첨부 가능

보호조치의 종류	청구인 제출서류(각 1부)	비 고
심리상담 및 조언	1. 진단서(상병명, 치료기간 포함) 또는 의사 소견서 (※ 기 제출한 진단서 외에 추가로 진단 받은 경우 제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2. 진료확인서 및 영수증 3.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질환별 추가서류 등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4. 신청인 통장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식 35] 통고서(학교장→가정법원)

통 고 서(학교장용)

○○가정법원(지원) 소년부 귀중

통고인	학교장 성명			
	학 교 명			
	전화번호(직장)	() -	휴대전화	() -
	담당교사 성명		휴대전화	() -

위 통고인은 다음과 같이 보호 대상 소년을 발견하였으므로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귀 법원 소년부에 통고합니다.

소 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학년, 반			
	주 소			
	전화번호	() -		
소년의 보호자	성 명		소년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		

통 고 사 유

통고하게 된 사유의 요지(□에 √ 표시)

☐ 범죄를 저지름(14세 이상 19세 미만)	
☐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함(10세 이상 14세 미만)	
☐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음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버릇)이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함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촉하는 성벽(버릇)이 있음

통고하게 된 사유의 상세(필요한 경우 별지 활용)

(일시, 장소 및 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20○○. ○. ○. ○○시경 ○학년 ○반 교실에서 ○○○ 학생이 ○○○ 교원을 폭행하여 전치3주 상당의 상해를 입혔다. ※참고사항:

첨부할 서류

- 각종 위원회가 개최되었다면 그 관련 자료 사본: 사실확인 결과 보고서(진술서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자료 포함), 위원회 속기록·의결서, 전문상담교사의 상담결과보고서, 담임교사·책임교사의 의견서 등
- 보호 대상 소년의 학생생활기록부

20 . . .

통 고 인 ○○○ ①

[서식 36] 교육활동 침해 사안 형사고발 요청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 형사고발 요청서

피해교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소 속	○○○○학교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연 락 처 (직 장)	
사건 일시	20○○년 ○월 ○일 ○시	사건 장소	
사건 내용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형사고발 요청이유			
입증자료			
침해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보호자 성 명	침해자가 학생인 경우 기재	연락처	

※ 형사고발 요청서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자료 일체를 공문으로 제출

[서식 37] (전학, 퇴학) 재심 청구서

경상남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신청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전학, 퇴학)

[제20 - 차(접수번호:)]

학 생		소 속		()학교 ()학년 ()반	성별	
청구인	성 명		연락처	(자 택) (휴대폰)	관계	보호자 () 본 인 () ※해당란에 ○표
	주 소					[학생과의 관계]
피청구인	학교명	학교	학교장 성 명		조 치 종 류	전학 () 퇴학 () ※해당란에 ○표
	조치 날짜	2022년 월 일	소재지	()시·군 ()		
조치를 받은 날		2022년 월 일		조치가 있음을 안 날		2022년 월 일
청구 취지		() 학생에 대한 피청구인의 20 . . .자 (전학 / 퇴학)조치의 취소를 구합니다.				
청구 이유 (요지만 간단하게 작성 하고 별지에 상세히 기 술 가능)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 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의한 징계(전학, 퇴학) 처분 재심을 청구합니다.						
2022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참고사항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및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의거 징계처분 중 전학 및 퇴학처분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상남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함						
첨부서류 (증빙서류 첨부가능)		1. 청구 이유 기재서 2. 조치 통지서 3.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가 청구하는 경우) 및 신분증				

[서식 38] 행정심판 청구서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 법무담당으로 제출)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9.20>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대표자 ☐ 관리인 ☐ 선정대표자 ☐ 대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피청구인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경상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기타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별지로 작성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내용		
증거 서류		

「행정심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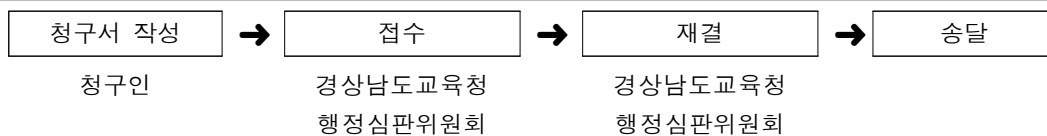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39] 교원치유 지원 개인상담신청서

>>> 선생님의 더 행복한 교육을 응원합니다. <<< 교원치유지원 개인상담 참가 신청서

Case No. _____

성 명 (필수)		성 별 (선택)	남 ☐ 여 ☐	생년월일 (필수)	. .
소 속 (필수)		국립 ☐ 공립 ☐ 사립 ☐ 기타 ☐		교직 경력 (필수)	
연 락 처 (필수)		E-mail (필수)			
지원 요청 영역 선택	☐ 교권침해 피해교원 ☐ 직무 스트레스 호소 교원 (업무과중, 학생지도, 학부모 상담, 동료교원 갈등 등)		상담 방법 선택	☐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창원, 진주) ☐ 외부 위촉 전문기관 연계 (도내의 타 지역 기관 이용 가능)	
이전 상담 경험 (필수)	☐ 있다 ☐ 없다 ※ 언제 / 어디에서 / 상담주제 / 종결 이유				
■ 상담을 통해 도움받고 싶은 부분을 간략히 적어주세요. (필수)					
■ 상담 희망일 (10시-17시,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적어주세요.)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교육청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교원치유지원센터 1811-7679 (평일 9~18)

[서식 40] 교원치유 지원 개인상담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교원치유지원 개인상담 신청을 위한 개 인 정 보 수 집 및 이 용 동 의 서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설치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본 센터에서 제공되는 모든 심리상담, 심리검사 및 집단 프로그램은 경상남도교육청의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대상자의 원활한 상담 서비스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정보제공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의 심리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연계·운영, 심리검사 온라인 발송 및 결과 전달
2. 수집 항목
 -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이메일 주소, 교직 경력
 - ※ 개인정보 및 상담 내용의 비밀은 엄격히 보장됩니다.
(대상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나 센터 외부로 정보나 기록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취득한 정보는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신청일로부터 5년간 보유 및 이용하며, 이용 기간 경과 시 즉시 폐기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심리상담, 집단 프로그램 참여 및 심리검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1.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의 심리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연계·운영, 심리검사 온라인 발송 및 결과 전달
2. 수집 항목
 - 필수항목: 이전 상담 경험, 상담을 통해 도움받고 싶은 부분, 현재 상태(힘들어하는 정도, 심리적 어려움으로 지장을 받는 정도)
3. 보유 및 이용 기간
 - 취득한 정보는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신청일로부터 5년간 보유 및 이용하며, 이용 기간 경과 시 즉시 폐기
4.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심리상담, 집단 프로그램 참여 및 심리검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교육청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교원치유지원센터 1811-7679

[서식 41] 교원치유 지원 심리상담(치료)비 신청서

>>> 선생님의 더 행복한 교육을 응원합니다 <<< 외부 기관 연계 심리상담(치료) 비용 자원 신청서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 계획에 의거 교원치유지원을 위한 심리상담비(치료비)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심리상담,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원(직무상) 요양 승인을 먼저 신청하였나요?

☐ 예 ☐ 아니오

※ 본인은 공무원(직무상) 요양승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등 제3자에게 동일한 사유로 보호조치 비용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이를 신청한 경우에 교육청에 보호조치 비용 부담을 신청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신청자 :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신청인 (피해 교원)	소속	OOOO학교	
	성명		
신청사유	※ 교육활동 침해 피해 또는 직무 스트레스 내용 및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간략히 요약 기술		
신청액	심리상담비		
	심리치료비		
	합계		
치료비용 송금방법	계좌이체	은행명:	예금주(성명):
		계좌번호:	
구비서류		아래 참조	

청구 금액 산정 관련 참고사항

신청 교원이 희망하는 전문상담기관(병원) 내원 후 상담 및 진료를 받고 아래에 제시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종류	신청인 제출서류(각 1부)	비 고
심리상담비	상담기관의 확인서 및 영수증 등	100만원 이내 지원 - 피해 정도 및 예산 사정에 따라 진료비 조정 가능 -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보상, 맞춤형복지비 내 보험료 지급, 경상남도 학예·쟁송에 관한 사무규칙에 의한 보상 등과 중복 지원 불가
심리치료비	의사의 진료확인서 및 영수증 등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 42] 상담(치료) 만족도 조사

>>> 선생님의 더 행복한 교육을 응원합니다. <<< 외부 기관 연계 심리상담 및 치료 참여 만족도 조사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

 이용기관명:

 이용기간: . . . ~ 20 (회기)

 이용기관의 운영에 관한 의견

번호	질문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가 가진 궁금증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2	상담(치료)의 전문적인 역량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3	내담자의 입장을 잘 듣고 이해하며 공감하였다.					
4	상담(치료) 받기에 좋은 환경이라 생각한다.					
5	지인들에게 방문 및 이용을 추천하고 싶다.					

 종합 의견

질문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상담(치료)의 종합적인 효과는 ?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및 외부 전문기관 연계 사업 관련 건의 사항

수고하셨습니다.

[서식 43] 교원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

>>> 선생님의 더 행복한 교육을 응원합니다. <<<
교원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

신청 학교명		담당자 연락처	
--------	--	---------	--

 신청할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최초 실시 희망일시 및 실시장소를 적어주세요

프로그램명	관계회복 집중상담	치유성장 집단상담1	치유성장 집단상담2	스트레스 자가관리 앱
신청				
최초 실시 희망일시				X
실시 장소	ZOOM활용 실시			

※ 신청 해당 칸에 ○표 최초 실시 희망일시 2022.00.00. (요일) 00:00 형식으로 작성

 선택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교사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적어주세요(*1: 신청자 대표를 기록)

순	교사명	폰번호	순	교사명	폰번호
*1			6		
2			7		
3			8		
4			9		
5			10		

※ 한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프로그램별로 표 작성, 스트레스 자가관리 앱은 신청인원 제한 없음

 센터에 프로그램을 신청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원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식 44] 교원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 신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교원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경남행복교육지원센터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설치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본 센터에서 제공되는 모든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은 경상남도교육청의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대상자의 원활한 상담 서비스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정보제공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남행복교육지원센터의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온라인 발송 및 결과 전달
2. 수집 항목
 -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교직 경력
 - 선택항목: 성별, 소속
- ※ 개인정보 및 상담 내용의 비밀은 엄격히 보장됩니다.
(대상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나 센터 외부로 정보나 기록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취득한 정보는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신청일로부터 5년간 보유 및 이용하며, 이용 기간 경과 시 즉시 폐기**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참여 및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1.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남행복교육지원센터의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연계·운영, 심리검사 온라인 발송 및 결과 전송
2. 수집 항목
 - 필수항목: **이전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경험,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을 통해 알고 싶은 부분**
3. 보유 및 이용 기간
 - **취득한 정보는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신청일로부터 5년간 보유 및 이용하며, 이용 기간 경과 시 즉시 폐기**
4.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참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 년 월 일

순	교사명	서명 또는 날인	순	교사명	서명 또는 날인
1			6		
2			7		
3			8		
4			9		
5			10		

[서식 45] 교원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 상담 확인서

>>> 선생님의 **더 행복한 교육**을 응원합니다. <<<
교원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 상담 확인서

프로그램명		담당 상담사 또는 강연자	
학교명		내담자 (모두 기재)	
제공회차	상담서비스 내용 및 실시 장소		확인서명
1회차	- 상담서비스 내용: - 실시장소 또는 방법:	내담자 (대표)	
월 일		상담자	
시작:			
종료:			
2회차	- 상담서비스 내용: - 실시장소 또는 방법:	내담자 (대표)	
월 일		상담자	
시작:			
종료:			
3회차	- 상담서비스 내용: - 실시장소 또는 방법:	내담자 (대표)	
월 일		상담자	
시작:			
종료:			
4회차	- 상담서비스 내용: - 실시장소 또는 방법:	내담자 (대표)	
월 일		상담자	
시작:			
종료:			
5회차	- 상담서비스 내용: - 실시장소 또는 방법:	내담자 (대표)	
월 일		상담자	
시작:			
종료:			
6회차	- 상담서비스 내용: - 실시장소 또는 방법:	내담자 (대표)	
월 일		상담자	
시작:			
종료:			
7회차	- 상담서비스 내용: - 실시장소 또는 방법:	내담자 (대표)	
월 일		상담자	
시작:			
종료:			

※ 확인서명은 자필 서명, 프로그램 완료 후 내담자 대표가 최종 스캔하여 담당자 메일로 제출

[서식 46] 교원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 선생님의 더 행복한 교육을 응원합니다 <<<
교원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조사

○○○○학교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운영 기간: . . . ~ 20 . . . (회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의견

번호	질문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본 프로그램의 목표가 충실하게 달성되었다.					
2	본 프로그램은 교원 심리정서 치유에 도움이 되었다.					
3	본 프로그램의 내용 선정 및 편성이 적절하였다.					
4	본 프로그램의 진행 방법은 심리정서 치유에 적절하였다.					
5	본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이용 프로그램의 참여 소감 또는 건의 사항

수고하셨습니다.

[서식 47]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법률지원 신청 공문

배움이 즐거운 학교 ·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학교



수신 학교혁신과장

(경유)

제목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법률지원 신청

1. 관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내부결재 공문\(0000.00.00.\)](#)
2.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신청하며 관련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가. 신청교사 소속:
 - 나. 신청교사명:
 - 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일:
 - 라.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장소:
 - 마. 지원요청: (예1) 경상남도교육청 법률지원단 법률상담 요청
(예2) △△법률사무소 법률상담 이용(변호사 ○○○, ☎ 000-0000)

붙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서 1부. 끝.

[서식 48]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법률자문 결과 및 법률자문료 지급 요청 공문(기안)

배움이 즐거운 학교 ·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학교



수신 학교혁신과장

(경유)

제목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법률자문 결과 제출 및 법률자문료 지급
요청

1. 관련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내부결재 공문\(0000.00.00.\)](#)
 2.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자문 및 상담결과를 제출하며 법률자문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 요청합니다.
 - 가. 질의요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자문 및 상담
 - 나. 답변요지: 붙임 참조
 - 다. 신청교사 정보
 - 1) 소속학교:
 - 2) 교 사 명:
 - 3) 연 락 처:
 - 라. 지급금액:
 - 마. 지급계좌(신청교사 명의)
 - 1) 은행명:
 - 2) 계좌번호:
- 붙임 1. 법률 자문 및 상담 결과보고서 1부.
2. 영수증 사본 1부. 끝.

[서식 49] 법률 자문 및 상담결과 보고서

법률 자문 및 상담결과 보고서

연번	개요 및 질의요지	답변요지	자문 신청일	자문 회신일자	자문 변호사

년 월 일

변호사

(서명 또는 날인)

○○○○법률사무소 (직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장 귀하

[서식 50] 사고경위서

전문인배상책임보험(교원배상책임) 사고경위서

○○○화재(주) 보험증권번호 : ○○○○○-○○○○

성명 (신청자-교원)	(서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소속	OOO학교
사건 일시	년 월 일 시	사건 장소	
사건 경위 (개조식 작성) 사고 이후의 조치사항 등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바랍니다.			
확인기관명	OOO학교	확인기관장	(서명)
기관주소		전화번호	
상기 신청자는 사고사실이 위 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내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아래에 서명·날인함으로써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신청자) : (인)			

[서식 51] 교원배상책임보험 접수현황 보고(기안)

배움이 즐거운 학교 ·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학교



수신 학교혁신과장

(경유)

제목 교원배상책임보험 접수현황 보고

1. 관련: 학교혁신과- (20 . . .) ‘2022년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 안내’
2. 2022년 교원배상책임보험 접수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접수일시:

나. 내용: 붙임 사고경위서 참조

붙임 교원배상책임보험 사고경위서 1부. 끝.

[서식 52] 장기치유연수 지원서

장기치유연수 지원서

※ NEIS 인사기록카드와 동일하게 기재

구분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 비교과					
인 적 사 항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0000.00.00.		교육경력/연령(만) (신청일 기준)		○년○월/()세	
	소속교	학교명				직급(위)	
		주소					
		전화번호	055) ○○○-○○○○ 휴대폰)			팩스번호	
		E-mail					
사진 파일 삽입 (3cm×4cm)							
교육 경력	직급	총 재직기간		현재 재직 학교명	직급	담임·보직교사 경력(최근경력순)	학교명
	교사	1999.03.01.~2021.02.28. (21년 00월)		0000학교	교사	2011.03.01.~2014.02.28.	0000학교
					~		
					~		
복귀의지	장기치유연수 종료 후 학교 복귀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						

본인은 경상남도교육청 20 . 장기치유연수 대상자에 지원합니다.

장기치유연수 대상자로 선발될 경우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대상자 선정
안내 시 예고한 복무관리 및 인사조치 등에 동의합니다.(동의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경상남도교육청 장기치유연수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 53] 교권보호위원회 추천서

○○학교(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 추천서

☐ 지원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	○○학교(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장, 기관장)
생년월일	0000.00.00		

☐ 20 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관련

학교(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 결과			
피해교원 조치	가해자 조치	피해 유형	공무상 병가(병가) 실시 여부

☐ 교권침해 관련

침해 행위 유형	상해 또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및 모욕	성폭력 범죄	손괴	불법정보 유통행위	공무방해 또는 업무방해	성희롱	반복적 부당한 간섭	영상, 화상, 음성등을 촬영, 녹화, 녹음, 합성하여 무단배포	학교장의 판단
침해자 유형	학생	학부모			동료 교직원			기타			

☐ 추천 내용

- 2022. 4. 10. 중학교 2학년 여학생 ○○이 수업 시간에 교사를 향해 욕설을 하고 정당한 수업을 거부하여,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병가 조치를 받았으나 공무상병가를 인정받지 못해 학교로 복귀하였음. 학교 복귀 후 불면증, 우울증, 가슴 두근거림 등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장기치유연수를 통해 지속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추천함.

- 교권침해로 인한 현재의 상황을 자세히 기술할 것

☞ A4 1매 이내 분량

○○○○ 학교(유치원)장 (직인)

경상남도교육청 장기치유연수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 54] 임용권자 동의서(사립학교만 제출)

장기치유연수 추천 동의서

20 . 장기치유연수 추천 대상자에 대하여 교권침해에 따른 치
유가 필요하며, 4대 비위 등 장기치유연수 추천제한 여부에 대
한 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으며 본인이 장기치유연수에 동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 (○○○재단) 직급 이사장 성명 : (인)

[참고 3] 피해교원 보호조치 및 외부기관 연계 비용 지원 비교

구분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외부기관 연계 심리상담치료 비용
지원근거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제2019-34호)	2022. 경남행복교육드림센터 운영 계획
지원대상	학교교원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으로 판단받은 교원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및 직무 스트레스 호소 교원
지원내용	심리상담치료 및 상해치료 비용 지원	심리상담치료 비용 지원
지원금액	200만원 이상 ※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보상, 맞춤형 복지 내 포함로 지급 등과 중복 지원 불가	100만원 이내
비용부담	침해학생 및 침해자의 보호자에 구상권 청구	도교육청 학교혁신과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신청인 (피해교원) [서식 34] 접수 업무관리시스템 학교혁신과 접수 심사 후 대상자 선정 공문 통보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 (2주~4주 소요) 치료비 등 비용 청구서 접수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서식 34] 비용 청구서 심사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 (3주~4주 소요) 비용 지급	상담(치료) 신청 상담(치료) 진행 상담(치료) 준비 청구 [1단계] [2단계] [3단계] - 경남행복교육드림센터 및 진주 상담실 전문상담사에게 상담 (1회) 신청 3명의 전문상담사 별로 신청 - 생활근거자의 접근성을 고려하거나 기존에 상담을 진행했던 전문상담사를 통한 진 상담 가능 - 내담교원이 원하는 접근 편리한 연계 기관 연결 후 상담(치료) 진행 - 경남행복교육드림센터 및 진주상담실 소속 전문상담사와 직접 상담도 가능(두로) - 중보사를 구하여 신청 접수센터 전문상담사 매입 등 비용 청구 - 비용은 경남행복교육드림센터에서 지원 1인당 100만원 이내 - 최초 신청 이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상담(치료)비 지원
신청서식	[서식34] 보호조치 비용부담 신청서 [증빙서류] 학교교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통보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진료기록부 사본, 신청인 통장 및 신분증 사본 등	[서식39] 개인상담(치료) 신청서 [서식40]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서식41] 심리상담치료비 신청서 [서식42] 상담치료 만족도 설문지

2022.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총괄 기획	최 병 현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정책국	국장					
	이 외 숙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	과장					
집필	조 래 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	교권업무혁신담당	장	학	관		
	강 해 린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	교권업무혁신담당	장	학	사		
	황 재 웅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	교권업무혁신담당	장	학	사		
	류 길 용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	교권업무혁신담당	변	호	사		
	김 자 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	교권업무혁신담당	전문	상	담	교	사
	정 희 정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	교권업무혁신담당	주	무	관		
	김 주 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	교권업무혁신담당	상	담	사		
	남 수 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	교권업무혁신담당	상	담	사		
	장 선 숙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	교권업무혁신담당	상	담	사		